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9-000215-01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2020. 1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2020년 연구보고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2020. 12.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 연구책임자 : 김종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모(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용완(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보조연구원 : 박성수(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이 연구는 2020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차 례

■ 요약문 ——— 1

제 1 장 연구의 배경 / 4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Ⅱ. 연구의 방법 ——— 6
Ⅲ. 자문위원단의 구성·운영을 통한 연구결과의 품질제고 ——— 7
Ⅳ. 월별 수행결과 ——— 8
Ⅴ. 기대효과 ——— 9

제 2 장 현행 도서관 관련 법령 분석 / 10

Ⅰ. 도서관 법령의 연혁 ——— 10
Ⅱ. 현행 도서관법의 입법체계 ——— 13
Ⅲ. 현행 「도서관법」 상 국립중앙도서관 관련규정 분석 ——— 17
1.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규정 분석 ····17
2.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18
3. 도서관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명확화 ·····22
4. 분절화된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 방안 23
5. 도서관자료의 납본제도 등 ·····25
6.「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56
7.「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 에 “데이터” 개념 포섭 방안 ··58
8.「저작권법」 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59
9.「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련 등 ·····70
10.「도서관법」 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 ·····77

제 3 장 주요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법령의 분석 / 81

Ⅰ. 미 국 — 81
1. 개관 ····· 81
2. 미국 도서관의 역사 ····· 84
3. 관장 ····· 89
4. 납본제와 저작권 등록제 ····· 90
5. 미국의 국가도서관 체계 ····· 94
6. 의회도서관의 최근 동향 ····· 95

Ⅱ. 영국 — 96
1. 개관 ····· 96
2. 국립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의 주요 내용 ····· 96
3. 법정납본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 106
4.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120

Ⅲ. 독일 — 128
1. 개관 ····· 128
2. 독일 국립도서관장의 지위 ····· 129
3. 국립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 130
4.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139

Ⅳ. 프랑스 — 146
1. 개관 ····· 146
2. 문화유산법전의 국립도서관의 주요 내용 ····· 147
3. 문화유산법전상 납본제도 ····· 162
4.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170
5.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최근 동향 ····· 178

Ⅴ. 호주 — 179
1. 개관 ····· 179
2. 국립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 179
3.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191

Ⅵ. 일본 ——— 201
1. 개관 ····· 201
2.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 202
3.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214
Ⅶ. 시사점 ——— 218
1.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 시사점 ····· 218
2. 주요국의 납본제도 시사점 ····· 219
3. 주요국의 도서관 협력체계 시사점 ····· 219
4. 주요국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도 시사점 ····· 220
5. 주요국의 디지털자료 수집 현황 시사점 ····· 221

제 4 장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정비 방안 / 222

Ⅰ. 현행「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 필요 방안 — 222
Ⅱ. 현행「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확장 관련 개선방안 ——— 225
Ⅲ. 현행「도서관법」상 도서관직원 교육훈련 규정 명확화 방안 — 228
Ⅳ. 현행「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방안 개선방안 ——— 230
Ⅴ. 현행「도서관법」상 도서관 자료 납본제도 개선방안 ——— 232
Ⅵ. 현행「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신설방안 — 238
Ⅶ. 현행「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에 "데이터" 개념 포섭 개정 방안 ——— 240
Ⅷ. 현행「도서관법」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 도입 방안 ——— 242
Ⅸ. 현행「도서관법」 관련 법령 정비(안) ——— 245
Ⅹ. 저작권 관련 법령 정비(안) ——— 254
1.「저작권법」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 254
2.「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260

XI.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분석 ——— 262
XII. 현행「도서관법」관련 정비(안) 3단 비교 ——— 265

제 5 장 국립중앙도서관법 정비 방안 / 280

Ⅰ. 국립중앙도서관법의 제정 필요성 ——— 280
Ⅱ. 국립중앙도서관법 입법체계 ——— 281
Ⅲ. 국립중앙도서관법률(안) ——— 283
Ⅳ.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과 도서관법 개정의 장·단점 분석 ——— 293
Ⅴ. 소 결 ——— 294

참고문헌 ——— 296

표 차례

〈표 1-1〉 연구의 방법 ····· 6
〈표 1-2〉 자문위원단 구성 ····· 7
〈표 1-3〉 연구 수행일정 ····· 8
〈표 2-1〉 도서관법상 관종 구분 ····· 11
〈표 2-2〉 현행 도서관법의 입법체계 ····· 13
〈표 2-3〉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 18
〈표 2-4〉 유사입법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24
〈표 2-5〉 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법령 현황 ····· 25
〈표 2-6〉 온라인 자료 납본 관련 법령의 내용 ····· 29
〈표 2-7〉 해외 주요국의 납본제도 현황 ····· 31
〈표 2-8〉 해외 주요국의 법정 납본제도 현황 ····· 34
〈표 2-9〉 해외 주요국의 납본 대상 자료 현황 ····· 35
〈표 2-10〉 해외 주요국의 납본 제외자료 현황 ····· 37
〈표 2-11〉 해외 주요국의 납본자료 요건 ····· 39
〈표 2-12〉 해외 주요국의 납본 기한 및 납본 비용 현황 ····· 42
〈표 2-13〉 해외 주요국의 납본 부수 현황 ····· 43
〈표 2-14〉 해외 주요국의 납본 미이행 벌칙 현황 ····· 45
〈표 2-15〉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대상자료 현황 ····· 47
〈표 2-16〉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대상 요건 현황 ····· 49
〈표 2-17〉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제외자료 현황 ····· 50
〈표 2-18〉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기관 및 납본 부수 현황 ····· 52
〈표 2-19〉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방법 현황 ····· 53
〈표 2-20〉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기한과 온라인 납본 비용 ····· 55
〈표 2-21〉 「도서관법 시행령」 상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 56
〈표 2-22〉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관련 규정 비교 ····· 62
〈표 2-23〉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관련 규정 비교 · 65
〈표 2-24〉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조문 ····· 71
〈표 2-25〉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규정 ····· 74
〈표 3-1〉 미국 「저작권법」 상 납본 규정 ····· 91

〈표 3-2〉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 현황 ····· 92
〈표 3-3〉 영국의 「국립도서관법」 ····· 98
〈표 3-4〉 영국의 「법정납본도서관법」 ····· 108
〈표 3-5〉 영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 현황 ····· 121
〈표 3-6〉 독일 연방급여법상 기본급 ····· 130
〈표 3-7〉 독일 국립도서관법 ····· 132
〈표 3-8〉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 ····· 139
〈표 3-9〉 프랑스 문화유산법전상 국립도서관 관련 규정 현황 ····· 150
〈표 3-10〉 프랑스 법정납본 관련 규정 ····· 165
〈표 3-11〉 프랑스 법정납본 시행령 규정 ····· 168
〈표 3-12〉 프랑스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 ····· 174
〈표 3-13〉 호주 국립도서관법 ····· 180
〈표 3-14〉 호주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 ····· 193
〈표 3-15〉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법 ····· 204
〈표 3-16〉 일본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 ····· 214
〈표 4-1〉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에 관한 개정(안) ····· 223
〈표 4-2〉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확장에 관한 개선방안 ····· 227
〈표 4-3〉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명확화 방안 ····· 229
〈표 4-4〉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 ····· 231
〈표 4-5〉 도서관법상 납본 관련 규정 개선 방안 ····· 234
〈표 4-6〉「도서관법」상 온라인 자료 수집 규정 신설 방안 ····· 236
〈표 4-7〉「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신설방안 ····· 238
〈표 4-8〉「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에 “데이터”개념 포섭 방안 ····· 241
〈표 4-9〉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규정 신설(안) ····· 244
〈표 4-10〉 현행「도서관법」 관련 법령 정비(안) ····· 245
〈표 4-11〉「저작권법」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규정 개정안 ····· 257
〈표 4-12〉 현행「도서관법」 관련 정비(안) 3단 비교표 ····· 265
〈표 5-1〉「국립중앙도서관법」 입법체계 ····· 281
〈표 5-2〉 국립중앙도서관법률(안) ····· 283
〈표 5-3〉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과 도서관법 개정의 장・단점 ····· 293

그림 차례

〈그림 3-1〉 미국 의회도서관(LC) 건물 ····· 81
〈그림 3-2〉 미국 의회도서관(LC) 조직도 ····· 82
〈그림 3-3〉 미국 국가도서관 체계 ····· 94
〈그림 3-4〉 프랑스 국가도서관(BnF) 조직 체계 ····· 161
〈그림 3-5〉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의 공동 프로젝트 ····· 178

요약문

○ 현행「도서관법」은 “도서관에 관한 통합·기본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새로운 영상매체와 콘텐츠가 나옴에 따라 도서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도서 대출, 반납 및 독서공간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자료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영상자료 등이 출현함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현행「도서관법」은 제3장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제18조), 업무(제19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제20조), 온라인자료의 수집(제20조의2), 국제표준자료번호(제2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저작권법」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50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범위 설정, 실효성이 담보된 납본제도, 다양한 자료의 범위 설정 등 도서관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및 국립중앙도서관이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장”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설치, 업무 범위, 직원 교육훈련, 지역대표도서관과의 협력, 납본제도,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도서관 복제 등의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 또한 데이터 경제의 대두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개념 변화 필요성 및 개인정보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도 필요성을 분석하였음
- 더 나아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및 일본 등의 국립도서관 체계, 관련 법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납본제도, 도서관 협력체계는 물론 저작권 제도에 따른 고아저작물 이용 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행「도서관법」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 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확장 방안, 도서관 직원 교육훈련 규정 명확화 방안,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 방안, 도서관 자료 납본제도 개선방안, “도서관자료”에 “데이터 개념”포섭 방안,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제 도입 방안 등의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저작권법」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규정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규정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의 제정 필요성과 제정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 종국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행「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서관행정을 유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지식정보자원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중요한 정보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역할을 공고히 하고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제1장

연구의 배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도서관 관계 법령은 1963년「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후, 1994년「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하게 되었고, 2007년「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화를 하게 되어「도서관법」이 현재 “도서관에 관한 통합·기본법” 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었음

❍ 이처럼 2007년 4월 5일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된 입법목적은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 이었음

❍ 도서관 정책 환경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2007년「학교도서관진흥법」, 2012년「작은도서관 진흥법」, 2015년「대학도서관진흥법」등 관종별로 별도의 법률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도서관 관계 법령이 1963년「도서관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현행법 체계를 통하여 도서관의 사회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도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새로운 영상매체와 콘텐츠가 나옴에 따라 도서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도서 대출, 반납 및 독서공간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지식정보사회에서 도서관 자료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자료에 대한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영상자료 등이 출현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범위 설정, 실효성이 담보된 납본제도, 다양한 자료의 범위 설정 등 도서관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법제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이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정보자원으로써,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중요한 정보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가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및 국립중앙도서관이 적합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상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장”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Ⅱ.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도서관법」상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법령의 개정방안 제시(국립중앙도서관법, 납본법)라는 점에서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이 입법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방법론을 취함

<표 1-1>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	주 요 내 용
문헌조사 연구	· 「도서관법」상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법령 개정방안(국립중앙도서관법, 납본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도모
법령조사 연구	· 도서관 관련 법령을 수집·조사·분석하여, 법 제도의 현황 및 관련 문제점 도출
입법학적 연구	·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법리적·입법 기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반영하는 구체적인 입법(안) 제시
워크숍 개최등을 통한 의견수렴	· 도서관 관련 분야 정책 담당자 및 유관 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워크숍 ·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안)에 반영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실시를 통해 입법을 위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Ⅲ. 자문위원단의 구성·운영을 통한 연구결과의 품질제고

○ 아래와 같이 법제실무와 법이론 및 「도서관법」 관련분야 정책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활용함으로써, 「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법령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 및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강화하였음

<표 1-2> 자문위원단 구성

번호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김수익	법 제 처	법제심의관	법제실무
2	박영욱	법 제 처	법제과장	법제실무
3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행정법
4	장덕현	부산대학교	교 수	문헌정보학
5	이승민	중앙대학교	교 수	문헌정보학
6	차성종	숭의여자대학교	교 수	문헌정보학
7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 수	행정법
8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행정법
9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교 수	행정법
10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행정법

○ 또한 원내 연구진 이외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입법전문가와 관련분야 정책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내용의 정책적 반영도를 제고함

Ⅳ. 월별 수행결과

○ 본 연구는 현행 도서관 법령의 문제점 검토 또는 현황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제전문가는 물론 도서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워크숍, 전문가회의, FGI 조사 등 다면적 실태조사 연구방법론을 채용하여 수행하였음

○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법령 개정방안(국립중앙도서관법, 납본법)을 작성·제시하기 위해서는 기타 관련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부터 법체계적 적합성 기준에 입각하여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함

<표 1-3> 연구 수행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12월
⑴ 현행도서관 관계 현황 분석					
⑵ 국외 주요국 도서관 관계 법령 조사 분석					
(3) 현행 도서관 및 저작권 법제 정비방안 마련					
(4) 현행 도서관 및 저작권 관련법령 개정(안) 및 입법이유서 작성					
(5) 최종보고서(입법이유서를 포함) 작성 및 제출					
전문가 자문	○	○	○	○	○
전문가 회의		○		○	
보 고 회	착수		중간		최종

Ⅴ. 기대효과

○ 「도서관법」상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법령 개정방안(안)을 법이론적·입법 기술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사회환경 및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국립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도서관의 리더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제고에 기여함

○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증대를 통하여 효율적인 역할 수행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적인 기반 구축을 강화할 수 있음

○ 알기 쉽고 친근감 있는 도서관 관련 법령 개정방안(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법적 위상 정립에 기여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도서관에 관한 법령 개정방안(안)의 제시를 통해 향후 이에 관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입법실무에 기여할 수 있음

제2장

현행 도서관 관련 법령 분석

Ⅰ. 도서관 법령의 연혁

❍ 「도서관법」은 1963년도에 제정된 이후 1994년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어 2007년도에 현행「도서관법」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하게 되었고, 2007년도에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법화를 하게 되어 현행「도서관법」이 도서관에 관한 통합·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음

❍ 특히, 도서관 정책 환경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2007년도에 「학교도서관진흥법」, 2012년도에「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고, 2015년도에는 「대학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개별도서관의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도서관법」이 1988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2-1> 도서관법상 관종 구분

연도	관종 구분	관종별 정책부처	참고사항
1963년 「도서관법」	ㅇ공공도서관(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ㅇ학교도서관(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ㅇ특수도서관(전문도서관)	문교부 문교부	cf. 제4조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
1987년 「도서관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대학도서관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ㅇ특수도서관(장애인도서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현행 기본법 체제 cf. 1988년 이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공공도서관·문고 설립운영은 자치단체사무로 규정
1991년 「도서관 진흥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대학도서관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ㅇ특수도서관(장애인도서관)	문화부 문화부 교육부 교육부	cf.문화부이관_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력을 문화부로 이관하는 원칙합의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관논의 부재
1994년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문고 ㅇ대학도서관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ㅇ특수도서관(장애인도서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교육부	-1995년 지방자치제도 본격화: 자치단체장 선거 -2001년 공공도서관설립 신고 문화체육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2003 병영도서관 추가
2007년 「도서관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병영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ㅇ대학도서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문화관광부) (자치단체) (국방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2007년 1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2009년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개칭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 제정 -2015 대학도서관 진흥법

연도	관종 구분	관종별 정책부처	참고사항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교육부	
2020년 「도서관법」	ㅇ국립중앙도서관 ㅇ공공도서관 ㅇ지역대표도서관 ㅇ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병원도서관 - 병영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ㅇ대학도서관 ㅇ학교도서관 ㅇ전문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교육부	-2008년 6월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 -2015 대학도서관 진흥법

Ⅱ. 현행 도서관법의 입법체계

○ 현행「도서관법」은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도서관법」은 목적 조항(제1조)에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2-2> 현행 도서관법의 입법체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6조(사서 등)
제6조의2(자격취소)
제6조의3(청문)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제10조(삭제)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재원의 조달)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8조(설치 등)
제19조(업무)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제22조(설치 등)
제23조(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제25조(운영비의 보조)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제27조(설치 등)
제28조(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3(청문)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33조(사용료 등)
제5장 대학도서관
제34조(설치)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6장 학교도서관
제37조(설치)
제38조(업무)
제39조(지도·감독)
제7장 전문도서관
제40조(등록 및 폐관)

제41조(업무)
제42조(준용)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9장 보칙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국회 보고)
제47조(과태료)
제48조(삭제)

○ 이처럼 현행「도서관법」은 총 9장 체계로 48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1장 총칙 장에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6조(사서 등), 제6조의2(자격취소), 제6조의3(청문), 제7조(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제10조(삭제),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고 있고,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와 관련하여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재원의 조달), 제17조(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관련하여 제18조(설치 등), 제19조(업무),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제4장은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제22조(설치 등), 제23조(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제25조(운영비의 보조),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4장의2 공공도서관 규정과 관련

하여 제27조(설치 등), 제28조(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3(청문),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제33조(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어서 제5장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제34조(설치), 제6장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제37조(설치), 제38조(업무), 제39조(지도·감독), 제7장 전문도서관과 관련하여 제40조(등록 및 폐관), 제41조(업무), 제42조(준용)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9장에 보칙장으로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3(국회 보고), 제47조(과태료), 제48조(삭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Ⅲ. 현행 「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 관련규정 분석

1.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규정 분석

○ 현행「도서관법」제18조에 “국립중앙도서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도서관법 시행령」이 아니라,「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3조제1항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중요한 지식정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제적으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협력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를 격상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유사입법례로 현행「국회도서관법」제4조에 “관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에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제1항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고, 동조제8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도서관법」에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을「도서관법」에 명징하게 입법화하거나,「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 제43조제1항을 개정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를 격상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표 2-3>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현행「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④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현행「도서관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동조제3항에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8조제2항에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조제3항에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고 정하고 있음

○ 이어서「도서관법」제19조제5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시아 지역의 지역학 연구,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 및 해외기업 진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외국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확산, 해외에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신조류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 각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융합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실현함과 더불어 해외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무소 설치 및 한국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제19조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규정과 “재외국민의 도서관 자료 이용에 관한 업무” 를 삽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3. 도서관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명확화

○ 현행「도서관법」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도서관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도서관의 사회적인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도서관 직원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도서관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훈련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음

4. 분절화된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 방안

○ 현행「도서관법」제2조의 정의 규정 3의2호는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4호에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 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 이라 한다)을 “공공도서관” 으로 정하고 있음

○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현행「도서관법」제1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립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국가에 의한 지원체계 등이 없다는 점에서 협력방안의 한계가 있는 등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유사입법례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3조에서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유통,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력망”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표 2-4〉 유사입법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처럼 현행「도서관법」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주체가 다르지만, 국가대표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0조(협력망 구성 등)는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도서관법」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관리 및 이용과 국가대표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전산정보 체계를 통한 도서관 자료의 유통, 도서관자료의 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대여 체계 구비 등 국립중앙

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개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도서관자료의 납본제도 등

<표 2-5> 도서관자료의 납본 관련 법령 현황

현행「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법 제2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 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④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립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1부 ⑥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3조의2에 따른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우리나라는 1965년에 오프라인자료를 납본받기 시작하였고, 온라인자료는 2016년 2월 3일에「도서관법」이 개정함에 따라 2016년 8월 4일부터 납본을 시행하게 되었음

○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오프라인자료는 12,307,623책(점)을, 온라인자료는 18,294,413건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등 온라인자료의 수집이 오프라인 수집 자료를 추월하고 있음

<표 2-6> 온라인 자료 납본 관련 법령의 내용

구분	내용
납본 대상자료	-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을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납본의무자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국내에서 발행 제작한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납본부수	2부(공공간행물의 경우 3부)

납본방법	- 해당 자료와 서지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 해당 자료와 서지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자료와 서지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납본보상	- 판매용 자료로서 열람용 납본부수에 대하여 정가보상
제출기한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현행「도서관법」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의4제2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현행「도서관법」제20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본에 대한 보상금(정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출판사의 경우에 온라인 자료의 제작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본 전자책을 제작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고가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전자책 납본 보상금 수령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서관법」제20조의2제5항에 단서규정을 마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에 일본이 우리나라 법제와 유사하게 “정당한

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해외 선진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표 2-7> 해외 주요국의 납본제도 현황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근거법령	-저작권법 제407조	-저작권법 -법정납본법	-국가도서관법	-문화재법전: 법전납본시행령 -납본법	-저작권법(1968)	-국립국회도서관법
납본자료	-단행본, 녹음자료, 영화자료, 기계가독포맷, 연속간행물	-단행본, 잡지, 신문, 활판인쇄자료, 도표 등	-인쇄물, 전자출판물,네트워크 디지털자료, 번역물, 외국발행 독일관련자료	-인쇄물, 온라인 출판물, 도표, 사진, 포스터, 시청각물, 멀티미디어 자료 등	-국립도서관: 단행본, 정기간행물, 온라인 출판물, 신문, 도표 등 - 7개 주립도서관 : 성격에 따라 구분	-도서: 단행본, 사진자료, 지도 등 -비도서: CD-ROM, DVD 등
납본부수	-도서, 비도서 : 2부 -온라인자료 : 1부 -납본기한	-영국국립도서관 : 1부, 납본도서관 : 5부 -납본기한 (국립도서	-인쇄물 등 2부 -외국발행 1부 -납본기한 7일 이내	-국립도서관, 납본도서관 24개 중 1개관 -1부:단행본, 신문, 잡지,	-1부: 국립도서관(의무), 주립, 의회도서관(성격에	-정부간행물: 2~30부(정부 30부, 행정기관·지방자치기관 5부,

	국내자료: 3개월	관: 1개월, 납본도서관 : 1년)		지도, 악보 -2부: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멀티미디어 자료 -납본기한: 출판과 동시에 납본	따라) -납본기한 : 국립도서관 (1개월), 주립도서관 (1~2개월)	촌락 3부, 법인 2부) -민간출판물 : 1부 -납본기한 : 30일 이내
납본보상금	-무보상(저작권 등록시 자료 납본)	-무보상(법원에서 의무불이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명령)	-무보상(무상 납본이 부당할 경우 제작실비 보상)	-무보상	-무보상	-민간출판물 보상 : 40~60% 실비 -도서 : 40~60% -정기간행물 : 40~50%
과태료	-최대 250$		-최대 1만 유로	-최대 75,000유로	-국립도서관: 100(A$) -주립도서관: 5~200A$	-소정정가 5배

○ 따라서 해외 선진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국가들은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출판사의 상업적인 이익보다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지식자원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그러므로 일부 출판사가 온라인 제작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다만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보존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법」 제20조의2제5항 단서조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국가별 법정 납본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국가별 법정 납본제도의 개요

○ 조사대상 국가에서는 법률에 납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매체에 고정된 디지털 자료(오프라인 자료), 온라인 자료 포함

○ 한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는 도서관법, 미국과 호주는 저작권법, 영국은 납본도서관법, 프랑스는 문화유산법을 통해 법정 납본을 규정

○ 각 법령에는 납본의 목적, 원칙, 핵심적 내용을, 규칙(regulations)과 고시에는 세부 사항이나 절차 등을 명시

○ 온라인자료 납본을 위한 세부 사항은 대체로 시행령, 규칙, 지침, 고시 등에 명시

<표 2-8> 해외 주요국의 법정 납본제도 현황

국가	납본의 근거
한국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납본수집규정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지침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11-1호 수집대상 온라인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미국	저작권법 중 (제407조)의회 도서관을 위한 복제물이나 음반의 납본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중 Title37—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저작권국이 제정하는 연방규정, Circular96라고도 함) 중 Part202-저작권요청에 대한 사전등록과 등록 §202.19 미국의회도서관을 위한 공표된 복제물과 음반의 납본 §202.24 온라인에서만 이용가능한 출판된 전자적 저작물의 납본
호주	Copyright Act 1968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Guide to requirement for publisher 2016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출판물 납입에 관한 규정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출판물 납품에 관한 규정 제1조에 규정된 국가의 여러 기관이 납입해야 할 출판물의 부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출판물의 대상금액에 관한 건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의 기록에 관한 규정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량판 결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건(2000년 9월 27일 국립국회도서관고시 제3호)
영국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법정납본도서관법 -The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2013
캐나다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SOR/2006-337
프랑스	문화유산법(Code du patrimoine) 중 TITRE III : DÉPÔT LÉGAL Article L131-1 ~ Article L133-1 - 문화유산법 시행령 TITRE III : DÉPÔT LÉGAL (Articles R131-1 à R133-1-1)
싱가폴	국가도서관위원회법

(2) 납본 대상 자료

○ 인쇄자료(도서, 연속간행물 등), 전통적 비인쇄자료(마이크로 등) 외 시청각(방송, 영화), 디지털 자료(온라인 자료, 매체에 고정된 오프라인 자료) 등도 납본 실시

○ 프랑스의 경우, 상영된 영화, 홍보/교육용 비디오, 지상파 방송 자료도 납본 대상

<표 2-9> 해외 주요국의 납본 대상 자료 현황

국가	납본대상 자료
한국	법2조 도서관자료 :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유형물),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온라인자료 -시행령 제13조제1항: 도서, 연속간행물 /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際式) 자료 /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시행령 제13조제2항: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은 온라인자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
미국	법 §407 (a) : (c)에 규정된 납본 제외 대상[1] 이외의 미국 내 발행된 저작물
호주	법 195CE 국가도서관자료(National Library material) : 문학, 희곡, 음악, 예술 저작물(work) 또는 이러한 저작물의 다른 판형(edition, 전자 등)) -웹사이트, 웹페이지, 웹파일,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팜플릿, 악보, 지도, 도면, 차트, 도표 또는 주무장관이 지정한 것 -저작권이 존속해야 하고, 시청각으로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오프라인출판물: 인쇄본, 매체에 고정된 전자자료(USB등) *온라인출판물: 전자책, 전자저널, 웹사이트 등(해외 셀프출판 플랫폼에 호스트된 출판물도 포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인 경우, 전자매체 선호(출처:NED)
일본	법 제24조 1항: 1 도서 2 책자 3 연속 간행물 4 악보 5 지도 6 영화 필름 7 전 각호에 게재된 것의 외, 인쇄 기타 방법으로 복제 한 문서 또는 도화 8 축음기 용 레코드 9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자, 그림, 소리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
영국	법 제1조 인쇄된 출판물: (a) 도서(팜플릿, 잡지, 신문을 포함) (b) 활판인쇄물

	또는 악보의 낱장 (c) 지도, 도면, 차트 또는 도표 (d) 위 저작물의 일부 등 인쇄 이외의 저작물: 규칙에서 정한 저작물(오프라인 + 온라인) (웹사이트, 블로그, 전자저널, CD-ROM 등 오프라인 및 온라인저작물)(출처:BL 홈페이지) -영국 내에서 출판 -동일콘텐츠가 인쇄와 전자포맷으로 출판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인쇄 복제물 납본
캐나다	법 2조 출판물 : 인쇄, 온라인, 녹음/녹화물 등 어떠한 매체나 형태 포함 규칙 제4조: 요청시 납본을 하는 항목에 거의 모든 매체를 포괄
프랑스	제L131-2조 -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납본 대상 -인쇄, 그래픽, 사진, 음반, 시청각, 멀디미디어 자료, 소프트웨어와 DB, 전자자료(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 -영화관 상영 영화자료, 광학매체 비디오자료, 정보/교육/홍보용 비디오자료 (6부 이상 대중에 배포) 등은 국립영화영상센터로 납본 -지상파 TV, 라디오, 지방파 VOD, 온라인 자료 중 지상파 방송에 활용된 자료 등은 국립시청각연구소로 납본
싱가폴	법 제10조 제1항 도서관자료(인쇄/전자 형태의 도서/연간물/신문/팜플릿/악보/지도차트 등 + 시청각자료(아날로그/디지털) 등). 단, 온라인자료는 납본대상에서 제외

(3) 납본 제외자료

○ 국가대표도서관에 납본할만한 가치가 없는 자료 +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포함, 비밀, 상업용 광고, 업무상 트랜잭션 레코드 등이 대표적인 납본 제외 대상

○ 각 나라별 납본 제외의 근거는 주로 자료의 중요도/가치, 생산수량, 납본시 출판자의 불이익 여부, 납본자료와의 차별성, 개인정보와 비밀 여부 등

1) § 407(c)에서는 (i) 5부 미만의 사본이 출판되었거나, (ii) 번호가 매겨진 사본으로 구성된 한정판으로 출판된 작품을 납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표 2-10> 해외 주요국의 납본 제외자료 현황

국가	납본 제외 자료
한국	1. 공통사항 가.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 원문DB 구축자료 나. 일반적인 자료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다이어리, 스티커북, 그림연습장, 독후감노트 등) 다. 미제본형 일회성 자료(활용 후 가치가 소멸되는 자료) 라. 학원교재 및 강의자료로 정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방문학습 교재 마.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등이 발행·제작한 저작물 바.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표지, 판권지 등을 달리하면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제작한 자료 사. 통상적인 자료의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 한, 가격이 현저하게 고가(高價)인 자료 아. 주로 광고정보, 판촉정보, 상품정보를 게재한 자료(출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납본수집규정)
미국	단, 건축 또는 공학 관련 도면, 축하 카드, 그림엽서, 개인적으로 발표한 강의, 설교, 연설, 상품, 작품 제작, 서비스 등에 대한 임대, 대여, 라이선스 또는 판매와 관련되어 출판된 인쇄물, 라벨, 기타 광고물품 등 12가지의 납본 예외 조항(출처: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7 §202.19)
호주	저작권법 195CE조: 저작권이 없는 자료, 대부분 시각-청각인 자료 세부적으로 주로 음성/영상자료(녹음, 비디오, 필름), 주로 게임 자료, 주로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저작권 침해 자료, 비밀자료, 인트라넷 처럼 사적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자료, 특정 그룹의 사람만 접근가능한 개인정보로 구성된 자료, 업무상 트랜잭션 레코드(DB 등)(출처: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일본	민간의 온라인자료 중 도서나 연속간행물이 아닌 자료, 유료 자료, DRM 유지 자료
영국	납본 제외 : 녹음물 또는 필름 또는 양자 모두, 그에 부수적인 다른 자료 * 같은 매체로 이미 출판된 저작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에는 미적용
캐나다	별도의 납본 제외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단, 규칙 제4조에 관장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2부를 납본해야 하는 대상의 대부분이 납본 가치가 떨어지는 유형들임(거래 카탈로그, 광고, 홍보자료, 안내문, 가격표 등)
프랑스	Article R132-2 납본제외 자료 1.지자체(시, ville), 상업 또는 행정 관련 인쇄자료 2.선거법상 선거기록 3.100부 이하로 수입된 자료 4.30부 이하로 수입된 악보/무용보 5.납본된 문헌에 수반된 인쇄, 그래픽, 사진자료 6.특허, 산업 디자인/모형 7.사진 모음과 신문 기사나 다른 텍스트의 복제물 8.납본자료의 동일한 재인쇄물 9.국가의 분산화된 서비스, 식민지 영토 대표단, 전국적 단위가 아닌 공공기관, 식민지 영토 자치정부 등의 행정 행위의 자료(collections)

	Article R132-34 지상파 시청각 자료와 녹음자료 중 1.비영리단체가 허가받은 방송, 페이퍼뷰 방송, 텔레비전 홈쇼핑 등 2.비영리단체가 허가받은 라디오, 독립적인 지역/지방/주제 관련 라디오
싱가폴	텍스트 (거의) 없는 자료(양식/달력 등), 개인/비밀 자료, 기관내부 자료(매뉴얼, 회의록 등), 불완전 문서나 완전한 출판물이 없는 초록/요약/목차/첨부자료/부록 등, DB나 웹기반 어플리케이션, 특허, 사진/그림, 사용 안된 영화 장면이나 방송목적 자료

(4) 납본자료의 요건

○ 한국 외 국가에서는 납본자료의 요건에 최선판과 완전한 복제물의 개념을 적용

○ 최선판(최량판, 최선본, best edition) : 법정 납본의 목적을 위해 납본 대상 자료가 가장 우수한 품질의 복제물을 제출(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 완전본(완전판, complete copy) : 법정 납본의 목적을 위해 납본되는 자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된 형태로 복제물을 제출(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 프랑스 : 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 납본 자료의 매체유형별로 자세하게 납본자료의 요건을 제시. 매체유형별 특성에 따라 최선본과 완전판의 요건을 규정

○ 캐나다 :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는 녹음/녹화 자료는 국립캐나다도서관및기록관이 명시한 형태와 품질로 제출하도록 규정

○ 영국 : British Library(BL)는 최선판의 납본을 규정하였고, 타 5개 납본도서관은 가장 최근호와 동일한 품질을 규정

* 관련 법령에 납본자료의 요건 중 여러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선판(최량판)과 완전본(완전한 복제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

<표 2-11> 해외 주요국의 납본자료 요건

국가	납본 자료의 요건
한국	규정 없음
미국	- 법 §407 (a) (1) 최선판의 완전한 복제물 2부(2 complete copies of the best edition) (2) 최선판의 완전한 레코드판 2부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7(저작권국이 제정하는 연방규정) §202.19 공표된 복제본과 음반의 납본 (1) 저작물의 최선판(The best edition of a work): 미국의회도서관이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판형(edition) (2) 완전한 복제본(A complete copy): 해당저작물의 최선판 출판단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예: 완전한 음반은 음반과 함께 출판된 종이와 다른 시각적 매체들을 포함)
호주	법 195CD : 해당 간행물 전체와 동일한 복제물(a copy of the whole of the material)(삽화, 사진, 시청각요소 등을 포함으로 사실상 완전한 복제물 의미) + 전자적 형태는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 접근에 필요한 S/W나 다른 정보(내장 컴퓨터 스크립트 등)를 동반 + 인쇄본(hardcopy)은 공중에게 제공되는 최선본과 같은 방법으로 마감 및 채색되어야 하며, 제본 또는 바느질, 스티치, 접착 필요
일본	법 제25조 : 최량판(最良版, best edition)의 완전한(complete copy) 1부 - 민간생산의 오프라인 자료
영국	법 제4조: 인쇄출판물(BL) - 최선본(best copies)과 동일한 품질의 저작물 법 제5조: 인쇄출판물(타 5개 납본도서관) – 최근호(largest number)와 동일한 품질의 저작물
캐나다	특별 요건 없음. 단, 법 제11조 1항(Providing archival quality copy)에 녹음/녹화자료 중 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요청한 자료는 기록물 보존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되어 해당 요청서에 명시한 형태와 품질의 복제물 제출
프랑스	납본 복제물은 완전한 품질(최선본), 유통되는 것과 동일 대중이 사용가능한 하드웨어를 통해 납본 해당 제품과 관련한 문서를 동반 자료의 보존와 이용을 위해 패스워드/접근키와 함께 제출 자료에 대한 접근 키와 기술적 데이터 포함 납본자료에 수반되는 포켓, 상자, 제본, 설명서 등을 포함 자료의 전달과 장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 제출 영화자료/TV/라디오 자료의 납본시, 시놉시스와 기술적 자료시트(fact sheet), 보도자료, 홍보자료, 특히 광고영상(트레일러), 포스터, 사진 등 포함
싱가폴	규정없음

* 참고

○ 미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7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저작권국이 제정하는 연방규정, Circular 96라고도 함)

Part 202 - 저작권 요청에 대한 사전등록과 등록

§ 202.19 - 공표된 복제본과 음반의 납본

(b) 정의. 이 섹션의 목적에 맞는

(1)(i) 저작물의 최선판(The best edition of a work) : 납본일 이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LC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판형(edition)

(ii) 동일 저작물의 같은 버전에 대해 둘 이상의 출판된 판형 중에서 최선판을 선정하는 기준은 납본 시점에 효력을 가진 최선판 진술서를 참고

(iii) 최선판 진술서에 최선판 선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기술되지 않을 경우, LC가 판단을 통해 납본의 목적에 맞춰 가장 우수한 품질로 고려되는 판을 최선판으로 지정. 예를 들어:

(A) 저작권국이 한 저작물에 대한 둘 이상의 판형이 출판되었음을 알고 있을 때, 의회도서관 내 다른 적합한 담당자와 최선판에 대한 판단을 얻기 위해 상의하여 그 판형에 대한 납본을 요구할 것

(B) 잠재적 납본 대상자는 둘 이상의 출판된 판형이 최선판을 구성하는지 불확실할 때, 저작권 취득과에 질의해야 함

(iv) 한 저작물의 둘 이상의 판형에서 존재하는 차이점이 저작권 취득에 관한(copyrightable) 부분에 관련된 것일 때, 각 판형은 독립된 버전으로 고려되고, 따라서 서로 다른 저작물이므로 최선판에 대한 기준은 적용될 수 없음

* 최선판의 요건은 "Appendix B to Part 202 — LC 장서를 위한 저작권을 가진 출판물의 최선판(Best Edition)" 에서 상세 기술

○ 일본: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선판 결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건> (2000-09-27 국립국회도서관 고시 제3호)

제2조 최선판의 결정기준(패키지계에 한해 적용)
(1) 기록매체의 보존성이 뛰어나야 한다.
(2) 기록매체가 격납된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보관을 위한 특수한 시설이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에 관한 설명서 또는 해설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5) 기록매체의 규격 또는 해당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해당 판을 이용하기 위한 기기의 규격이 보급되어 있을 것
(6) 특별한 기능이 부가되어 있을 것. 단, 특별한 기능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이 부가되어 있지 않을 것.

(5)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 납본 기한: 출판 후 1개월이 보편적(한국, 호주, 일본(민간), 영국, 싱가포르 등)

❍ 일본: 출판 즉시 납본(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한함)

❍ 캐나다: 모든 개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7일 이내 납본

❍ 미국: 3개월로 가장 여유가 많음

❍ 프랑스: 대부분 즉시, 나머지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15일~2개월(최대 6개월)

❍ 납본 비용: 한국, 일본 외에 모두 출판자의 비용으로 납본 의무(특수한 경우 제외)

❍ 한국과 일본 비교: 한국은 시가(市價)로 보상하며, 일본은 매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시가의 절반 내외에 운송료를 더해 보상하고 있어 한국의 보상금액이 많은 편임

❍ 특히, 최근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 보상금 청구를 악용하는 사례 증가에 대책 필요

* 현행 납본비용 조항에 대해 현행 유지, 보상금 감액(시가의 조정) 또는 보상 심의를 통한 비용지급, 무보상(자비 납본) 등의 선택지가 존재하나 추후 국내 출판계의 입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2-12> 해외 주요국의 납본 기한 및 납본 비용 현황

국가	납본 기한	납본 비용
한국	1개월 이내	법 제20조④ 국립중앙도서관은…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도서관자료의 시가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
미국	3개월 이내	무보상주의-자비 납본 법 §407(b)(1)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7 §202.19
호주	1개월 이내	무보상주의-자비 납본(법 195CD (1)(d)(e))
일본	즉시: 국가/지자체/공공적 법인 30일 이내: 민간 등	법 제25조 3항: 해당 출판물의 출판 및 납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납입하는 출판물의 대상금액에 관한 건(고시): 도서 40~60%, 점자 40~80%, 음반 40% 미만 금액 + 납본에 필요한 금액(운송료 등))
영국	BL: 1개월 이내 나머지 5개 납본도서관: 1년 내 서면으로 납본 요청하면 그 후 1개월 내 납본	무보상주의-자비 납본(법 제1조 1항)
캐나다	기본: 이용가능한 날부터 7일 내 소규모 생산, 비정형 출판물 등: 관장이 서면 요청하면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또는 해당요청서에서 지정한 기간 내	무보상주의-자비 납본(법 제10조 1항) 단, 녹음/녹화자료 중 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실비 보상(법 제11조 3항)
프랑스	대부분은 즉시, 상영된 영화는 2개월, 광학매체 영화와 교육/홍보 비디오자료는 1개월(1시간 미만 6개	법/시행령에 보상 언급 없음: 우편료 무료 제L132-1조 법정납본은 납본기관에 해당

	월), 지상파 방송/라디오는 공개 후 15일 내 등	문헌의 제한된 수의 복제물을 전달 또는 무료우편(free of postage)으로 배송하면 완료
싱가폴	4주(법 제10조 1항)	무보상주의-자비 납본(법 제10조 1항)

(6) 납본 부수

○ 납본 부수는 각 국의 납본 전통, 출판물의 속성, 출판물의 가치, 출판물의 희소성, 납본 대상자의 성격 등을 고려해 1부에서 최대 30부까지 다양

* 향후 별도의 납본법 제정을 검토할 경우, 영국 납본법과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의 사례처럼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회도서관, 그 외 납본 기관 등의 납본 목적, 납본자료의 유형, 납본 부수를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음

<표 2-13> 해외 주요국의 납본 부수 현황

국가	납본 부수
한국	2부: 도서관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을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포함) 3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인쇄자료 3부와 디지털파일 3부(학위논문은 1부) 1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용 디지털파일
미국	2부(일반적으로) 단, 저작권법 407조(c)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 Title 37 - Part 202 - §202.19의 (d)(2)에 의해 특정범주료는 1부 납본(3차원 지도표현물, 영화, 5부 이하로 출판된 경우 또는 300부 이하 한정판 판매, 멀티미디어 키트 등)
호주	1부
일본	5-30부: 국가의 모든 기관(공용, 외국 정부간행물의 교환, 기타 국제 교환용) 5부: 국가의 모든기관에 준하는 법인, 2-5부: 지방공공단체의 모든기관(도도부현 5부, 시 3부, 정촌 2부) 2-4부: 지방공공단체의 모든기관에 준하는 법인

	1부: 그 외 민간 등
영국	총 6부 = 6개 납본도서관 각 1부씩(오프라인 저작물 포함)
캐나다	2부(일반적으로): 100부 이상 출판한 모든 인쇄자료, 모든 오디오북 포맷, 비디오 녹화물을 위한 물리적 매체, 악보 등 1부: 녹음/녹화자료 중 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요청한 자료는 1부. 규칙에 1부로 규정된 자료 (a)음악녹음자료 (b)서로 다른 포맷으로 2개 이상의 물리적 부분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출판물 (c)제작부수가 100부 이하인 출판물 (d) 100부 이하로 제작된 출판물의 마스터 복제본을 통해 주문생산한 자료 (e)온라인출판물
프랑스	시행령 R132-4 기본적으로 1부 납본 S/W와 DB는 2부(수입은 1부), 녹음/비디오/멀티미디어자료는 2부(수입은 1부), 상영목적 영화가 디지털이면 2부, 광학매체 비디오자료와 교육/홍보용 비디오자료는 1부, 지상파 TV와 라디오는 완전히 납본(뉴스, 광고방송, 매거진 프로그램 등 납본 예외) 온라인자료는 자동수집(최소 1년 1회, 불가시 납본 요청)
싱가폴	법 제10조 1항 일반적으로 2부이나 전자출판물은 1부(온라인 자료는 납본 제외)

(7) 납본 미이행 벌칙

○ 주요국가의 납본 미이행 벌칙은 과태료 처분(행정법상의 제재)과 벌금 처분(형법상의 형벌): 이 과정에서 즉결심판과 소송 등도 가능(영국, 캐나다)

○ 다만, 벌금 등을 미납해도 구금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원 등을 통해 벌금을 강제 징수하도록 조치

○ 금액 측면: 일본과 영국이 가장 적고, 한국,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순(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프랑스의 과태료/벌금의 규모는 400만원 ~ 약 1억원)

* 관련 법령의 납본 미이행 벌칙 조항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과태료 상향, 벌금에 대한 검토 등이 가능하나 향후 국내 출판계의 입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의적, 반복적 납본 불이행에 대한 가중 처벌도 검토 필요

<표 2-14> 해외 주요국의 납본 미이행 벌칙 현황

국가	납본 미이행 벌칙
한국	법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미국	법 §407 (d) - 납본청구를 받은 이후 3개월 내 미납본 시 저작물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fine) + 요구된 복제물/음반의 소매가총액 또는 소매가 미정시 의회도서관이 해당 저작물 취득에 지출한 비용(특정기금에 납부) - 납본청구를 고의적 또는 반복적 미이행 또는 거부시 위에 추가로 2,500달러의 벌금
호주	법 195CD: 미납본시 10과태료 유닛(penalty unit)=2,100 호주달러(1,700만원) (호주의 벌금 부과 금액단위인 페널티유닛은 2017년 7월 기준 1유닛은 210AUD) 법 195CG: 주무장관은 온오프라인 납본을 위반자가 기소 대신 연방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과태료는 법원이 해당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벌금(fine)의 1/5과 동일
일본	제25조의 2: 민간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미납본 시 출판물 소매가의 5배의 과태료
영국	법 제3조 납본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소송 제기 - 출판자가 납본의무를 준수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납본준수 명령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납본 완수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도서관에 지불하도록 명령 가능
캐나다	법 제20조 즉결심판(summary conviction)을 통해 벌금 처분 -개인: 벌금(fine) 5천달러(캐나다 달러 적용시 427만원) 이하 -법인: 벌금(fine) 10만달러(캐나다 달러 적용시 8,530만원) 이하 -단, 벌금미납은 구금의 대상이 아님(관할법원이나 의회법이 정한 수단에 의해 징수)
프랑스	법 제L133-1조 납본 의무자가 납본의무를 회피한 경우, 75,000유로(9,850만원) 벌금(amende). 단, 피고인에게 지정 기한 내 납본 준수를 명령하여 판결 유예 가능 시행령 R133-1 5급 위경죄(경범죄) 위반으로 납본 과정의 실수에 대해서도 처벌 납부신고서 3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자, 관련 조항에 규정된 문서, 명세서 등을 납본시에 동반하지 않은 자, 관련 조항에 규정된 의무 제출 정보(패스워드, 접근 키, 기술 데이터 등)를 납본에 동반하지 않은 자, 관련 조항에 규정된 납본자료의 품질 기준을 준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도 처벌
싱가폴	법 제10조 제3항 이 섹션을 위반한 도서관자료의 출판자는 유죄이며 최대 5천달러(싱가폴 달러 적용시 413만원) 이내의 벌금(fine)

(8)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 한국: 정부/공공기관 출판물, 장애인용 출판물, 국제표준번호 받은 도서와 연속간행물 등에 대해 온라인 납본 실시

- 법 제20조2(온라인자료의 수집)에서 온라인자료 수집 의무와 기술적 협조 의무(특별한 사유 제외)를 규정 - 납본과 유사

❍ 일본: 공공기관 출판물, 민간의 온라인 도서와 연속간행물 중 관장 지정(무료+국제표준번호 부여) 온라인 자료로 한정되어 온라인 납본 범위가 가장 좁음

❍ 다른 국가들은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의 범위가 광범위함

❍ 온라인자료의 납본 강화를 위한 대안

- 온라인자료의 납본 강화를 위해 법 제20조2 온라인자료의 수집 조항을 법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안

  * 모든 온라인자료 납본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납본자료가 지나치게 급증하고 위반 증가로 과태료 문제 발생

-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온라인자료의 납본 의무가 발생하도록 개정하는 방안

  * 캐나다 법정납본 규칙 제4조에는 수많은 유형의 온라인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 자료는 캐나다 도서관/기록관장의 요청시에만 납본의무가 발생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SOR/2006-337>

> 제4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출판물에 대해서는 관장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부를 납본해야 한다.

- 도서관법상의 법정납본 조항에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온라인 자료의 납본의무를 추가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개인 등) 등에 대한 납본대상 가치판단의 문제의 어려움이 발생

  * 온라인자료 납본대상의 급증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온라인자료 납본업무 과다의 문제 발생

  * 이 경우 대안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대상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선별하는 방식을 응용하여 기관별 온라인자료 리스트 제출 후 선별된 자료에 한해 납본요청하는 방안 검토

- 현행과 같이 온라인자료의 수집의 경우에도, 법 제20조의 2에 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 의무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자료 제공자에게 수집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 포함 검토

<표 2-15>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대상자료 현황

국가	온라인 납본 대상자료
한국	법 제20조 1항, 2항: 1.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도서관자료 3.장애인용 디지털 파일
미국	규칙 §202.24: 온라인에서만 이용가능한 공표된 전자적 저작물의 납본 (a) 저작권법 17 U.S.C. 407(d)에 따라, 저작권국장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1) §202.19(c)(5) 미국에서 출판, 온라인에서만 이용가능한 전자적 저작물 (2) 2010년 2월 24일 이후로 출판될 경우
호주	저작권법 195CC (a) 간행물이 출판되었고 (b)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하며 (c) 도서관장이 그것이 국가도서관장서에 필요하다고 판단(온라인 간행물은

	국가도서관의 요청을 받은 것만 납본 대상) -호주인이 웹사이트에서 출판한 작품과 아마존, Lulu 같은 해외 셀프출판 플랫폼에 호스팅된 작품 포함
일본	-법 제25조의 4 온라인자료(민간):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된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 및 기타 송신수단에 의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송신되는 것 중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중 관장이 정하는 것(무료+국제표준번호 부여에 한함.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법 제25조의 3 인터넷자료(공공):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된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영국	법: 인쇄 이외의 저작물은 별도 규칙에서 정한 저작물 규칙: 비인쇄저작물은 오프라인저작물과 온라인저작물(영국 내 디지털 출판물 수집: 웹사이트/블로그/소셜미디어/전자저널/CD-ROM 등(출처: BL홈페이지)
캐나다	법 제2조 출판물 정의: 인쇄, 온라인, 녹음/녹화물 등 모든 매체, 형태 포함(온라인, 오프라인 디지털도 포함) 법 제10조(1) 출판물 납본: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나 매체의 출판물 규칙 제4조: 요청시 납본 대상 매체의 광범함(즉, 요청 없으면 납본 불필요)
프랑스	법 제L131-2조 대중에게 전자적으로 소통될 목적을 가진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 등도 법정납본의 대상 - 시행령 R132-23 도메인 네임이 .fr 또는 프랑스(인) 관련 웹사이트, 프랑스 내에 설립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BnF 관할) (납본 대상 유형 : 기관/개인의 웹사이트, 유/무료 정기간행물, 블로그, 상업적 웹사이트, 비디오 플랫폼 또는 전자도서(개별적 수집하지 않고 정기 웹 하베스팅 중에 출판사 웹사이트에서 수집(출처: Digital Legal Deposit: France, Nicolas Boring(2018) - 시행령 R132-41 온라인 자료 중 TV, 라디오에 의해 편집되거나 그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활용된 인터넷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국립시청각연구소 관할)
싱가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온라인 자료는 납본대상에서 제외 다만, 법 제7조 위원회의 권한 2항의 (fa)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싱가포르 웹사

	이트에서 이용가능한 온라인자료의 복제물을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시점과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수집 권한 보유 - 납본 대상은 아님)

(9) 온라인 납본대상 요건

○ 한국 외에는 온라인 납본자료의 요건에 최선판(보존을 위한 최고의 품질), 완전판(동반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스크립트, 매뉴얼, 메타데이터, 기타 정보 등),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장기보존과 이용을 위해 DRM 등 제거) 등을 규정

○ 특히, 온라인 출판물의 경우에는 특정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거나 영리적 목적 등의 이유로 DRM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관련 규정이 필요함

* 관련 법령에 오프라인(인쇄, 디지털)과 온라인 자료 모두 납본대상의 요건으로 최선판과 완전판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완전판에 대한 정의에서 오프라인(디지털)과 온라인 자료에 대해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자료보존과 이용에 필요한 S/W, 매뉴얼, 스크립트, 관련 정보,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

<표 2-16>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대상 요건 현황

국가	온라인 납본대상 요건
한국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외에는 별도의 요건 없음
미국	규칙 §202.24 온라인 전자 저작물의 납본: 완전한 복제물
호주	법 195CD (c) 간행물이 전자적 형태일 경우, (i) 어떤 기술적 보호 조치로부터 자유로울 것(DRM 프리) (ii) 국가도서관이 간행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S/W나 다른 정보를 동반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Guide to requirement for publisher : 최선본

일본	온라인자료(민간) : 무료 + DRM-Free +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 중 특정코드(ISBN, ISSN, DOI) + 특정포맷(PDF, EPUB, DAISY) - 동일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출판 시, 최량판(보존을 위한 복제가 용이한 형식 등)을 납본
영국	규칙 15, 16조: 온라인/오프라인저작물 - 저작물의 보존을 위해 가장 적합한 품질 - 출판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 도구, 매뉴얼, 정보(메타데이터, 로그인절차, DRM제거 수단) 등도 함께 납본
캐나다	비인쇄자료 납본시, 관련된 소프트웨어, 매뉴얼, 접근 관련 기술과 정보, 메타데이터 등 같이 납본
프랑스	시행령 R132-23-1과 시행령 R132-42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상파 TV와 라디오에서 활용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주문형 시청각서비스)를 자동화된 절차로 완전히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납본대상자는 프랑스국가도서관(국립시청각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밀번호와 액세스 키를 제공 또는 해당 자료의 복제본 제공 - 납본대상자는 해당 자료의 전달과 장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를 제공
싱가폴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10) 온라인 납본 제외 자료

○ 대체로 법령에서는 납본 제외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지 않음(규칙 등에 명시)

* 법령보다는 납본 관련 규정 등에서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

<표 2-17>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제외자료 현황

국가	온라인 납본 제외자료
한국	납본수집규정 제3조 2항 2. 온라인자료 가.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또는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나. 동일한 내용을 합본과 분책으로 발행한 경우 가독성과 보존·이용가치가 낮은 자료

	다. 짧은 주기로 연속 발행되어 일반적인 개정판으로 볼 수 없는 자료 라. 출판물 자체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을 표시하지 않은 자료 3. 그 외 납본제외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지침」 및 「납본수집지침」을 준용 4.위 기준 외에 납본제외자료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제외 가능
미국	규정 §202.24 온라인에서만 이용가능한 공표된 전자적 저작물의 납본 (a) 미국 저작권법 17 U.S.C. 407(d)에 따라, 저작권등록국장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만 미국 내에서 발행되고 온라인에서만 이용가능한 전자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해당 전자적 저작물의 완전한 복제본 1부 또는 음반 1개를 납본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1) §202.19(c)(5)에서 파악된 범주에 속하는 저작물일 경우에만 요청 가능 (2) 2010년 2월 24일 이후로 출판될 경우에만 요청 가능하다.
호주	저작권법 195CE 국가도서관자료의 의미 (c)저작물 또는 다른판형(edition)이 대부분 시각-청각이 아닐 것(시청각자료제외) (d)다른 판형(edition)의 경우, 해당판형이 텍스트, 그림, 시청각 등에서 이전과 차이가 없는것
일본	법 부칙 제2조: 유상 또는 DRM이 있는 자료는 당분간 납입의무가 면제 온라인 자료 중 다음의 것은 납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간단한 것(각종안내,블로그,트위터,제품카탈로그,학급통신,일기등) ●내용에 증감변경이 없는 것 ●신청・승인 등의 업무가 목적인 것(전자상거래등) ●종이책・잡지와 동일한 버전(디지털 자료 등)이 신청된 것 ●장기이용목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대학 기관리포지터리등) ●기술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것
영국	규칙 제13조 2항 (a) 녹음물 또는 필름 또는 양자 모두 또는 그에 부수적인 다른 자료 (b)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이용가능한 저작물(소셜미디어 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포스팅된 자료 등은 제외) (c) 이 규칙 제정 전에 출판된 저작물
캐나다	납본제외 규정은 없음. 규칙 제4조에 관장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2부 납본해야 하는 대상의 대부분이 납본 중요도가 떨어지는 유형((x) 전자토론그룹, 리스트서브, 게시판, 전자우편의 토론 (y) 포털, 개인 웹사이트, 서비스 사이트, 인트라넷, 다른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구성된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웹사이트 (z) 동적 DB와 원천자료) - 지역 차원의 소식지는 온라인 납본 제외
프랑스	온라인자료 중 납본 제외되는 자료의 유형을 제시하지 않음 다만, 위의 납본 제외 자료가 온라인에도 적용
싱가폴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11) 온라인 납본 기관 및 납본 부수

○ 온라인 납본기관: 대부분 국가대표도서관. 6개의 납본도서관이 있는 영국도 BL에 1번만 납본하면 규칙에 의해 타 납본도서관이 아카이빙된 복제물 이용 가능 가능

○ 온라인 납본부수: 대부분의 국가에서 1부만 적용

*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 납본 부수를 3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로 규정한 것을 1부로 수정하고 납본 파일의 납본기관 공동활용 등 적용 검토

<표 2-18>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기관 및 납본 부수 현황

국가	온라인 납본기관	온라인 납본부수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 2부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3부(공공기관)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1부(장애인용)
미국	미국의회도서관	1부
호주	국립호주도서관	1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부
영국	오프라인 저작물 - BL은 의무 납본 + 타 납본도서관은 법 제1조에 따라 요청시에 납본 의무(요청은 서면으로, 출판일로부터 1년 내, 출판 전에도 가능, 신문 잡지 기타 등 모든 미래의 발간호에 관련) 온라인저작물 - BL에 1부만 납본하면 다른 5개 납본도서관도 이용가능, 규칙19조 - 1번만 납본하면 나머지는 자동납본충족	온라인 저작물 1부

캐나다	국립캐나다도서관 및 기록관	일반적으로 1부 2부: 규칙 제4조 관장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적용((x) 전자토론그룹, 리스트서브, 게시판, 전자우편의 토론 (y) 포털, 개인 웹사이트, 서비스 사이트, 인트라넷, 다른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구성된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웹사이트 (z) 동적 DB와 원천자료)
프랑스	국립프랑스도서관(BnF) - 일반 온라인자료와 프랑스 내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납본 국립시청각연구소 - 지상파 TV와 라디오 제작에 관계된 온라인 자료와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 납본	부수에 대한 언급은 없음 시행령 R132-23-1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수집은 최소 1년에 1회 실시 (기본적으로 자동 하베스팅 기반)
싱가폴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12) 온라인 납본 방법

○ 각 나라별로 온라인자료에 대해 웹 하베스팅(자동수집)를 기반으로 시스템 전송, 별도 송부 등의 방법을 적용

<표 2-19>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방법 현황

국가	온라인 납본방법
한국	시행령 제13조제2항 온라인 자료와 제3항의 공공기관(국가/지자체)이 납본한 자료, 제4항의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의 납본 방법 1.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국립중앙도서관에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여 수집하도록 조치
미국	규정 §202.24(b) 요청에 따라 온라인-온리 저작물의 복제본을 저작권국으로 전송
호주	National edeposit service를 통해 납본. NED 포털, 대규모 FTP, 메일 등 웹사이트는 크롤러(에이전트)를 통한 자동수집
일본	온라인 자료(민간): 파일 및 메타 데이터를 다음 중 하나 (① 자동 수집 , ② 전송 - 국회도서관 송신시스템을 통해 파일과 메타데이터 납부, ③ 송부 -

	DVD-R로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담아 발송)의 방법으로 수집 -허가에 따라 민간 웹사이트의 수집·보존실시(출처: WARP사업 홈페이지) 인터넷자료(공공): 자동수집 하베스팅(출처: WARP사업 홈페이지)
영국	오프라인 저작물 - 물리적 형태가 있으므로 송부 온라인저작물 - 출판자와 납본도서관 사이의 합의된 방법, 그렇지 않으면 웹 하베스트(출처: 규칙 제16조)
캐나다	-온라인 납본 시스템 Electronic Collection -200M이상 파일은 별도 연락 후 처리 -FTP: 많은 파일 제출시 이용 -메일: 연속간행물만 가능(잡지, 저널, 소식지 등)
프랑스	시행령 R132-23-1 및 R132-42 -웹사이트는 크롤러(에이전트)를 통한 자동수집(자동수집 불가시, 복제본 제출 요구) -납본기관과 납본대상자는 모두 파일 추출을 위한 절차를 공동으로 결정 온라인 납본시스템 Extranet du dépôt légal 운영
싱가폴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디지털 파일 납본을 위한 시스템(Deposit Web) 보유. 온라인 자료에 대해 2019년부터 수집 실시 -WEB ARCHIVING SINGAPORE : 웹 크롤러를 통한 하베스팅 -국가도서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문서화된 동의가 필요없이 .sg 웹사이트를 수집, 이용제공, 보존 가능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sg 웹사이트 포함 싱가포르 관련 웹사이트 수집

(13) 온라인 납본 기한과 온라인 납본 비용

○ 온라인 자료 납본 기한은 짧게는 7일(캐나다), 보통은 1개월(한국, 호주, 영국), 길게는 3개월(미국)이며, 일본은 온라인자료의 납본 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음

○ 도서관장이 납본을 서면 요청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위와 같은 기간이 적용

* 현재는 온라인자료가 수집대상이므로 향후 납본 대상으로 변화될 경우,

도서관장이 필요시 요청하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납본해야 하는 조항의 신설 검토 필요

❍ 온라인 납본 비용은 대부분 자비이며, 한국과 일본은 시가(통상금액)으로 보상

❍ 특히, 최근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 보상금 청구를 악용하는 사례 증가에 대책 필요

* 현행 납본비용 조항에 대해 현행 유지, 보상금 감액(시가의 조정) 또는 보상 심의를 통한 비용지급, 무보상(자비 납본) 등의 선택지가 존재하나 국내 출판계의 입장 등도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2-20>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납본 기한과 온라인 납본 비용

국가	온라인 납본 기한	온라인 납본 비용
한국	도서관장이 납본을 서면 요청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본하여야 함	법: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시행령: 도서관자료의 시가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 보상
미국	3개월 이내	무보상주의 § 407(b)(납본영수증 발급에 수수료 부과)
호주	도서관의 납본요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1개월 후 (납본요청은 간행물 출판 후 언제라도 가능)	무보상주의
일본	규정 없음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해 통상 비용을 지불 법 제25조4항4호 온라인자료제공자에게 관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 소요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교부(제공자가 교부불필요 표시하면 예외)
영국	오프라인 저작물 - 출판후 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온라인저작물-요청일로부터 1개	무보상주의 - 자비(법 제1조 적용)

	월이내(규칙 제16조2항)	
캐나다	기본: 이용가능한 날부터 7일 내 소규모생산, 비정형출판물 등: 관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또는 해당요청서에서 지정한 기간 내(법 제10조)	무보상주의 - 자비로 납본 단, 녹음/녹화자료 중 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있다고 판단해 서면요청한 자료는 실비보상(법 제11조3항)
프랑스	언급없음(자동수집 방식. 불가시, 납본기관(BnF, 시청각연구소)이 요청하면 비밀번호, 엑세스 키 등 제공)	무보상주의 - 자비로 납본(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음)
싱가폴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6.「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표 2-21> 「도서관법 시행령」상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관련 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현행「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의3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및 보상 등에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도서관법」상 구체적인 근거의 위임도 없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심의기관인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위무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도서관법」에 「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의3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향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7.「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에 “데이터” 개념 포섭 방안

○ 현행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보존관리,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구축, 도서관 직원 교육과 도서관 지도, 지원 및 협력,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보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적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원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음

○ 최근「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법명칭이 변경되어「지능정보화기본법」에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는바, 동법 제2조제4호나목에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 · 분석 · 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에 “데이터”의 개념을 적시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부문에서 차용해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입법자는「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데이터 개념을 포함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 또는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포함한다)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도서관자료”의 개념에 “데이터”의 개념을 포섭하는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됨

8.「저작권법」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1)「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 「저작권법」에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이용자를 위한 도서 복제, 보존용 복제, 상호대차용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복제 및 서비스, 보상금 지급등,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및 공중 송신 가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 이용,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제50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2)「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제24조의2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하여 동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저작물이 “(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ⅲ)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ⅳ)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3)「저작권법」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 「저작권법」은 도서관등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도서 등의 보존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고, 도서관내에서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등을 디지털방식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저작권법」제31조제2항에서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도서관에 찾아온 이용자들에게 특정자료를 선택적으로 보여주게 됨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한다는 측면에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저작권법」제31조제2항 본문규정에서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도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뿐만 아니라 관련기기(전자책리더기, 휴대폰 등)으로도 복제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저작권법」제31조제4항에서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음. 즉,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을 구입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등이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그 도서 등이 상업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면, 이를 다시 디지털화하기보다는 판매되는 도서를 구매하여 서비스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절판 또는 품절된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 특히 손상되기 쉬운

DVD 자료의 경우에 복제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디지털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저작권법」 제31조제4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도서 등이 손상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형태 판매도서에 대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2-22>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관련 규정 비교

현행「저작권법」	일본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 국립국회도서관과 도서, 기록 및 기타 자료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및 기타 시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도서관 등의 도서, 기록 및 기타 자료(이하 본 조에서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 등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해당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부. 제3항에서 동일)의 복제물을 1인당 일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도서관 자료(이하 본 조에서 “절판 등 자료”)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 원본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멸실, 손상 또는 오손을 피하기 위해 해당 원본을 대신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절판 등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공중송신(송신 가능화를 포함한다. 동항에서도 동일)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립국회도서관은 절판 등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에 대해 도서관 등이나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된 해당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다만 도서등이 손상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u>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u> **<u><신설></u>**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자동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 등에서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도서관 등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 공중 송신되는 해당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작성하고, 해당 복제물을 1인당 일부 제공할 수 있다.

(4)「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표 2-23>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관련 규정 비교

현행「저작권법」	일본「저작권법」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①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된 사실이 분명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불명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통상의 사용료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그 재정과 관련된 이용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 공공 단체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본 항 및 다음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함)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 등이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방법 및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정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항의 재정과 관련된 복제물이라는 취지 및 해당 재정이 있은 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 현행「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만을 받아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가지는 가치를 사장시키게 되고, 그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해결책으로 “법정허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이처럼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와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저작재산권자에게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조제3항에서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가 법정허락 승인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생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고아저작물과 관련하여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공중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EU 고아저작물 지침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교육시설 및 박물관, 기록관, 영화 또는 오디오 유산 기관 및 공공서비스 방송기관이 비상업적으로 특정 유형의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당한 노력을 수행한 것을 기초로 허용한다는 저작권의 제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즉 동 지침 제6조에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와 디지털화, 이용가능화, 색인작업, 목록작성, 보존 또는 복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복제행위는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음

○ 미국의「저작권법」은 고아저작물 적용 관련 법정허락제도와 포괄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고아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fair use)조항에 따라 이루어짐. 특히, 고아저작물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구글 도서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온라인 구글 도서검색에서 도서를 디지털화하고 해당 스캔본을 표시하는 구글의 관행을 합법적이라고 판시했음. 이처럼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규정은 저작물의 이용자를 위한 방어수단의

일종에 불과하고, 면책에 해당할 수 있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저작물의 이용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독일도「저작권법」제61조 고아저작물(Verwaiste Werke)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에서 “고아저작물의 복제 및 공중접근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고아 저작물이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시설,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상 내지 음원유산(Film oder Tonerbe) 분야의 시설들이 소장하는 수집물(Sammlungen)[소장물품, Bestandsinhalte] 중 다음 각 호로서, 이러한 소장물품이 이미 공표되었고, 신중한(sorgfaltig) 탐색을 통해서도 그 권리보유자(Rechtsinhaber)를 확정하거나 발견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 서적, 전문잡지(Fachzeitschriften),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Schriften)에 실린 저작물 및 그 밖의 보호대상, 2. 영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매체, 시청각매체(Bild- und Tontrager), 3. 음반” 을 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 “소장물품에 대해 수인의 권리보유자가 있는 경우, 신중한 탐색을 거친 후에도 모든 권리보유자가 확정되거나 발견될 수 없었으나 알려진 권리보유자로부터는 이용(Nutzung)에 대한 허락(Erlaubnis)을 얻었다면, 소장물품은 복제 및 공중 접근케 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 “발행 또는 방송되지 않은 소장물품이라도, 그들이 이미 권리보유자의 허락 아래 제2항에 언급된 기관(Institution)에 의해 공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해 권리보유자가 사전 동의 했으리라고 신의성실에 따라 기대되는 한, 이들은 위 기관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서 “제2항에 언급된 기관에 의한

복제 및 공중 접근은, 그것이 기관 자신의 공익적(Gemeinwohl) 직무(Aufgaben) 수행을 위해, 특히 소장물품을 보존(bewahren) 및 복원(restaurieren)하고 기관의 수집물(Sammlung)에 대한 접근(Zugang)을 개방하기(eroffnen) 위해 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가 문화적 및 교육 정책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용된 고아 저작물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기관은 디지털화 및 공중 접근을 위한 비용을 전보하는(decken) 사용료(Entgelt)를 청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음

❍ 일본도 著作權法 제67조제1항에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된 사실이 분명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불명 등의 이유로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대신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통상의 사용료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불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음. 동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 및 다음 조에서 '국가 등' 이라 한다)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을 필요로 하지 않음. 이 경우, 국가 등이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처럼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고아저작물 등의 경우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정허락" 제도와 유사함

❍ 그러므로 EU는 고아저작물지침에 따라 도서관 등의 기관에 한정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공중에 공개하는 이용에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고아저작물의 이

용과 관련하여 공정이용 조항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법정허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고아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면책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9.「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관련 등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ⅲ)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즉, 최근에「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정하였는바, 가명정보에 관한 개념을 개인정보개념에 포섭하게 되었음

❍ 이어서「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의2호에서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동법 제2조제8호에서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음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ⅰ)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ii)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i)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v)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v)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i)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표 2-24>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조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하지만「개인정보보호법」제16조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조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특히, 동법 제17조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바, 동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ⅱ)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17조제2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동법 제17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경우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표 2-25>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어서「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에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정하고 있음. 동조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에서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동조의2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의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7(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에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에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고 하겠음. 동조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 등 필요

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조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고, 동조제5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제6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新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新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입법취지로 개정되었다고 하겠음

10.「도서관법」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

○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의 개념으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

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 정리 ·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자료 중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중요자료” 라는 개념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도서관중요자료에 관한 등록제를 통하여 도서관중요자료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료의 접근권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도모함과 아울러 도서관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중요도서관자료” 의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내 유사입법례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 · 소실 중인 상황임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를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 · 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로 정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음

❍ 이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하였고, 동조의3 제1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조의3제2항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동조의3제3항에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 말소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게 되었음

○ 이어서 동법 시행령 제4조의2항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기준”을 두고 있는바, (ⅰ)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ⅱ)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ⅲ)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ⅳ)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신청서를 갖추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동조의3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거나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를 등록하려면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함

○ 따라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 및 관리 등의 지원, 소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의 홍보 활용자료로 활용함

○ 또한「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동법 제2조제1항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고 정하고 있음

○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유형문화재" 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를, "무형문화재" 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 · 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서 지정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 동조제4항에서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국가등록문화재, 시 · 도등록문화재로 구별하고 있음

○ 따라서 「도서관법」 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 의 등록제 도입을 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대상과 범위" 를 획정하고 난 이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제3장

주요국의 국립중앙도서관 법령의 분석

Ⅰ. 미 국

1. 개관

○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이하 LC)[2]은 미국 의회에 소속된 국가 대표 도서관임. LC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US Code」의 “Title 2: The Congress”로 제5장 132조에는 LC가 일반도서관과 법률도서관으로 구성되도록 명시되어 있음. LC는 1800년 4월 24일 미합중국 의회의 도서실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전쟁과 화재로 인해 소실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현재 세계의 지식정보와 미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수집·정리·보존·서비스하는 국가 도서관이 되었음

<그림 3-1> 미국 의회도서관(LC) 건물

2) https://www.loc.gov/

❍ 미국의 LC의 조직은 관장(Librarian of Congress)과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아래 의회를 위한 자료수집과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관리하는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인력 및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사서국(Office of the Librarian), 법률자료와 서비스를 주관하는 법률도서관(Law Library), 일반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서관서비스국(Library Services), 그리고 디지털 자원과 레포지터리,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는 전략기획국(Office of Strategic Initiatives)이 있음

<그림 3-2> 미국 의회도서관(LC)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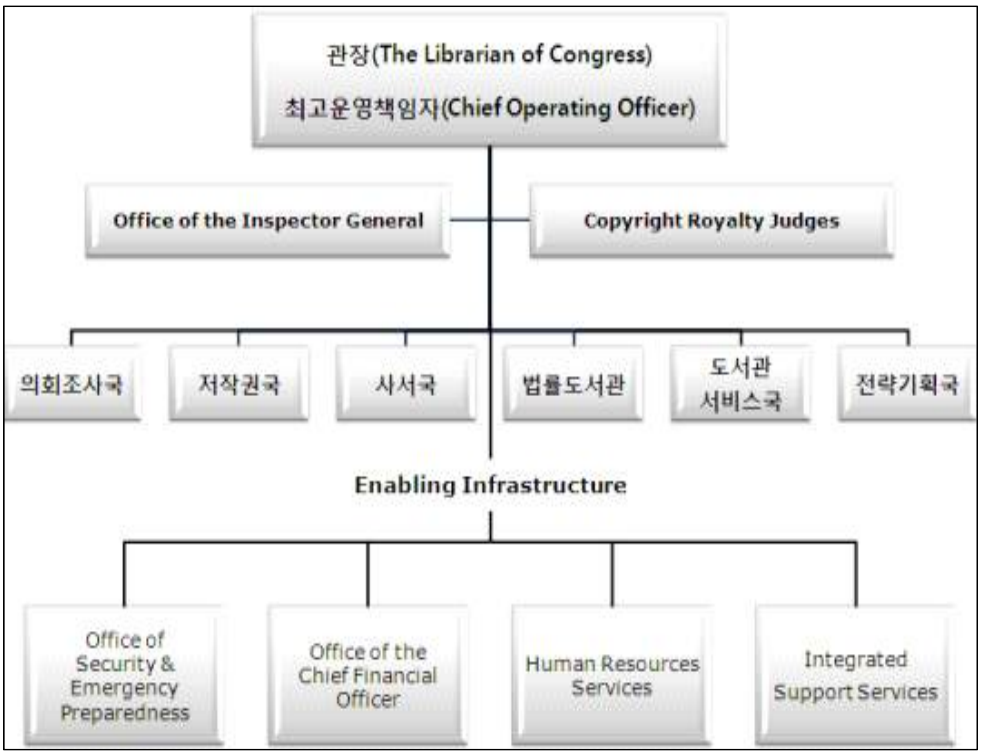

❍ 도서관서비스국의 주요 업무는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인 인쇄 및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편목, 보존, 참고봉사 등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국 아래 수집·서지접근부, 장서·서비스부, 파트너쉽·아웃리치 프로그램부, 보존부, 기술정책부의 5개 부서와 50여 개의 단위 서비스 부서를 마련하고 있음

❍ LC는 첫째, 정보 자원(content)의 측면에서 통일되고 보편적인 형태의 지식과 창의성을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자원을 확장하고 보존함. 이는 장서의 소장 범위를 늘리고 보존하며 새로운 자료로 접근할 때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데 중점을 둠. 성과 중 한 가지는 정보의 장기 보존을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미국 도서관계에서 의회도서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둠. 다음으로는 의회와 국가, 전 세계가 LC가 소장한 장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데이터(descriptive data)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며, 의회와 내·외부 이용자의 지적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둘째, 이용자 측면에서는 LC가 소장하거나 LC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자원들을 탐색하고 이용하는 내부 및 외부 이용자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것은 이용자가 자신의 긴박한 정보 요구를 언제나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정보탐색 능력을 강화시키고, 사회적인 담론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임. 이를 위해 LC는 편견 없는 지식과 더불어 정책과 교육의 공적 담론을 뒷받침 하는 풍부한 학술 자원을 제공하고자 함. 이용자 측면의 성과는 이용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학술적, 교육적, 공공정책과 관련된 화두를 제안할 수 있는 기반 정보 자원에 대한 이용을 확대시킴

❍ 셋째, 대외 봉사 측면에서 의회와 일반 대중에게 LC의 가치와 유익성

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자 함. 이를 위해 LC의 자원과 서비스에 대해 의회와 일반대중의 이용을 늘리거나 극대화시켜야 함. LC의 직원은 폭넓고 유일한 의회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에 정통해야 하므로,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성과로는 이용자가 권위 있는 연구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때 우선적으로 LC를 이용하도록 하고, LC의 이용을 극대화시키며, LC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해 이용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질과 창의성을 개선시키는 것임

2. 미국 도서관의 역사

(1) 디포지터리 도서관(depository library)

○ 미국은 일찍이 1813년에 연방의회는 특정간행물을 연방정부 밖으로 배포하도록 명령하였음. '1895년 인쇄법(Printing Act of 1895)' 은 연방 디포지터리 도서관 프로그램(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과 정부 인쇄청(Government Printing Office)의 역할을 확립하였음

○ 이 법은 배포를 담당하는 공공 문서 감독관(Superintendent of Public Documents)을 두었음. '1962년 디포지터리 도서관법(Depository Library Act of 1962)' [3]은 각 선거구[4]에 두 개의 디포지터리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 법은 자료의 무료 배포를 허용하여 일반 대중의 우편요금을 없앴음. 이 입법 이전에도 도서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여러 유형의 정부간행물을 얻을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었음

3) PL 87-579.
4) 현재 미국 하원의원 선거구는 435개이다. https://catalog.data.gov/dataset/congressional-districts-277f7 참조.

○ 최근의 전자출판 현상으로 감독관에게 추가적인 책임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음. '1993년 정부 인쇄청 전자적 정보 접근 향상법(Government Printing Office Electronic Information Access Enhancement Act of 1993)' [5]은 감독관이 연방의 전자적 정보의 전자적 디렉토리를 유지하고, 법률 및 기타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전자적 저장 시설을 운영하도록 요구하였음

○ 현재 연구자들이 미국 정부간행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연방 디포지터리 도서관은 미국 전역에 걸쳐 약 1350개[6]가 있음. 입법 정보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은 또한 주립 도서관의 발전을 가져왔음

(2) 주립도서관

○ 1816년에서 1819년 사이에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일리노이주, 뉴햄프셔주 및 뉴욕주는 주로 주 입법부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을 설립하였음

○ 뉴욕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York)은 시작부터 그 목표가 주정부와 주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되는 것이었음. 1840년까지 22개의 주립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1876년까지 모든 주가 주도하에 도서관을 갖추게 되었음. 이들 도서관들은 주로 법률 장서(law collection)를 소장하였음

○ 1890년 매사추세츠주는 주립 도서관 커미셔너 위원회(State Board of Library Commissioners)의 창설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확장 및 홍보를 위한 주 기관을 처음으로 조직하였음. 이 기관은 지금도 여전히 운영

---

5) PL 103-40. 44 U.S.C. § § 4101-4.
6) https://www.doi.gov/library/collections/federal-documents 참조.

중임. 1909년까지 34개 주에서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었음

❍ 오늘날 미시간주와 로드아일랜드주의 헌법에는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립 도서관장들은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1956년에 모여 미국 도서관 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의 일원인 주립 도서관 기관 협회(Association of State Library Agencies)를 결성하였음. 이 협회는 현재 전문 협력 도서관 에이전시 협회[Association for Specialized and Cooperative Library Agencies (ASCLA)]라고 불리며 주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밖에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음. 이 협회에는 800개가 넘는 단체 회원이 있음

❍ 주립 도서관 에이전시의 최고 책임자(Chief Officers of State Library Agencies)는 1973년에 COSLA라는 독립 기관을 설립하였음. 주립 도서관장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COSLA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1년에 두 번 만나 도서관 문제를 논의함

(3)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 도서관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96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1996)[7]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에는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 및 기술법이 포함되었음

❍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은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를 창설하였음. 이 법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IMLS로 이전하였음. 또 다른 주요 변화

7) PL 94-462. 현재 '20 U.S.C. Ch. 72 - Museum and Library Services'으로 입법화되었다.

는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임. LSTA 기금은 주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또는 학술 도서관에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금은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되었음

○ 이 입법은 소장(Director)은 4년 동안 근무하고 박물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도서관 및 정보 과학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 4년마다 그 직책을 번갈아 맡도록 명시하였음

○ 이 입법은 또한 박물관과 도서관을 위한 2명의 부국장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행정을 명확히 하였음. 이 입법은 또한 도서관 부국장이 문헌정보학(library science)의 대학원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기관은 기관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물, 유증 및 기타 기부를 받을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의 모든 개인을 위하여 모든 유형의 도서관에서 우수성을 자극하고 학습 및 정보 자원을 촉진하고, 주, 지역, 국가 및 국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을 촉진하며, 도서관 간 연결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기능성 리터러시 또는 정보 기술이 제한적인 사람들(people with limited functional litera[c]y or information skills)에 대한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임

○ 도서관 건설에서 기술 사용으로의 기금 용도의 이동은 미국 도서관의 기금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가져 왔음. 이제 연방 기금은 도서관 서비스에서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강조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계속 기금을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입법 변경의 결과로 많은 주립 도서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음. 도서관 간 대출, 카탈로그 공유, 직원 교육 수업, 리터러시 및 읽기 프로그램, 컬렉션의 디지털

화, 주 전체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부여 및 구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는 LSTA의 기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 중 일부에 불과함. LSTA의 기본 활동은 기술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직원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됨. 많은 주립 도서관은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지원함

(4)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

❍ 2003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2003)[8]은 1996년 법을 개정하였음. 연방 지출을 정당화하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입법은 소장이 입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효과성에 대하여 보고하고, 최선의 관행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주립 도서관에 대한 기본 보조금을 68만 달러로, 테리토리에 대해서는 6만 달러로 늘렸음.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17세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도시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음

❍ 2010년 1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2010)[9]에 서명하였음. 이 법은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의 기존 프로그램을 재승인하였음. 개정된 법문은 IMLS가 연구 및 데이터 수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박물관,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8) PL 108-81.
9) PL 111-340.

에 대해 대통령과 의회에 조언할 것을 촉구함. 이 법은 또한 도서관과 박물관이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참여 시민에 대하여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 새로운 언어는 필수적인 21세기 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10)]

❍ 2018년 12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of 2018)[11)]에 서명하였음. 이 법은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의 기존 프로그램과 기능을 재승인하고 새로운 박물관,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를 개발 및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권한을 제공하고 있음[12)]

3. 관장

❍ 관장은 「US Code」의 “Title 2: The Congress” 제5절 제136조에 근거하여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전제로 대통령령이 임명함. 미국은 역대 관장이 정치 및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도서관 관련 지도자, 문화인, 학자로 보임함

❍ 미국 「US Code」 제2편(의회) 제5절(의회도서관) 제136조 a-2(Librarian of Congress and Deputy Libarian of Congress ; compensation)에서는 관장・부관장 임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보수표(pay schedule)에 의거하여 관장은 부장관급(내각의 부장관)-Level Ⅱ of the Executive Schedule에 해당함. 1999년 개정 이전에는 Level Ⅲ 수준이었음. 부관장은 차관급(Under Secretary)인 Level Ⅲ에 해당함

10) https://www.imls.gov/about-us/legislation-budget/timeline 참조.
11) PL 115-410.
12) https://www.imls.gov/about-us/legislation-budget/timeline 참조.

4. 납본제와 저작권 등록제

(1) 저작권법 제407조 및 제408조

○ 미국의 LC의 자료수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간행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납본제와 저작권 등록제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 미국 내에 생산되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LC 내에 저작권국에 2부를 납본해야 함(무보상주의가 원칙). 납본된 저작물은 저작권국에서 등기절차를 거쳐 저작권을 등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국의 문헌은 자동적으로 수집됨

○ 또한 LC는 외국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에 따라 약 470여 개의 언어로 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일본의 동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음

○ 미국은「저작권법」 제407조, 제408조에서 납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407조는 납본대상과 납본시기, 불이행시 벌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08조는 저작권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제407조 제(d)항에서 납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본기한 이내에 납본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청장은 납본의무자에게 납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납본청구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납본하지 않으면 저작물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또한 납본이 청구된 저작물의 소매가 총액 또는 소매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이 해당 저작물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본 청구를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250달러 이하의 벌금과 특정기금 납부 책임에 추가로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표 3-1> 미국 「저작권법」상 납본 규정

「저작권법」[13]
제407조 (의회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납본) (a)항: 미국 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는 그 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베스트 에디션의 완전한 복제물 두 개를 납본하여야 한다. (b)항: 복제물은 의회도서관의 이용이나 처분을 위하여 저작권청에 납본하여야 한다. 저작권청장은 제출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08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받고 납본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c)항: 저작권청장은 특정 범주의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정 범주에 대해서는 복제물 한 개만 납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개인 저작자가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의 저작권자이고 저작물의 복제물을 5개미만으로 발행하거나 해당 저작물이 번호가 매겨진 복제물로 구성되는 한정판으로 발행되는 경우 그것의 금전적 가치 때문에 저작물의 베스트 에디션의 완전한 복제물 두 개를 납본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제출자에게 실질적인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고 저작물의 만족스러운 보존 기록(archival record)을 목표로 하는 납본의 대체 형태를 규정하여야 한다. (d)항: 저작권청장은 납본 의무자에게 납본을 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본을 하지 않으면 저작물 1건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202.19 Deposit of published copies or phonorecords for the Library of Congress. (c) Exemptions from deposit requirements. The following categories of material are exempt from the deposit requirements of section 407(a) of title 17: (5) 미국에서 발행되고 온라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저작물. 이 면제에

는 §202.24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저작권청이 요구할 때까지만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는 전자적 연재물이 포함된다. 이 면제는 온라인, 전자적 형태와 물리적 형태로 모두 발행되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적절한 필수적 납본의 적용 대상이다.

○ 미국의 LC는 국내외 도서관, 연구기관 간의 자료 교환이나 수증에 의한 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구기관과의 출판물 교환을 통한 자료수집도 하고 있음

(2) 미국의 저작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108조

<표 3-2>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 현황

저작권법 제108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

(a)항: 도서관[14] 또는 해당 직원이 저작물의 복제물[15]을 한 개 만들거나 그것을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다만, 해당 복제나 배포가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도서관이 공공 도서관이며, 해당 복제나 배포에 저작권 고지 또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b)항: 제108조에 따른 복제권과 배포권은 오로지 보존 및 보안을 위해서만 또는 다른 공공 도서관에의 연구용 납본을 위해서만 복제된 미발행 저작물의 복제물 세 개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현재 해당 도서관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으며,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되는 복제물이 디지털 형식으로 배포되지 않고 해당 도서관 건물 밖에서 공중이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c)항: 제108조에 따른 복제권은 손상된, 악화되고 있는, 분실된, 도난당한 또는 저작물이 저장된 기존 형식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복제물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복제되는 발행 저작물의 복제물 세 개에 적용된다. 다

13) U.S. Copyright act of 198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
14) 도서관과 기록보관소가 모두 포함되지만 편의상 '도서관'이라고만 한다.

만, 해당 도서관이 합리적인 노력을 한 후 사용한 적 없는 대체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건물 밖에 있는 공중이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된 복제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d)항: 제108조에 따른 복제권과 배포권은 이용자가 요청한 경우 도서관의 컬렉션이나 정기간행물 중 한 편의 글에 대한 복제물 또는 저작물 일부에 대한 복제물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해당 이용자의 소유가 되고, 해당 도서관이 개인적 학습, 학문 또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복제물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해당 도서관이 그러한 요청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 경고를 눈에 띄게 게시하고 요청 서식에 이를 포함시킨 경우에 한한다.

(e)항: 제108조에 따른 복제권과 배포권은 이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도서관이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정한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도서관 또는 다른 도서관의 컬렉션으로부터 만들어진 전체 저작물이나 그 상당한 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해당 이용자의 소유가 되고, 해당 도서관이 개인적 학습, 학문, 또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복제물이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해당 도서관이 그러한 요청을 접수하는 장소에 저작권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저작권 경고를 눈에 띄게 게시하고 요청 서식에 이를 포함시킨 경우에 한한다.

(f)항: 제108조의 어느 것도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권 또는 도서관이 컬렉션 중 저작물의 복제물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항: 생략

(h)항: 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도서관이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통상적인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고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보존, 학문 또는 연구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그 일부를 팩시밀리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에 규정된 면책은 해당 도서관 이외의 이용자에 의한 후속 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

(i)항: 생략

5. 미국의 국가도서관 체계

○ 미국의 국가도서관체계는 LC를 정점으로 4개(LC, NLM, NAL, NLE)로 구성되어 있고, LC를 제외한 3개관은 국가도서관인 동시에 해당 부처의 부속도서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

<그림 3-3> 미국 국가도서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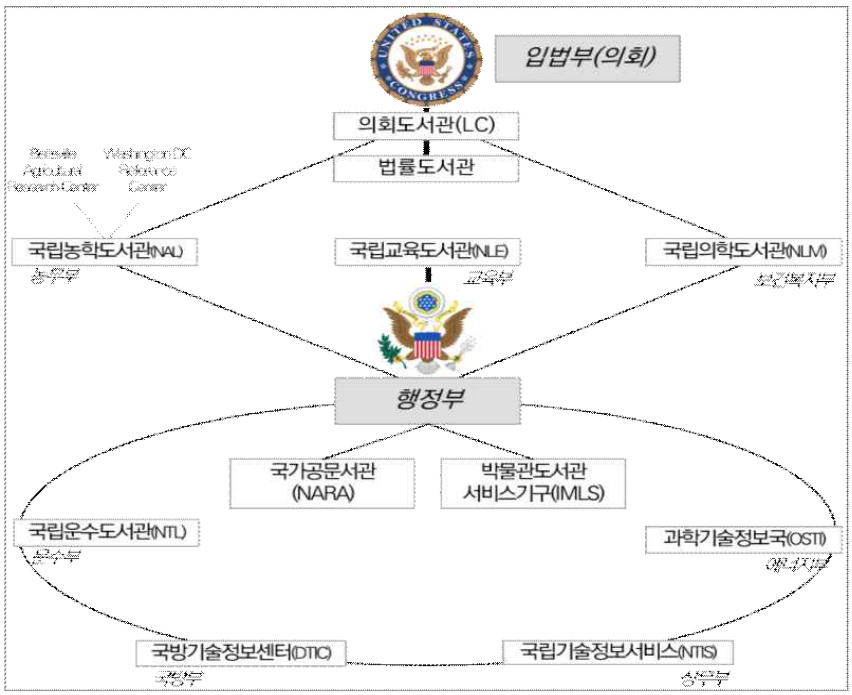

15) 저작물에 대한 복제물 또는 저작물이 고정된 음반을 의미하지만 편의상 '복제물'이라고만 한다.

○ 그러나 의학, 농학, 교육학을 제외하면, 상무부 소속의 국가기술정보서비스(NTIS)는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한 과학기술분야 각종 보고서 중심의 회색문헌을 국가적으로 통괄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각에 위치하면서 연방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방기술정보센터 및 과학기술정보국과 달리 모든 운영비를 자체 조달해야 할 정도로 취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그 외에도 국가공문서관과 박물관도서관서비스기구가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존재한다는 점도 특징적임

6. 의회도서관의 최근 동향

○ LC는 백만 권의 미 정부 출판물과 백만 편의 세계 신문을 3세기에 걸쳐 소장하고 있고, 철된 신문도 3만 3천권, 50만개의 마이크로필름, 6천권의 만화책과 세계 최대의 법학책, 4백 80만점의 지도, 악보, 2백 7십만의 음반, 베츠 스트라디바리우스, 카사베티 스트라디바리우스도 소장하고 있음

○ 미국 의회도서관은 2000년부터 보관중인 모든 자료들에 대해 영인본, 스캔본(사본을 떠서 스캔), PDF,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Word, Microsoft PowerPoint 파일로 변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바, 2020년을 완료시점으로 보고 있음

○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은 일부 자료 보존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도서관과 정보교류를 맺은 다른 기관에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유일본이라 열람이 어려웠던 각종 자료들도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Ⅱ. 영국

1. 개관

○ 영국의 국립도서관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 소속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도서관 정책 및 행정기능을 주관하고 있음

○ 영국의 국립도서관은 세계의 지적,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수집 및 보존하고 있고, 이를 핵심자원으로 삼아 자국 내의 모든 계층을 봉사대상자로 설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보 요구자에게도 원격대출 및 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의 소장 자료는 1억7천만 종 이상에 이르며,[16] 미국 의회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1억3,800만 종 이상이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1천2백만 종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음

2. 국립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의 주요 내용

○ 영국의 국립도서관법(British Library Act) 제1조제1항에서 “영국도서관”으로 알려진 영국 국립도서관의 설립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도서관은 서적, 필사본, 연속간행물, 필름 및 기타 기록물 등의 포괄적인 장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17]

16) British Library, “Facts and figures of the British Library”, https://www.bl.uk/about-us/our-story/facts-and-figures-of-the-british-library

○ 제1조제2항에서 영국도서관은 “영국도서관위원회”로 알려진 공공 당국의 감독과 관리 아래 있게 되며, 위원회의 임무는 영국도서관을 과학기술 및 인문학과 관련하여 참고서비스, 연구, 서지 및 기타 정보 서비스의 전국센터로서 관리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18]

○ 영국의 국립도서관법 제2조제1항에서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의장과 8명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한 명은 여왕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고 정하고 있음. 이어서 동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도서관이나 대학 업무, 재정, 산업 혹은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조제3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의 임명과 규정의 제정 등 운영절차에서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영국도서관과 위원회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는 자문회의(Advisory Councils)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19]

○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기구로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위임받고 있고, 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체의 규정을 제정, 수정, 폐기할 수 있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자료대출, 기타 이용에 관한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음

○ 특히, 영국의 국립도서관과 관련하여 영국도서관법은 영국도서관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다

17) legislation.gov.uk, legislation.gov.uk, 1(1) of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2/54/section/1
18) legislation.gov.uk, 1(2) of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2/54/section/1
19) legislation.gov.uk, 2(1) of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2/54/section/2

른 나라의 국립도서관법에서 흔히 보이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이나 임무, 수집범위 및 납본업무, 국가서지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활동에 필요한 지도 및 지원이나 서지네트워크 등에 관한 조항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관례와 판례가 우선하는 영미법체계의 특성에 따라, 단위 도서관으로서 영국도서관의 지휘체계와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임

<표 3-3> 영국의 「국립도서관법」 20)

이 법은 영국박물관도서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위원회의 감독 및 관리 아래 영국의 국립도서관을 설립하고 관련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1조 영국도서관

(1) 이 법은 "영국도서관"으로 알려진 영국 국립도서관의 설립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도서관은 서적, 필사본, 연속간행물, 필름 및 기타 기록물 등의 포괄적인 장서로 구성된다.

(2) 영국도서관은 "영국도서관위원회"로 알려진 공공 당국의 감독과 관리 아래 있게 되며, 위원회의 임무는 영국도서관을 과학기술 및 인문학과 관련하여 참고서비스, 연구, 서지 및 기타 정보서비스의 전국센터로서 관리하는 것이다.

(3) 위원회는 영국도서관의 서비스가 교육·학습기관, 다른 도서관, 산업 등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a) 위원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고, 다른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후원하는 기능을 두어야 한다.

(b) 위원회는 1964년 공공도서관박물관법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당국의 지출이나,

20) legislation.gov.uk,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2/54/contents

혹은 공무원이든 아니든 도서관 설비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들의 장서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자료를 대출하고, 모든 자료 혹은 시설을 교육 및 문학 또는 문화 성격의 이벤트들과 연결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자료의 대출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자료의 대출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국립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 및 개인들의 관심, 요구 자료의 물리적 상태와 희소성 정도, 그리고 노출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조 위원회

(1)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의장과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을 제외한 위원의 한 명은 여왕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a) 적어도 위원들 중 한 명은(아마도 위원장이 될 수 있음) 상근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b) 위 (a)항에 따라, 의장 및 여왕에 의해 임명된 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위원은 비상근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bb) 장관에 의해 임명된 비상근 위원 한 명은 스코틀랜드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c) 한 명의 비상근위원은 영국박물관의 이사회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관은 도서관이나 대학 업무, 재정, 산업 혹은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우선하여야 한다.

(2A) 위 (1)항 (bb)에 따라 임명하기 전에, 장관은 스코틀랜드 장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와 자문을 거쳐 장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장관 혹은 위원회가 때때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영국도서관과 위원회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는 자문회의(Advisory Councils)를 구성해야 한다.

(4) 이 법령의 부칙 조항은, 위원회와 위원회 위원들에 관하여, 그리고 위원회의 절차 및 부차적인 권한에 관하여, 직원의 고용과 그 기간 및 조건에 관하여, 이 세부조항에 따라 구성되는 자문회의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영국박물관도서관의 이전

(1) 이 조항에 따라서 재산이 귀속되기 바로 전 영국박물관 이사회의 자산이었던 모든 품목은,

(a) 박물관의 인쇄도서부, 필사본부, 동양인쇄서 및 필사본부 등에서 장서를 이루었던 모든 품목은,

(b) 장서의 보관 혹은 관리나 부서의 행정 목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던 모든 품목은, 지정된 날로부터 영국박물관 이사회의 자산에서 영국도서관위원회의 자산이 된다.

(2) 이 법에서 "지정일"이란 법정 명령으로 장관에 의해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3) 위 (1)항은, 이 조항에 의해 위원회 자산이 될 수 없다고, 위원회와 박물관이사회가 문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적용될 수 없다.

(4) 위 (1)항에 관계없이, 박물관이사회는 위원회가 이사회에게 해당 품목이 영국 도서관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경우, 자신들의 소장품에서 해당 품목을 이사회로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품목을 이전할 수 있는 박물관 이사회의 권한은, 해당 품목의 처분을 금지하거나 제약하는(표현에 의하건 아니면 함축적 의미이건) 모든 책임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또는 1963년 영국박물관법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1963년 영국박물관법 제9조에서 언급된 이전의 권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조항에 따라 위원회로 이전된 모든 재산은, 이전에 해당 책임이나 조건에 의해 박물관이사회에 부여되었다면, 동일한 책임이나 조건에 의해 위원회의 소관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6) 박물관이사회는 자신들의 재산을 위원회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합의한 해당 항목(지불조건을 포함하여)에 대해, 영국박물관 직원에 의해 위원회로 양도되는 업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관련 추가조항

(1) 1911년 저작권법의 제15조(영국에서 출판된 모든 책의 출판업자가 그 책의 사본을 영국 박물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는 마치 제(1)항, 제(3)항, 제(6)항에의 영국박물관 이사회의에 대한 (1),(3),(6)항에서 언급된 참고사항이 영국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참고사항인 것처럼 효력을 갖는다.

(a) 1932년 영국박물관법 제1조 1항에서 언급한 이사회에 대한 모든 참고사항들에

대해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이는 이사회에 의해 문서로 요구된 바에 따라 1911년 법의 제15조의 조건들로부터 특정범주의 출판물을 제외한다.)

(b) 해당 법의 제1조 2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박물관 이사회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c) 지정일 직전 발효된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제정된 모든 규정은, 이사회에 대한 관련사항들을 위원회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대체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2) [1993년 폐기]

(3) 위원회는 매년 장관이 지정한 날 이내에 지난 12개월 동안의 위원회의 의사록과 활동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의회의 양원에 해당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재정 및 회계

(1) 장관은 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 영국도서관위원회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재무부는 영국도서관의 관리에 관해서든(이사회의 소장 자료를 위한 새로운 자료의 취득을 포함하여), 또는 일반적인 행정에 관해서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발생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에 지불된 총액의 이용과 지출에 관한 한, 위원회는 장관에 의해 그때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매 회계연도에 위원회가 수령한 재원은, 처리될 자산에 관해서든 또는 제공된 서비스에 관해서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이러한 돈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의 해당 지시는 통합자금(Consolidated Fund)으로 지불되는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적절한 회계 및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각 재정년도의 회계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회계보고는 그해 재정년도의 만기 이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장관에 의해 감사관과 감사원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감사관과 감사원장은 회계보고를 검토하여 이를 인증해야 하며, 감사보고를 더하여 의회 양원에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직원의 고용기간 및 고용조건에 대한 자문

(1) 영국도서관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사건해결의 중재와 관련한 조항에 의거해서,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개인의 고용기간 및 조건에 대해 교섭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과 유지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와 해당 조직 간 결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위원회에 상호 관심이 되는 기타 문제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위원회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개인의 안전, 건강,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들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직의 설립과 유지에 관하여, 양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위원회와 해당 조직 간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사회의 의무이다.

제7조 이 법은 1972년 영국도서관법으로 인용된다.

부칙

제2절 영국도서관위원회와 그 자문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제1조 위원회는 영속적 지위와 공동 인장을 가지는 법인이 되어야 한다.

제2조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부칙조항에 따라, 자신의 임용기간에 준해서 직무를 맡거나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위원은 3년 이하 또는 7년 이상 해당 기간에는 임용될 수 없다.

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장관에게 서면으로 고지함으로써, (혹은 여왕폐하에 의해 임명된 위원인 경우에는 여왕에게 서면 고지함으로써,) 자신의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자신의 위원직을 사직하지 않고도 동일한 고지의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위원장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직 혹은 위원장직을 마친 위원은 재임용될 수 있다.

보수, 수당 및 연금

제5조 (1) 위원회는,

(a) 위원들에게 장관이 결정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b) 장관이 임명한 모든 위원에 대해, 혹은 각각에 있어서, 해당 연금, 수당, 혹은 사례를 지불해야 하며, 또는 연금, 수당, 사례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장관은 위원직을 마친 개인이 보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개인에게 지불하도록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2) 장관은 개인을 위원으로 처음 임명하면, 이 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에게 지불되거나 지불될 수 있는 급료 및 수당의 내역을 의회 양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해당 내역의 명세와 다르거나, 이 조항에 따른 조치가 위원에 대한 연금, 수당, 또는 사례의 지불과 관련이 있다면, 장관은 조치 이후 지체 없이 의회 양원에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3) 이 조항에 따른 장관에 의한 모든 결정과, 그리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요구사항은, 공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1975년 폐기]

의사록

제7조

(1) 위원회의 정족수는 5인이 되어야 하며, 회의의 준비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8조 위원회의 모든 의사록의 효력은, 위원의 결원이나, 임명상의 결함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제9조 위원회 인장의 사용은, 위원회 간사 또는 위원회가 해당 목적을 수행하도록 인정한 일부 사람의 서명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인장으로 정식 시행된 모든 문서나 위원회를 위하여 서명된 모든 문서는 증거 효력을 가지며, 반대의 상황이 증명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시행되거나 서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부차적 권한

제11조

(1)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차적이거나 유익한 것으로서, 해당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법인으로서 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자금을 차용할 권한이 없다.

(2) 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실행 혹은 처리방식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 수정,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소장 자료의 대출 또는 이용에 관해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전술한 바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권한은 자신의 소장 자료의 목적에 맞든 아니든 다음의 세부조항에 준해서 모든 자산을 폐기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이 법의 제3조 (1)항(a)에 의하여, 위원회에 양도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단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a) 위원회의 장서에서 또 다른 자료의 복본이 있을 때(양도되었든 아니든), 혹은 (b) 1850년 이후에 인쇄된 것으로, 사진이나 사진과 유사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해당 자료의 복본이 위원회에 소장되어 있을 때, 혹은 (c) 위원회의 의견으로, 소장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처분될 수 있을 때, 혹은 (d) 그 처리가 1992년 박물관미술관법의 제6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산이 어디에 있든(이 법의 제3조(1)항 (a)에 의해 위원회에게 이전 되었거나 않거나) 1992년 박물관미술관법의 제6조에서 제시한 것을 제외한 신탁이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 위원회는 신탁이나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산을 처리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 그리고 (b) 자산은 위원회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는 어떠한 개인의 수중에서라도 동일한 신탁이나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6) [폐기]

직원

제12조

(1)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기타 공무원을 임명해

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기타 개인들에게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에 의해 결정되는 급료 및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공무원과 기타 개인들의 경우(위원회의 위원이 아님) 이미 정해진 대로 그들에 대하여 연금·수당·사례를 지불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미 정해진 대로 해당 연금·수당·사례의 지불을 이행하거나, 해당 연금·수당·사례의 지불에 대한 계획(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을 세우고 유지해야 한다.

(3) 앞서 언급되었던 계획의 참가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을 때는, 위원은 해당 계획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복무보다는 위원회에 의해 고용된 개인으로서 복무한 것처럼 처리될 수 있다. 해당 계획에 의한 개인의 권리는 이 부칙의 제5조 (1)항 (b)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

(1) 해당일 직전 국가 공무원 또는 영국박물관 이사회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가, 지정일 이후 위원회에 의해 임용된 개인의 경우, 위원회는 그들의 고용기간을 협상함에 있어서, 전체 고용기간이 당시 위원회에 고용되어 있던 이들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다음 조항에서, '1965년 법'은 '1965년 정리해고보상법(Redundancy Payments Act)'을 의미하며, '퇴직연금법(the Superannuation Acts)'은 1965년과 1972년의 퇴직연금법을 의미한다.

(3) 지정 일에 위원회에 고용된 개인이 위 (1)항에서 언급된 대로 해당일 직전 고용되었다면, (a) 1996년 고용안정법(the Employment Rights Act)의 목적을 위해, 개인이 지정 일 이전에 고용된 모든 기간은(아래 (4)항에 의해 제외된 기간이 아닌) 위원회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고용자의 변경이 고용기간의 연속성을 해칠 수 없다.

(b) 만일 개인이 영국박물관 이사회에 고용되어, 그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해당일부터 위원회에 재고용된 경우에도, 그는 1965년 정리해고보상법에 따라 잉여인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4) 이 세부조항에 의해 제외되는 고용기간이, 고용계약의 종료결과로 해당일 이전에 고용이 끝나는 경우에는, 1965년 법 제1부 또는 퇴직연금법이나 대체법령에 따라서, 혹은 1965년 법 제41조 (3)항에서 언급된 조정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 퇴직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자문회의

제14조

(1) 이 법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자문회의는, 장관이 해당 세부조항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의장과 기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자문회의 의장과 다른 자문위원들에게 사례금의 방식으로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공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이 결정한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3. 법정납본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것은, 국가도서관의 기본적 임무로서, 법적 납본제도는 출판자들로 하여금 자국 출판물을 국가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국가도서관의 수집 임무를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발전되어 왔음

○ 영국이 국가적 수준에서 법적 납본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537년 프랑스의「납본법령」을 효시로 보며, 1594년 벨기에, 1610년 영국 등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납본제도를 통해 국가출판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는 국가도서관의 근대적 모델을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영국의 경우는 1709년 저작권법에서 납본규정을 마련한 이후,「2003년 법정납본도서관법」이 제정되기까지 무려 400여 년을 저작권법에서 납본법령을 유지하여 왔음. 저작권법의 납본규정은 1801년, 1814년, 1836년, 1842년, 1911년 모두 5차례 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납본부수의 증감을 다루고 있을 뿐, 대영박물관을 우선하는 납본 전통은 오늘날 1억5천만 점에 달하는 영국도서관 장서를 있게 한 가장 강력한 수집도구로 활용되었음

○ 납본규정은 물론 지상최대의 지식창고를 자임하는 영국도서관의 자존

심을 키워주었던 원동력이었지만, 연간 300만점의 출판물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은 이 규정에 따라 성실히 납본의무를 이행한 영국 출판업자들의 호의적인 참여와 협력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영국에서 법정납본도서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은 a. 영국도서관, b.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 c.옥스퍼드대학 보들리언도서관, d.더블린 트리니티대학도서관, e.웨일스국립도서관, f.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모두 6개관으로 이들은 1911년 저작권법 이래 영국 내 출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책임지고 있음

○ 영국의 「2003년 법정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은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의 납본규정을 대신하여, 인쇄출판물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출판물 등의 비인쇄자료에 대한 납본의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출판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21]

○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수집대상인 녹음자료와 영화자료가 납본대상에서 제외되고, 온라인출판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를 주무장관이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유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출판물 수집에 대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하지만, 이 법은 쟁점이 되는 주요사안에 대한 상세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을 법조항에 마련함으로써, 차후로 이 법에 의한 납본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에는 상세 내용을 장관령으로 제정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상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생명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1) legislation.gov.uk,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28/contents

○ 「2003년 법정납본도서관법」의 내용 중 특징적인 사항으로, 첫째, 납본대상 비인쇄 출판물의 수집범위에서 녹음자료와 영화필름을 제외하고 있는 점, 둘째, 온라인출판물의 수집범위와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주무장관이 별도 제정하도록 한 점, 셋째, 납본도서관의 직원과 이용자에 의한 비인쇄출판물의 복제나 개조 및 제삼자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넷째, 납본도서관이 웹상에서 직접 출판물을 복제하는 웹 하베스팅(Web Harvesting)을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다섯째,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 관련 조항에서 제한을 두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임

<표 3-4> 영국의「법정납본도서관법」(2003)[22]

제1조 출판물의 납본	(1) 영국 내에서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출판하는 자는 그 「출판물」1부를 이 조에 근거해 납입 받는 자격을 갖는 납본도서관에 의해 (일반적으로 혹은 특별한 경우) 지정된 납입처로 자부담으로 납입해야 한다. (2) 더블린 트리니티(Trinity)대학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이외의 납본도서관이 납입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 「출판물」1부를 「납본」도서관에 납입해야 한다. (3) 인쇄출판 저작물의 경우 아래의 법률을 적용한다. 단 「규칙에서」지정된 예외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a) 도서(소책자, 잡지, 신문을 포함) (b) 낱장 활자 인쇄물 및 악보 (c) 지도, 계획, 차트, 표

22) legislation.gov.uk,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28/contents

	(d) 상기 저작물의 일부분 (4)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 법률을 「규칙에서」 명기된 요건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적용한다. (5) 다음에 게재하고 있는 것만으로 구성된 저작물은 「규칙에」 명기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녹음자료 또는 영화필름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 (b) 상기 자료 및 이에 부수하는 다른 자료 (6) 제6조(2)항(h)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1)항에 근거하는 의무는 그 저작의 출판물을 출판되는 매체 형식으로 납입한다. (7) 이 조에서의 「납입처(address)」란 영국 내의 주소 또는 전자주소를 말한다.
제2조 신판 및 별판	(1) 이 법률은 영국에서 기존에 동일한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이 복수의 매체로 출판되는 경우에는 (a) 제1조(1)항을 이들 매체의 한 가지 출판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한편 (b) 그 매체는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3) 주무장관은 규칙에 따라 이 조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이는지 아닌지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집행	(1) 이 조는 법률에 의거하거나 근거해 납본도서관에 의해 지정된 납입처 또는 납본도서관으로 납입해야 하는 자(이 조에서 「출판자(the publisher)」라고 한다.)가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납본」 도서관은 출판자에게 의무의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 재판소의 규칙에 따라 주 법원(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Sheriff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전항[(2)항]의 제기에 다음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 법원 또는 Sheriff 법원이 출판자에게 동항 [(2)항]의 명령을 대신해 의무 불이행에 따른 배상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납본]도서관으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출판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b) 기타 이유에 의해 동항 [(2)항]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인쇄출판물	**제4조 인쇄출판물: 영국도서관**	(1) 영국도서관이사회(the British Library Board)는 제1조에 근거해 인쇄출판 저작물의 [출판물] 1부를 납입받을 자격을 가진다. (2) 출판물은 출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3) 출판물은 납입시점의 영국 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최량판과 동등한 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4) 영국도서관이사회는 (제출이 전자적 방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문서로 수령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5조 인쇄출판물 :기타 납본도서관	(1) 영국도서관이사회 이외의 각 납본도서관은 제1조에 근거해 인쇄출판 저작물을 청구하여 그 출판물을 납입 받을 자격이 있다. (2) 이 조에 근거하는 청구는 (발신이 전자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청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다. (a) 출판 전에 실시할 것.

		(b) 특히 백과사전, 신문, 잡지, 기타 저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행될 모든 권호 또는 속편과 관련지어 실시할 것. (4) 어떠한 청구도 출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할 수 없다. (5) 그 1부는 다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a) 발행일 (b) 발행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청구서가 수령된 일 (6) 출판물은 납입시점의 영국 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최대부수의 것과 동등한 질의 것으로 한다.
제6조 규칙 : 비인쇄출판물의 납본		(1) 주무장관은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에 적용되도록 제1조 및 제2조를 보충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특히 다음 각 호를 정할 수 있다. (a) 납본도서관이 제1조에 근거해 납입처로서의 자격을 얻거나 잃을 경우의 기일 및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b) 제1조(1)항에서 말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출판물과 함께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 및 정보의 복제물과 그 저작물에 부속하여 공중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취급설명서 이외의 자료의 납입을 청구하는 것. (c) 출판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명기된 기간 내에 납입할 것을 요구 하는 것. (d) 전자적 방법에 의한 납입을 인정하거나 요구하는 것 (e) 저작물이 질이 다른 출판물로서 제작된 경우에는 납입해야할 저작물의 질을 정하는 것.

	(f) 저작물이 다른 형태로 출판되거나 공표된 경우에는 [납본]도서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적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정한 조건에 따라 납입하는 저작물의 형태가 결정되도록 규정하는 것. (g) 온라인으로 출판된 저작물을 영국에서 출판된 것으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 (h) 온라인으로 출판된 저작출판물의 제출매체를 정하는 것.
제7조 비인쇄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의 제한	(1) 이 조의 (3)항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관계자는 관계 자료와 관련해 다음 [(2)항]의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2) 그 행위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a) 자료를 이용하는 것.(그 이용이 필연적으로 자료의 일시적인 복제물 제작을 수반하는지 아닌지를 불문한다) (b) 자료를 복제하는 것.(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으로 일시적인 복제물의 제작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 (c) 관계 자료가 컴퓨터·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거나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개조하는 것. (d) 제삼자에게 자료를 빌려주는 것.(납본도서관이 그 관리 하에 있는 도서관시설에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는 제외) (e) 제삼자에게 자료를 건네주는 것. (f) 자료를 처분하는 것.

	(3) 주무장관은 규칙에 따라 관계 자료와 관련된 관계자가 전항 [(2)항]에 들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단 조건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들고 있는 것에 관한 규정을 특히 정할 수 있다. (a) 관계 자료의 이용 또는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 (b) 이용자가 관계 자료의 이용을 개시하는 기일 및 조건 (c) 관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요건 (d) 관계 자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의 제한(납본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전자출판물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대수 제한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5) 이 조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이용자(reader)」란 조사나 연구의 목적으로 납본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그 도서관이 관리하는 도서관시설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b) 「관련 자료(relevant material)」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ⅰ) 인쇄물 이외의 매체로 출판된 저작물로 제1조에 근거해 납입된 것. (ⅱ) 제6조(2)항(b)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자료로서 제6조에 근거하는 규칙에 따라 납입된 것. (ⅲ) 제10조(6)항에 적용되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 (ⅳ) 이 호의 (ⅰ)에서 (ⅲ)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것을 (처분할 즈음에) 복제한 것.

	(c) 「관계자(relevant person)」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ⅰ) 납본도서관 또는 대행자 (ⅱ) 이용자 (d) 납본도서관이라 하면 [스코틀랜드] 변호사회(the Faculty of Advocates)를 포함한다. (6) 이 조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자의 소송에서, 법정의무 불이행의 소송에 적용되는 항변과 기타 부수 조건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비인쇄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 : 저작권 등	(1) 1988년 법 제1부 제3장(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관련해서 인정되는 행위) 중 제44조에 다음의 조를 추가한다. 제44A조 법정납본도서관 (1) 납본도서관 또는 대리자에 의한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복제는 다음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a) 그 저작물이 2003년 법 제10조(5)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 있는 경우. (c) 그 복제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실시된 경우. (2) 2003년 법 제7조에 근거한 규칙 하에서 관계 자료와 관련해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주무장관은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행해진 명기된

	행위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라 이 장의 규정 일부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전항[(3)항]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명기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a) 명기된 목적을 위해 실시된 행위. (b) 명기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용자가 행하는 행위. (c) 명기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계 자료와 관련해 행해지는 행위. (d) 명기된 조건에 따르지 않고 행해지는 행위. (5) 이 조에 근거한 규칙은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6) 이 조에 근거한 규칙은 의회 양원 중 어느 의원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도록 위임법규에서 정한다. (7) 이 조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a)「2003년 법(the 2003 Act)」이란 2003년 납본도서관법을 말한다. (b)「납본도서관(deposit library)」,「이용자(reader)」,「관계 자료(relevant material)」란 2003년 법 제7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c)「명기된 (prescribed)」이라 함은 주무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1997년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과 기타 제 권리에 관한 규칙(the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위임법규 1997년 제 3032호(S. I. 1997/3032))의 제3부(데이터베이스권리(database right)) 중 규칙 제20조에 [규칙 제20A조로서] 다음의 규정을 추가한다.

	데이터베이스권리에 대한 예외 : 납본도서관 규칙 제20A조 (1) 납본도서관 또는 대리자에 의한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복제는 다음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a) 그 저작물이 2003년 법 제10조(5)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그것을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 있는 경우. (c) 그 복제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실시된 경우. (2) 2003년 법 제7조에 근거한 규칙 하에서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1988년 법 제44A조(3)항에 근거하는 규칙은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명기된 행위에 관한 동법 제44A조(2)항의 적용을 제외한 것에 따라 (한편 그 범위 내에서) 전항[(2)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이 규칙 [규칙 제20A조]에서의 용어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2003년 법(the 2003 Act)」이란 2003년 납본도서관법을 말한다. (b) 「납본도서관(deposit library)」, 「관계 자료(relevant material)」란 2003년 법 제7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제9조 면책 : 출판물 등의 납본	(1) 출판자가 제1조에 따라 저작 출판물을 납입할 때 다음의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a) 그 저작물의 어떤 부분도 계약위반이 되지 않을 것.

	(b) 그 저작물의 어떤 부분도 저작권, 출판권, 데이터베이스권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제1조에 따라 저작 출판물의 납입에 전항 [(1)항]을 적용할 경우, 제6조에 근거한 규칙에 따라 제6조(2)항(b)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자료의 복제물을 납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10조 면책 : 출판물에 관련된 행위	(1) 납본도서관 또는 그 대행자는 제1조에 근거해 납입되는 저작 출판물에 대해 제7조(2)항의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을 납본도서관의 책임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a) 납본도서관이 그 저작물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납본도서관이 해당 사실을 알기에 충분한 정황 또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 (b) 납본도서관이 그 정보를 알고 나서 그 저작물에 관련된 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었던 경우 (3) 제1조에 따라 어떤 자(이 조에서는「출판자(the publisher)」라고 한다)가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된 납입처에 저작 출판물을 납입한 경우 출판자는 그 출판물과 관련해 제7조(2)항에서 들고 있는 행위를 관계자가 함으로서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다음의 경우에 전항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a) 출판자가 그 출판물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나, 또는 손

	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출판자가 해당 사실을 알기에 충분한 정황 또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 (b) 출판자가 그 정보를 알고 나서 내용이나 사실·사정을 납본도서관에 알릴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5) 인터넷상에서 출판된 저작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 항[(6)항]을 그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용한다. (a) 저작물이 이 항에 근거한 규칙에 명기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b) 인터넷상의 그 저작물의 출판물 또는 이를 인터넷상에서 출판하는 자가 [전기 규칙에] 명기된 상태로 영국과 관련된 경우 (c) 그 복제물이 [전기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납본도서관이나 그 대리자에 의해 인터넷으로 저작물을 복제해 제작된 것인 경우. (6) 이 항을 저작물의 복제물 1부에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납본]도서관을 제외하고 누구도 그 [복제물] 1부에 관련해 제7조(2)항에서 들고 있는 행위로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b) 제1조에 근거해 납입된 저작물[출판물] 1부에 관련되어 실시된 행위에 이 조의 (1)항,(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제물 1부에 관련되어 실시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7) 이 조에 있어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관계자(relevant person)」란 제7조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b) 제7조(2)항에서 들고 있는 행위란 (제7조에서 정의된) 관계 자료와 관련되어 행해지는 지를 불문하고 그 행위를 말한다. (c) 납본도서관이라 할 때에는 스코틀랜드 변호사회를 포함한다. (8) 주무장관은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책임에 관련해 이 조를 적용하기 위해 규칙에 따라 이 조를 그 규칙에 명기된 조건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포함) 책임에 적용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단 명기된 요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다. (9) 저작물의 복제물에 관련된 행위에 이 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복제물의 (처분에 즈음해) 복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조를 적용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5조 부수적 개정, 폐지 및 삭제	(1) 별표에 나와 있는 규정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폐지되거나 삭제된다. (2) 1925년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of Scotland Act 1925 (c.73)) 제5조(1911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11) 제15조에 기초한 특권의 이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이 조[제5조]의 (1)항에서 (3)항까지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003년 납본도서관법 제1조에 근거한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의 관리기관인 이사회에 납입된 법률출판물은 이사회에서 스코틀랜드변호사회에 송부되는 것으로 한다. (2) 이사회는 스코틀랜드 변호사회가 문서로 지정한 법률출판물을 동법 제5조에 근거해 이사회를 위해 작성

	하는 청구서에 추가하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조의 (4)항 및 (5)항의 「법률서(law books)」를 「법률출판물(legal publications)」로 개정한다. (5) 이 조의 (5)항에 다음의 1항을 추가한다. 「(6) 이 조의 「출판물(publication)」은 전자적 검색시스템에 의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출판물을 포함한다.」

4.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영국 저작권 제도는 1988년에 제정된「저작권법, 디자인 및 특허법」이 2010년 4월 8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영국 저작권법(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Amendment) Regulations 2010)」으로 증보되어 같은 해 6월 8일에 발효되었음[23)]

○ 영국의 저작권법도 수업 또는 시험 목적을 위한 예시(제32조), 교육목적의 선집(제33조),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제36A조),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총칙(제37조), 사서에 의한 복제: 정기간행물의 논설(제38조), 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 저작물의 일부(제39조), 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제한(제40조), 사서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제40A조), 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제공(제41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24)]

○ 특히, 영국 저작권법 제57조에서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규정

23) legislation.go.uk,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Amendment) Regulations 2010,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0/2694/contents/made

24) GOV.UK,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ges-to-copyright-law

을 마련하고 있고, 동법 제66조에서 일정한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 대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25]

<표 3-5> 영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 현황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98 (Amendment) Regulations 2010
제32조(수업 또는 시험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것) ① 수업 또는 수업 준비 과정에서 행하는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복제는 다음에 해당되고, 수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a)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b) 그 복제가 복사 방법에 의하지 않으며, (c)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② 녹음물, 영화, 방송의 저작권은 복제가 다음에 해당되고, 수업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 트랙 제작에 있어 수업 및 수업 준비 과정에서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 트랙제작을 통하여 복제되는 것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b)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②A. 공중에 이용제공되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복제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수업 및 수업 준비 과정에서 복제되는 것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그 복제가 저작물을 공정 취급하고, (b) 그 복제가 수업을 하거나 받는 자에 의하여 행해지고, (c) 그 복제가 복사 방법에 의하지 않으며, (d)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②B.제30(1A)(공중에 이용제공된 저작물) 규정은 제30(1)조의 목적상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제(2A)항의 목적상에도 적용된다. ③ 시험을 목적으로 한 문제의 출제, 지원자에 대한 문제의 전달 및 문제에 대한 답변 등의 행위는, 그 문제들에 충분한 출처표시가 수반되는 경

25) GOV.UK,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ges-to-copyright-law

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③A. 실용성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출처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행위와 관련되거나, 제(1), (2) 또는 (2A)항에 언급된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출처표시도 요구되지 않는다.

④ 제3항은 시험 지원자가 음악저작물을 실연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음악저작물의 복사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물이 되는 복제물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추후에 취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제물은 그 취급의 목적상, 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추후의 모든 목적상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취급된다'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

(a) 판매, 대여 또는 판매,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거나 진열되는 것; 또는

(b) 제3항을 위하여 그 전달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공중에 전달되는 것.

제33조(교육목적의 선집) ① 발행된 어문 및 연극 저작물의 소구절을 다음의 집합물에 포함하는 것은, 당해 저작물이 자체로서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포함에서 충분한 출처명시가 수반되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a) 교육기관에서의 사용이 의도되고, 출판자에 의하거나 출판자를 위한 광고에서 그 뜻이 표현되어 있는 집합물이며, 그리고

(b) 그 집합물이 대부분 어떤 저작권도 존속하지 아니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일한 저작자가 발행한 보호 저작물로부터 2개 이상의 발췌를 5년 이상의 기간 동일한 출판자에 의하여 발행된 집합물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서 동일한 저작자가 제작한 저작물로부터 특정의 구절을 발췌한다는 것은

(a) 그 저작물이 다른 사람과 함께 제작한 저작물로부터의 발췌를 포함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그리고

(b) 당해 구절이 그러한 저작물에서의 발췌일 경우에는, 저작자가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제작한 저작물로부터의 발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④ 이 조에서 교육기관 내에서의 저작물 사용이라 함은 그러한 기관의 교육목적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제36A조(교육기관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기관에 의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출함으로써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37조(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총칙) ① 제38조 내지 제43조(사서 및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에서

(a) 어떤 조항에서 정해진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라 함은 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에 의하여 그 조항의 목적상 규정되는 종류의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를 의미하며;

(b) 어떤 조항에서의 소정의 조건이라 함은, 그와 같이 정해지는 조건을 의미한다.

② 명령은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이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혹은 제공하기 이전에 어떤 사항에 관하여 인정될 것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a) 사서 및 기록보관인은 그것이 구체적 세부사항에 있어 허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복제물 요청자에 의한 그 사항의 서명된 선언에 의지할 수 있다는 뜻, 및

(b)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사서 및 기록보관인은 규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서명한 선언 없이는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뜻.

③ 복제물 요청자가 구체적 세부사항에서 허위라는 선언을 하고, 그가 제작하였다면 불법 복제물로 되는 복제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a) 그 자신이 복제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리고,

(b) 그 복제물은 불법 복제물로 취급된다.

④ 명령은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상이한 종류와 상이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명령은 의회 양원 중 하나의 결의에 따라 폐지될 수 있는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⑥ 이 조 또는 제38조 내지 제43조에서의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는 그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포함된다.

제38조(사서에 의한 복제: 정기간행물의 논설) ① 소정의 도서관 사서는 소정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본문, 본문에 수반되는 삽화 또는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정기간행물의 논설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복제물이 다음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사, 또는

(ⅱ) 개인적 연구;

(b) 누구든지 동일 기사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 또는 정기간행물의 동일호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논설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

(c) 복제물을 제공받는 자는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도서관의 일반경비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는 것.

제39조(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 저작물의 일부) ① 소정의 도서관의 사서는 소정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 혹은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정기 간행물 중 논설을 제외하고)의 일부의 복제물을 발행물로부터 제작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소정의 조건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a) 복제물이 다음을 위해 필요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조사, 또는

(ⅱ) 개인적 연구;

(b) 누구든지 동일 자료의 한 부를 넘는 복제물 또는 어느 저작물의 합리적 비율을 넘는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

(c) 복제물을 제공받는 자는 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서관의 일반경비에 대한 분담금을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된다는 것.

제40조(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의 제작에 대한 제한) ①제38조와 제39조(논설 또는 발행 저작물의 일부의 사서에 의한 복제)의 목적을 위한 명령은 그의 요청이 다른 사람의 어떤 유사한 요청에 관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사서가 인정하는 자에게만 복제물이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명령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a) 요청이 실질적으로 동시에, 동일 목적으로, 동일 자료의 복제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요청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

(b) 자료가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요청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

제40A조(사서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① 어떤 종류의 저작물의 저작권도 그 서적이 공공대출권 요강 내에 있는 경우, 공공도서관의 서적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목적상

(a) "공공대출권 요강" 이란 1979년 공공대출권법(Public Lending Right Act) 제1조에 의해 발효 중인 요강을 말한다.

(b) 서적이 사실상 적합하던지 간에 그것이 자격에 관한 요강의 조항 내에 있는 경우, 서적은 공공대출권 요강 내에 있다.

② 저작물의 저작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공공도서관이 아닌)에 의한 저작물 복제물의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41조(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대한 복제물의 제공) ① 소정의 도서관 사서는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사의 본문 또는 저작물,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 및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다음 각호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소정의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

(a) 정기간행물 중의 논설, 또는

(b)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발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 (b)의 규정은 복제물이 제작된 당시에 그것을 제작한 사서가 복제물 제작 허가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거나 합리적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 복제물) ① 소정의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사서 또는 기록보관인은 소정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어문, 연극 및 음악 저작물, 그러한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 또는 발행물의 경우에는 그 판면배열의 그 어떤 저작권 침해도

없이, 다음 각 호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에 상비된 수집물 중의 어느 품목으로부터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a) 그것에 더하여 또는 그 대신에 그 상비 수집물에 복제물을 둠으로써 그 품목을 보관하거나 대신하는 것.

(b) 다른 소정의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상비 수집물 중의 멸실, 파기 또는 손상된 품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하는 것.

② 소정의 조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품목의 복제물을 합리적으로 구입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만 복제물의 제작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제57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권의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의 추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① 어문,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행해지는 행위, 또는 그 때에 행해진 합의를 이행하는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a) 합리적 조사에 의하여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b) 다음 사항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ⅰ) 저작권이 소멸하였다는 것,

(ⅱ) 행위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해로부터 70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다는 것.

② 제1항 (b)(ⅱ)는 다음 각호의 저작물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국왕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

(b) 저작권이 제168조에 따라 본래 국제기구에 귀속되어 있었던 저작물로서 그 조에 의한 명령이 70년보다 더 장기인 저작권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저작물.

③ 공동저작물과 관련하여,

(a) 제1항에서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은 어느 한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며,

(b) 제1항 (b)(ⅱ)에서 사망한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사망한 모든 저작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제66조(일정한 저작물 복제물의 공중 대출) ①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명령에 명시된 경우에는 어문,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 녹음물, 영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대출이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때에는 저작권심

판소에 의하여 결정된 합리적 사용료 또는 기타 보수의 지급만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자에 의하여 이용허락된 것으로서 처리한다.
② 그와 같은 어떤 명령도 이용허락의 부여에 관한 제143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증명되는 이용허락 요강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그 한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명령은 상이한 경우에 대한 상이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물, 대출된 복제물, 대출자 및 대출 상황에 관련된 어떤 요소를 언급함으로써 각 경우를 명시할 수 있다.
④ 명령은 성문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명령은 명령안이 의회 양원 중 하나에 제출되고, 그 결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면 제정될 수 없다.
⑤ 이 조의 어떤 규정도 불법 복제물의 대출에 관한 제23조(2차적 침해: 불법복제물의 점유 또는 취급)의 어떤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Ⅲ. 독일

1. 개관

○ 독일의 도서관들은 역사 문화적 특성상 주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공립도서관들은 특정 관종을 고집하기 어려울 만치 제도상의 차이는 없음

○ 예를 들어 지역소재 대학도서관이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연구도서관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함. 자치단체의 운영방침에 따라 공립학교도서관 역시 지역주민의 이용에 개방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편익에 대한 주민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행정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음

○ 통일 이후 독일 도서관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한 [도서관 ’ 93]에서는, 독일 내 도서관들을 모두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기준과 협력활동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독일의 도서관들은, 마을문고나 이동도서관 및 분관규모의 공공도서관 활동으로 묶이는 제1수준, 문헌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립중앙도서관 규모의 제2수준,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대형공공도서관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제3수준,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국립도서관과 전문연구도서관들이 포함되는 제4수준으로 나뉘어, 전국적인 수준별 도서관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2. 독일 국립도서관장의 지위

○ 독일 국립도서관(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은 프랑크푸르트 및 라이프치히에 위치함

○ 국립도서관장은 독일 국립도서관 총장(Generaldirektor)과 프랑크푸르트 및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장(Direktor)으로 구분되며[26], 프랑크푸르트 및 라이프치히 국립도서관장은 독일 국립도서관 총장의 대리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독일 국립도서관법(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제10조에 따르면 국립도서관 총장과 라이프치히 및 프랑크푸르트 도서관장은 행정위원회(Verwaltungsrat)가 추천하고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이 임명함

○ 독일 국립도서관 총장의 지위와 관련하여 연방급여법(Bundesbesoldungsgesetz)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의 직(Ämter)과 이들의 급여그룹(Besoldungsgruppen)은 연방급여규정(Bundesbesoldungsordnungen)에서 정하고 있음

○ 연방급여법 별첨 1(Anlage I) 연방급여규정 B(Bundesbesoldungsordnung B)에 따르면 독일 국립도서관 총장은 '급여그룹 B 6(Besoldungsgruppe B 6)'으로 구분됨

○ 국립도서관 총장과 동일하게 '급여그룹 B 6'에 해당하는 직은 대사(Botschafter), 관세청장(Direktionspräsident bei der Generalzolldirektion), 연방군징계법관(Bundeswehrdisziplinaranwalt) 및 상급 연방행정청에서의 부서장(예를 들어 국장, 과장 등)으로서 이사관 등이 있음

---

26) https://www.dnb.de/DE/Ueber-uns/Organisation/organisation_node.html#doc57844bodyText1

○ 독일 국립도서관장의 급여와 관련해서 연방급여법 별첨 4에 따라 ‘급여그룹 B 6’의 월 기본급(Grundgehalt)은 약 10,289유로임

<표 3-6> 독일 연방급여법상 기본급

급여그룹	월 기본급(유로)
B 1	7 038.72
B 2	8 176.63
B 3	8 658.13
B 4	9 161.83
B 5	9 739.93
B 6	10 289.32
B 7	10 819.10
B 8	11 373.67
B 9	12 061.37
B 10	14 197.53
B 11	14 808.25

3. 국립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독일국립도서관에 관한 법(이하 ‘독일국립도서관법(Gesetzes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27]은 국가적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과 국가서지정보센터의 임무를 독일국립도서관의 기본 임무로 규정하고,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1947년 개관)’과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서적관(Deutschen Bűcherei, 1912년 개관)’, 베를린 소재 ‘독일음악자료관(Deutschen Musikarchiv, 1970년 개관)’을 포함하는 복수의 국립도서관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2006년 개정된 새로운 「독일국립도서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종이 및 자기매체 등 유형의 출판매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던 독일 출판물 납본의무 대상을,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무형의 매체에까

27) 2017년 9월 1일자로 제2조가 개정됨; BGBl. I S. 3346.

지 확대 적용하고 있음

○ 무형의 공표저작물(medienwerke in unkőrperlicher form)로 표현되는 인터넷상의 저작물 납본의무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방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인터넷상 저작물 납본의무자는 국립도서관이 로봇에 의한 수집(harvesting)이 가능하도록 독일국립도서관이 지정하는 상태로 인터넷에 개방하기만 하면 되며, 다만 납입대상 출판물의 목록에 해당하는 서지정보 즉, 인터넷 저작물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음

○ 납본에 의한 출판물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답게 「독일국립도서관법」은 납본의무자가 공표저작물을 적시에 납본하지 않는 경우 행정규칙위반으로 1만유로(약1,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음

○ 특히, 「독일국립도서관법」의 내용 중 흥미로운 한 가지는, 국립도서관의 정책결정에서 중요 의결권을 행사하는 13인의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구성원에 출판 및 서적판매 관련 인사들이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음. 제6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위원회'는 연방의회 파견자 2명, 연방정부 문화·매체부 파견 3명, 독일 출판 및 판매업자 조합 파견 3명, 그리고 독일 학술진흥회(German Research Foundation), 독일음악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합, 프랑크푸르트암마인시 당국, 라이프찌히시 당국 등의 파견자 각 1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되고 있음

○ 독일은 출판 및 판매업자들의 노력으로 출발을 보게 된 국가도서관 설립이력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 및 판매업자들이 국가도서

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도서관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표 3-7> 독일 국립도서관법(BGBl. I S. 3346., 2017. 9. 1.)

제1조 법률상의 지위, 소재지	(1) 독일국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고 한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심적 보존도서관·전국서지센터로 한다. (2) 도서관은 라이프치히의 독일서적관(Deutsche Bücherei), 프랑크푸르트의 독일도서관(Deutsche Bibliothek) 및 독일음악자료관(Deutsches Musikarchiv)을 가지는 연방직속의 권리능력을 갖는 공법상의 시설로 한다. 도서관의 소재지는 프랑크푸르트로 한다.
제2조 임무, 권한	도서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가진다. 1. 다음 각 호의 공표저작물을 원상으로 수집, 서지 편목, 색인, 영구보존하는 한편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및 국가서지를 서비스하는 것. a) 1913년 이래 독일에서 공표된 공표저작물(Medienwerk) b) 1913년 이래 외국에서 공표된 독일어로 된 공표저작물, 독일어로 된 공표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에 관해 외국어로 쓰여진 공표저작물 2. 1933-1945 독일망명자 기록보관소(Deutsche Exilarchiv), 안네 프랑크 쇼아(Anne-Frank-Shoah) 도서관, 독일도서및활자박물관(Deutsche Buch- und Schriftmuseum)을 운영하는 것. 3.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전국적 혹은 국제적 전문기구와 공동 협력하는 것.

제3조 공표저작물	(1) 공표저작물이란 유체로서 배포되고 또는 무체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텍스트, 이미지 및 소리에 의한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2) 유체의 공표저작물이란 종이, 전자적 저장매체 및 다른 매체상의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3) 무체의 공표저작물이란 공개된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표현물을 말한다. (4) 음악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 않는 영화작품 및 전적으로 방송에서 내보내는 작품은 이 법률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제4조 정관, 이용, 비용부담의무	(1) 도서관은 관리위원회 구성원 3/4 이상의 다수에 의해 승인된 자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그 정관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방관보에 공시해야 한다. (2) 도서관의 장서는 관리위원회가 채택한 이용규칙에 따라 공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장서 및 도서관 서비스의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비용부담의무를 수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위원회가 승인하는 요금표에 따라 정한다. 요금표는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도서관의 기관으로 한다. 1. 관리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2. 도서관장(Director General) 3. 심의회(Advisory Committees)
제6조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13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임명된다. 1. 연방의회는 2명을 파견한다. 2. 연방정부는 3명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적어도 2명을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

	으로부터 파견한다. 3. 독일출판및판매업자조합은 3명을 파견한다. 4. 독일학술진흥회(German Research Foundation), 독일음악출판사연맹, 연방음악산업연맹, 프랑크푸르트암마인시 당국 및 라이프치히시 당국은 각각 1명씩을 파견한다. 매 구성원마다 각각의 대리자를 지명하도록 한다. (2) 위원장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연방관청 당국에 소속하는 사람으로서 연방정부가 파견하는 구성원이 맡는다. (3) 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의 구성원이 출석하는 경우에 의결능력을 가진다. 이 법률이 다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는 단순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4) 관리위원회는 도서관과 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또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사항 전부에 대해 결정한다. 관리위원회는 특히 예산안을 확인하고 회계검사 종료 후 도서관장의 업무집행을 시인하며 제20조의 규정에 기초해 법규명령의 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 또한 개별 사례에 대해 이 조문 처음 문장에서 정하는 사항의 경우 그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5)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다. (6)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상급 행정당국이 된다. 위원장은 이러한 지위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개별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도서관장	**(1)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위원회 또는 도서관 최상급 행정당국으로서 위원장의 임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서 도서관의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2) 도서관장은 재판상 및 재판 외에서 도서관을 대표한다. 도서관장은 도서관직원의 인사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최고위자가 된다.
제8조 심의회	(1) 심의회는 도서관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관리위원회 및 도서관장에게 조언한다. 독일음악자료관에 관계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에게서 자문을 받는다. (2) 관리위원회는 심의회의 구성원으로 12명까지의 전문가를 지명하며, 그 반수는 독일출판 및 서적판매업자조합의 제안에 기초해 임명된다.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의 위원장도 심의회에 소속된다. (3) 관리위원회는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의 구성원으로 12명 이하의 전문가를 지명하며 그 1/4씩을 독일음악출판사연맹 및 연방음악산업연맹의 제안에 기초해 임명한다. 심의회의 위원장도 독일음악자료관심의회에 소속된다. (4)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9조 합법성 감독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최상급 연방 당국은 도서관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제10조 공무원	(1) 도서관은 연방공무원법 제121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도서관장과 라이프치히 및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상임도서관장 대리는 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제안은 관리위원회 구성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3)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명권한이 정관으로 도서관장에게 위임되어있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1조 피고용인	직원(Angestellter) 및 노동자(Arbeiter)의 노동관계에는 연방정부의 피고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노동협약 및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파산의 경우에 연방정부는 피고용인들이 가져야 할 파산 이득과 동일한 수준에서 변상해야 한다.
제12조 주택복지	건물, 주택 및 임차시설 등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정은 도서관 및 그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제13조 예산, 회계검사	(1) 도서관의 예산운영, 현금관리 및 회계시스템과 결산서 작성 및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연방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2) 예산안의 심의와, 회계감사 종료 후 도서관장의 면책에 관한 결의에는 관리위원회 위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예산사항에 관한 결정에는 연방정부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에 관한 투표는 만장일치로 실시된다. (3) 예산안은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최상급 연방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4) 도서관예산은 연방예산의 기준에 따라 연방으로부터 재정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납본의무	**(1)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a의 규정에 기초해 유체의 공표저작물 2부를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빌려주기만 하는 악보(대출용 자료)에 대해 납본의무를 지는 자는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1부를 납본해야 한다. (2) 최초에 배포권을 가지는 자가 소재지, 사업지 또는 주된 주소를 독일에 두고 있는 경우,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b의 규정에 기초해 공표저작물 1부를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3) 납본의무자는 제2조 제1호 a의 규정에 기초해 무체의 공표저작물 1부를 제16조 제1문의 규정에 따라 납본해야 한다.** **(4) 공표저작물이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

	터 1주일 이내에 납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서관은 독촉을 시행하는 한편 그 후 3주가 경과한 후에도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해당 공표저작물을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다른 방법으로 입수할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납본의무자	공표저작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를 가지며 소재지, 사업지 또는 주된 주소를 독일에 두고 있는 자는 납본의무를 진다
제16조 납본절차	**납본의무자는 공표저작물을 결함이 없고 무기한 이용 가능한 완전한 상태로 도서관에 의한 계속적인 아카이빙에 적합하게 하여 무상 또는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터 1주일 이내에 도서관 또는 도서관으로부터 지정된 기관에 납본해야 한다.** 무체의 공표저작물은 도서관이 제시한 지시에 의거해서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
제17조 정보제공의무	**납본의무자는 도서관에 공표저작물을 납본할 때 도서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납본의무자가 전문에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은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면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정보를 **납본의무자의 비용부담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 입수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8조 보조금	무상에 의한 인도가 부당하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 도서관은 유체 공표저작물의 복제물 생산비용에 대해 납본의무자에게 보조금(Zuschuss)을 제공한다. 상세한 것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과료	(1)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정적 위반이 된다. **1.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표저작물을 납본하지 않고, 적절하게 납본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납본하지 않고, 게시된 방식으**

	로 납본하지 않고, 적시에 납본하지 않은 경우 2. 제17조 제1문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제공하지 않고, 적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납본의무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는 질서위반이 된다. (3) 질서위반은 1만유로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4) 도서관은 행정적 위반에 대한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행정당국이 된다.
제20조 위임받은 행정명령	의무 납본 요구의 체계적인 수행과 도서관 측에 대한 부당한 비용지불을 방지하고, 불공정을 피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문화 및 매스미디어를 소관하는 구성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의 문제들을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1. 수집, 정리, 서지작성, 보존 및 이용제공에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특정 종류의 공표저작물의 납입의무 및 수집의무의 제한 2. 의무적 납본의 대상이 되는 공표저작물의 특성, 그리고 공표저작물이 다른 판으로 배포되거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납본 3. 공표저작물의 납본절차 4. 보조금제공의 조건 및 절차
제21조 주의 법령	공표저작물의 납본에 관한 주의 법령은 이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시행, 실효	이 법률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시행된다. 동시에 2001년 10월 29일의 명령(연방법률공보 제Ⅰ부 2785, 2800페이지)의 제73조에 의해 최종 개정된 1969년 3월 31일의 독일도서관법(연방법률공보 제Ⅰ부 265페이지)은 효력을 잃는다.

4. 저작권법[28]의 주요 내용

○ 독일의 저작권법(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도 사적인, 그리고 그 밖에 자체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제53조), 보상의무(제54조), 보상액수(제54조a), 공공 장소의 저작물(제59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최근에는 독일 저작권법에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제60조d), 도서관(제60조e)에 관한 복제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독일도 저작권법 제61조에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61조a에서 신중한 탐색 및 기록화 의무규정을, 이용의 종료 및 이용 기관의 보상의무(제61조b), 공영 방송기관을 통한 고아 저작물의 이용(제61조c), 법정 보상청구권(제63조a)에 규정하고 있음

<표 3-8> 독일 저작권법[29]상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

제53조 (사적인, 그리고 그 밖에 자체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 (Vervielfaltigungen zum privaten und sonstigen eigenen Gebrauch) (1) 사적인 사용을 위해 자연인을 통해 임의의(beliebig) 매체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개별적 복제는, 직·간접적으로 영리목적에 기여하지 않고, 복제에 있어 명백히(offensichtlich) 위법하게(rechtswidrig) 제작되었거나 공중 접근케 된 복제원본(Vorlage)이 사용되지(verwendet) 않는 한허용된다. 복제 권한이 있는 자(der zur Vervielfaltigung Befugte)는 타인을 통해 복제물이 제작되도록 할 수 있으나, 다만 이러한 행위가 무상으로 이뤄지거나, 임의의 사진제판적(寫眞製版的,photomechanischer) 절차 내지 그 외 이와 유사한 효과(Wirkung)가 있는 절차를 거쳐 종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로 이뤄지는 복제인 경우에 한한다.

28) https://www.gesetze-im-internet.de/urhg/index.html
29) 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2018. 11. 28.).

(2) 저작물의 개별적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되도록 하는 것은 아래의 경우 허용된다.

1. <삭제>
2. 자체적인 기록보존소(Archiv)에 수록(Aufnahme)하기 위해. 다만 복제가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하고, 복제를 위한 복제원본으로 자체적으로 소유한 저작물품(Werkstuck)이 이용되는 경우 그러한 한도 내에서.
3. 시사 문제에 관해 자체적으로 정보를 얻기(Unterrichtung) 위해 방송(Funk)의 방식으로 방송된 저작물을 다루는 경우.
4. 그 밖에 자체적인 사용으로서

a) 발행된 저작물의 작은 일부 또는 신문이나 잡지에 발행된 개별적 기고문을 다루는 경우

b) 적어도 2년 전에 절판된(vergriffen) 저작물을 다루는 경우

제1문 제2호는 부가적으로(zusatzlich)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적용된다.

1. 임의의 사진제판적 절차 내지 그 외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절차를 거쳐 종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2. 오로지 아날로그적 이용만 이뤄지는 경우 또는
3. 기록보존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내지 영리적 목적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제1문 제3호, 제4호는 부가적으로 제2문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삭제>

(4) 필사(筆寫, Abschreiben)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복제는 오직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제2항 제1문 제2호의 요건 아래, 또는 적어도 2년 전에 절판된 저작물에 대한 자체적인 사용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a) 음악저작물의 문자기호적 채보(grafischer Aufzeichnungen)

b) 실질적으로 책 또는 잡지의 전체(vollstandig) 복제

(5)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 소재들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 제1문 제1호 및 제3항 제1호는, 학술적 사용 및 수업에서의 사용에 상업적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Masgabe) 아래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적용된다.

(6) 복제물은 배포되거나 공개 재현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신문 및 절판된 저작물로 부터 합법적으로 제작된 복제물과 그러한 저작물품(Werkstucke)에 있어, 그 중 손상되거나(beschadigt) 멸실된(abhanden gekommen) 작은 일부를 복제물로 대체하여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7) 저작물의 공개 구연, 공연 또는 상영을 영상매체 또는 음반에 수록(Aufnahme)하는 것, 조형예술 저작물에 대한 설계도와 초안을 실시(Ausfuhrung)하는 것 그리고 건축예술 저작물을 모조(模造, Nachbau)하는 것은 언제나 권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제54조 (보상의무) (Vergutungspflicht)

(1) 저작물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복제될 것이 예상된다면(erwarten)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모델(Typ)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기(Geraten)·저장장치(Speichermedien)나 부속물(Zubehor)과 결합하여 위와 같은 복제를 행하는데 이용되는 기기 및 저장장치의 제작자를 상대로, 적절한 보상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2) 정황상(nach den Umstanden) 기기 또는 저장장치가 이 법률의 적용영역 내에서 복제에 이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54조a (보상액수) (Vergutungshohe)

(1) 보상액수에 대해서는, 기기 및 저장장치가 그 모델 자체로서(als Typen)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복제를 위해 사실상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가 기준이 된다. 여기에는 제95조a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technische Schutzmasnahme)가 해당 저작물에 얼마나 적용되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2) 기기에 대한 보상은 기기 내에 포함된 저장장치, 또는 기능상 연동되는(zusammenwirkend) 다른 기기 내지 저장장치에 대한 보상 의무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산출되어야(gestalten)한다.

(3) 보상액수를 정함에 있어 기기 및 저장장치의 이용 관련(nutzungsrelevanten) 특성(Eigenschaften), 특히 기기의 작동성능(Leistungsfahigkeit), 저장장치의 저장용량(Speicherkapazitat) 및 반복기록 가능성(Mehrfachbeschreibbarkeit)을 고려해야 한다.

(4) 보상이 기기 및 저장장치의 제작자를 기대불가능할 정도로(unzumutbar) 해하여서

는(beeintrachtigen) 안 된다; 보상은 기기 또는 저장장치의 가격수준(Preisniveau)과 경제적으로 적절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제59조 (공공 장소의 저작물) (Werke von offentlichen Platzen)

(1) 공공의 도로(Wegen), 거리(Strase) 또는 장소에 상설된 저작물을 회화(Malerei)나 그래픽(Graphik)으로써, 사진으로써 또는 영상매체로써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하는 것은 허용된다. 건축저작물에 있어 이러한 권한(Befugnisse)은 오직 외관(Ansicht)에만 미친다.

(2) 건축저작물에 대해(an Bauwerk)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60조d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학문적 연구를 위해 다수의 저작물(원본자료)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1. 특히 표준화, 구조화 및 범주화를 통해 활용될 수 있는 수집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원본자료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복제하는 것

2. 공통적인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학문적 연구의 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수집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용자는 단지 비상업적인 목적만을 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저작물(Datenbankwerke)이 사용된다면, 이는 제55a조 제1문에 따른 '통상적인 이용(übliche Benutzung)'으로 간주된다.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사용된다면,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활용 및 제87b조 제1항 제2문, 제87e조의 의미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정당한 이익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수집 자료와 원본자료의 복제본은 연구가 종료된 후 삭제되어야 한다; 공중접근도 종료된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와 원본의 복제본을 영구적인 보관을 위해 제60e조와 제60f조에 명시된 기관에 전달(또는 전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60조e (도서관) 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 또는 전시하였던 저작물을 공중접근(Zugänglichmachung), 인덱싱(Indexierung), 범주화, 보존 및 복원을 목적으로 여러 번 그리고 기술적 변경과 함께 복제하거나 복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복원을 목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른 도서관 또는 제60f에서 언급된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도서관은 복원된 저작물 및 신문, 절판 또는 손상된 소장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③ 저작물의 공공전시와 관련하여 행해지거나 또는 도서관 소장물의 문서화를 위하여 행해지는 한, 공공도서관은 제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언급된 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도서관내 단말기에서 연구와 개인적 학업을 위한 사용자들에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은 사용자가 단말기에서 저작물, 개별 삽화, 전문잡지 또는 학술적 잡지의 논문, 그 밖의 사소한 범위의 저작물 및 비상업적 목적의 절판된 저작물의 최대 10%까지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⑤ 개별 주문에 대해 도서관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출판 저작물, 전문잡지 또는 학술적 잡지에 게재된 개별 논문(또는 기고문)의 최대 10%까지 복제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제61조 (고아(孤兒) 저작물) (Verwaiste Werke) ① 고아 저작물의 복제 및 공중 접근은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②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고아 저작물이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시설, 박물관, 기록보존소 그리고 영상 내지 음원유산(Film- oder Tonerbe) 분야의 시설들이 소장하는 수집물(Sammlungen)[소장물품, Bestandsinhalte] 중 아래의 것들로서, 이러한 소장물품이 이미 공표되었고, 신중한(sorgfaltig) 탐색(Suche)을 통해서도 그 권리보유자(Rechtsinhaber)를 확정하거나(festgestellt) 발견할(ausfindig gemacht)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 서적, 전문잡지(Fachzeitschriften),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Schriften)에 실린 저작물 및 그밖의 보호대상
2. 영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매체, 시청각매체(Bild- und Tontrager)
3. 음반

③ 소장물품에 대해 수인의 권리보유자가 있는 경우, 신중한 탐색을 거친 후에도 모든 권리보유자가 확정되거나 발견될 수 없었으나 알려진 권리보유자로부터는 이용(Nutzung)에 대한 허락(Erlaubnis)을 얻었다면, 소장물품은 복제 및 공중 접근케 될 수 있다.
④ 발행 또는 방송되지 않은 소장물품이라도, 그들이 이미 권리보유자의 허락 아래

제2항에 언급된 기관(Institution)에 의해 공중에게 접근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제1항에 따른 이용에 대해 권리보유자가 사전동의했으리라고 신의성실에 따라 기대되는 한, 이들은 위 기관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언급된 기관에 의한 복제 및 공중 접근은, 그것이 기관 자신의 공익적(Gemeinwohl) 직무(Aufgaben) 수행을 위해, 특히 소장물품을 보존(bewahren) 및 복원(restaurieren)하고 기관의 수집물(Sammlung)에 대한 접근(Zugang)을 개방하기(eroffnen) 위해 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가 문화적 및 교육정책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허용된다. 이용된 고아 저작물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기관은 디지털화 및 공중 접근을 위한 비용을 전보하는(decken) 사용료(Entgelt)를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a (신중한 탐색 및 기록화의무) (Sorgfaltige Suche und Dokumentationspflichten)

①제61조 제2항에 따른 권리보유자에 대한 신중한 탐색은 각 소장물품 그리고 이에 포함된 그 밖의 보호대상에 대해 실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 별지(Anlage)에 표시된 출처에 대해 조회(konsultieren)가 이뤄져야 한다. 신중한 탐색은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권리보유자 관련 정보가 다른 국가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단서(Hinweis)가 있을 경우, 그 다른 국가에서 문의 가능한(verfugbar) 정보출처에 대해서도 조회가 이뤄져야 한다. 이용(nutzend) 기관은 신중한 탐색의 실행을 제3자에게 위임(beauftragen)할 수 있다.

②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매체 및 시청각매체와 관련하여, 신중한 탐색은 제작자의 주영업소 또는 상거소(gewohnlichen Aufenthalt)가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③ 제61조 제4항에 언급된 소장물품에 대해서는, 권리보유자의 허락 아래 소장물품을 전시하거나(ausgestellt) 대여한 기관의 소재지가 있는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 신중한 탐색이 실행되어야 한다.

④ 이용 기관은 자신의 신중한 탐색을 문서화하고, 아래의 정보를 독일 특허상표청에 송부해야(zuleiten) 한다.

1. 신중한 탐색 결과 고아인 것으로 밝혀진 소장물품의 정확한 표시
2. 기관이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방법(Art)
3. 제61조b에 의해 이용된 고아 저작물 각각의 상황(Status) 변경
4. 이름, 주소 및 경우에 따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관 연락정보

위 정보는 독일 특허상표청에 의해 지체 없이 '역내 시장의 조화에 관한 관공서' (유럽공동체 상표청)(Harmoniesierungsamt fur den Binnenmarkt(Marken, Muster, Modelle))에 전달되어야 한다.

⑤ 유럽공동체 상표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고아가 된 것으로 기록된(erfasst) 소장물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탐색이 필요하지 않다.

제61조b (이용의 종료 및 이용 기관의 보상의무) (Beendigung der Nutzung und Vergutungspflicht der nutzenden Institution) 소장물품의 권리보유자가 나중에(nachtraglich) 확정되거나 발견된 경우, 이용 기관은 이를 알게 되자마자 이용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한다. 권리보유자는 이용 기관을 상대로 이미 이뤄진 이용에 관해 적절한 보상의 지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제61조c (공영 방송기관을 통한 고아 저작물의 이용) (Nutzung verwaister Werke durch offentlich-rechtliche Rundfunkanstalten) 2003. 1. 1. 이전에 공영(公營, offentlich-rechtliche) 방송기관(Rundfunkanstalten)에 의해 제작되어 방송국의 수집물에 속하게 된 아래의 것들에 대한 복제 및 공중 접근은, 역시 공영 방송기관에 의해 제6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요건에 따라 허용된다. 제61조a 및 제61조b가 준용된다.

1. 영상저작물 그리고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영상매체 및 시청각매체
2. 음반

제63조a (법정 보상청구권) (Gesetzliche Vergutungsanspruche) 저작자는 이 장에 따른 법정 보상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법정 보상청구권은 사전에 관리단체에게만, 만약 출판인과 저작자의 권리를 함께(gemeinsam) 관리하는 관리단체에게 출판인이 위 권리를 관리시킨 경우라면 출판권의 설정과 함께 출판인에게만, 각 양도될 수 있다.

Ⅳ. 프랑스

1. 개관

○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관련 규정은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30]에서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의 국가도서관(BnF)은 5개관, 즉 미테랑도서관(The François Mitterrand Library, Site François-Mitterrand), 리슐리외도서관(The Richelieu Library, Site Richelieu-Louvois), 해사도서관(The Arsenal Library, Bibliothèque de l’Arsenal), 오페라도서관(The Opera Library, Bibliothèque-Musée de l’Opéra), 장빌라르 도서관(Maison Jean Vilar)[31]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랑스 및 프랑스령해외도(海外島)에서의 법적 기탁(법정납본: DÉPÔT LÉGAL)은 문화유산법전(법률 제L131-1조부터 법률 제L133-1조까지 조문 및 시행령 제R131-1조부터 시행령 제R133-1-1조까지의 조문)의 적용을 받음[32]

30) 프랑스의 법제의 편제 체계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형식의 규범과 정부(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 형식의 규범을 함께 엮어 ‘법전’의 형태로 편찬함. L.이라고 시작되는 일련번호는 법률형식의 규범 조문에 해당하며, R.이라고 시작하는 일련번호는 시행령 형식의 규범 조문에 해당함. 프랑스에서 정부가 제정하는 명령은 프랑스의 행정부 소속의 국참사원(Conseil d’État)라는 기관에서 규범의 실체적 및 형식적 합법성을 심사한 후 발령함.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령한 명령을 ‘데크레’라고 지칭함.

31) 프랑스 연극 연출가 장 빌라르 관련 자료를 주로 전시하는 박물관/도서관을 말함.

32) Article L131-1 Modifié par Loi n° 2006-961 du 1 août 2006 - art. 40 JORF 3 août 2006
Le dépôt légal est organisé en vue de permettre :
a) La collecte et la conservation d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131-2 ;
b) La constitution et la diffusion de bibliographies nationales ;
c) La consultation des documents mentionnés à l’article L. 131-2, sous réserve des secrets protégés par la loi, dans les conditions conformes à la législation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t compatibles avec leur conservation.

○ 법정 납본은 책과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인쇄물, 영화, 사운드 녹음,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자료도 법적으로 기탁됨. 전자매체의 경우에도 일반대중 의사소통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도 납본의무 대상임

○ 프랑스 국립도서관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이 법적 기탁을 수령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 도서관; 국립 영화 및 애니메이션 이미지 센터(le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국립 시청각 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지역별로 법적 기탁 권한이 있는 도서관(인쇄물에 한함)에 해당됨

2. 문화유산법전의 국립도서관의 주요 내용

(1) 법적 근거

○ 프랑스 문화유산법전의 국립도서관편은 제1편에서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제2편에서 시립도서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편에서 도립도서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어지는 제4편으로 별첨과 같이 국립도서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문화유산법전 제L310-1조는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도서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도서관)은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며 재원을 조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내용은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지방자치단

Les organismes dépositaires doivent se conformer à la législation sur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prévues par le présent titre.

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다음으로 제L310-2조는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도서관은 국가에 의해 과학적 지도 및 기술적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 규정은 국참사원의 시행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국가로부터 기술적 및 과학적 지도감독을 받음

○ ‘국립도서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문화유산법전의 시행령 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음. 국립도서관에 관한 규정은 국립도서관의 조직, 국립도서관의 재정의 구조,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국립도서관의 책무로 첫째,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것이며, 둘째, 문화유산의 공공적 활용과 접근보장에 관한 것임

1)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련한 책무와 기능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모든 영역의 지식, 지식을 보존하는 국가 유산, 특히 프랑스어 유산과 프랑스 문화와 관련한 유산들을 수집, 분류, 보관하며 증진시킨다” 고 정하고 있음(제R341-2조 제1문)

○ 즉,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도서관은 물질적, 비물질적 형태의 프랑스어 및 외국어 인쇄물, 수고본, 화폐와 메달, 판화, 사진, 지도와 도면, 음악, 영상 자료, 음성 자료, 시청각 자료, 혼합 매체 자료,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소장품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함

2) 지식문화유산의 공공적 활용과 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책무와 기능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법의 보호를 받는 기밀이 지켜지는 한에서,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소장품 보존과 양립하는

조건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소장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고 정하고 있음(제R341-2조 제2문)

○ 즉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장서자료를 공유하고, 특히 “자료 전송에 관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장거리 열람을 가능하게 한다” 고 정하고 있음

3) 기타 주된 책무와 업무 수행을 위한 부수적 기능

○ 국립도서관은 지식문화유산의 수집과 활용이라는 주된 책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조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각종 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건물의 건설, 보수 설비공사 등을 수행하며 다른 공법인 또는 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도서관의 예산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 연구, 작업들을 행하는 공익 법인 혹은 사법인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장품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문화재를 취득할 수 있음

○ 국립도서관이 문화재를 취득하는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를 대리하여 국가의 재원으로, 소장품을 증진시킬 유무상의 문화재를 취득함. 이 취득은 도서관장에 의해 결정됨. 그 비용이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이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도서관장의 결정은 기관의 취득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발효됨. 취득 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 취득 의사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문화부 장관이 취득 여부에 관한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함. 취득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연차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

○ 국립도서관 소장품 취득위원회의 회의는 국립도서관 관장이 주재하

며, 취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함

4) 도서관 정책에서 국가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능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문화부 장관, 외교협력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관할 분야에 대해, 국가 규칙과 유럽공동체 규칙, 국제 협정을 구상하고 적용하는 데 참여하며, 모든 국제 결정기관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데 참여하는 임무를 수행함

<표 3-9> 프랑스 문화유산법전상 국립도서관 관련 규정 현황

프랑스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2020)
LIVRE III : BIBLIOTHÈQUES TITRE Ier : DISPOSITIONS COMMUNES (Articles L310-1 à L310-2) TITRE II : BIBLIOTHÈQUES MUNICIPALES ET INTERCOMMUNALES (Articles L320-1 à L320-2) TITRE III : BIBLIOTHÈQUES DÉPARTEMENTALES (Article L330-1)
제L310-1조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도서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도서관)은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며 재원을 조달한다.
제L310-2조 지역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도서관은 국가에 의해 과학적 지도 및 기술적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지도감독 규정은 국참사원의 시행령으로 정한다.

Titre IV : BIBLIOTHÈQUES NATIONALES
Chapitre Ier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Section 1 : Dispositions générales (Articles R341-1 à R341-6)
Section 2 : Organisation administrative (Articles R341-7 à R341-17)
Section 3 : Régime financier (Articles R341-18 à R341-21)

제R341-1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문화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적 성격을 갖는 국가 공공기관이다. 소재지는 파리로 한다.

제R341-2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든 영역의 지식, 지식을 보존하는 국가 유산, 특히 프랑스어 유산과 프랑스 문화와 관련한 유산들을 수집, 분류, 보관하며 증진시킨다.
이 항과 관련하여
a)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법률 제132-3조, 제R132-1조 ~ 제R132-23-2조에 의거하여 납본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제1권 제3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가를 대리하여 납본을 관리하고, 납본의 수취 기관이 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그에 대한 국가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보급한다.
b)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국가를 대리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물질적, 비물질적 형태의 프랑스어 및 외국어 인쇄물, 수고본, 화폐와 메달, 판화, 사진, 지도와 도면, 음악, 영상 자료, 음성 자료, 시청각 자료, 혼합 매체 자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소장품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c)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국가적, 국제적 학술 활동에 참여한다.

2. 법의 보호를 받는 기밀이 지켜지는 한에서,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소장품 보존과 양립하는 조건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소장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항과 관련하여

a)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관할하의 유산, 특히 도서관학에 의거하여 담당하는 유산과 관련하여 연구 프로그램들을 추진한다.
b)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기관 업무에 부합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프랑스 및 해외의 공공 단체, 공적, 사적 기관과 협업한다.
c)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정부 방침의 한도 내에서, 프랑스어 장서 자료들을 공유한다.
d)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자료 전송에 관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장거리 열람을 가능하게 한다.
e)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소장품을 활용하는 데, 특히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화, 상업 활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국가에 속하였거나 국가가 사용권을 가진 부동산 중에서, 도서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며, 공익 법인 재산에 관한 법률 제R2313-1조 ~ 제R2313-5조, 제R4121-2조에 따라 체결된 사용 계약에 따라서 사용권을 획득한 부동산을 관리한다. 특히 도서관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지출 경비를 부담한다.

제R341-3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필요한 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2. 조사 작업을 행하고, 필요한 건물의 건설, 보수, 설비 공사를 행하며, 다른 공법인, 사법인과 도서관에 적절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도서관의 예산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사, 연구, 작업들을 행하는 공익 법인 혹은 사법인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공동출판의 경우에 그러하다.
4. 공익 연합체나 경제적 이익 연합체, 문화 협력 공공 기관, 단체들과의 계약이나 그곳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프랑스 혹은 해외의 모든 공법인과 사법인, 특히 도서관 임무에 도움이 되거나 협력을 제공하는 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5. 공법인, 사법인에 공공물의 사용을 허가하고, 그 점유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6. 자본 출자를 받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7. 도서관의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될 사법(私法)상의 모든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다.
8. 모든 종류의 지적 재산권을 취득 혹은 활용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 외교협력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관할 분야에 대해, 국가 규칙과 유럽공동체 규칙, 국제 협정을 구상하고 적용하는 데 참여하며, 모든 국제 결정기관에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데 참여한다.

제R341-4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당 기관은 국가를 대리하여 국가의 재원으로, 소장품을 증진시킬 유무상의 문화재 취득에 착수한다. 이 취득은 도서관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 비용이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이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도서관장의 결정은 기관의 취득 위원회의 의결 이후 발효된다. 취득 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도서관장이 취득 의사를 유지할 경우, 문화부 장관이 결정한다. 취득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연간 보고 대상이 된다.

제R341-5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취득 위원회는 도서관장이 주재하며,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은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으로 정한다.

제R341-6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당 기관의 문화 정책과 방침, 활동과 투자는 정부와의 다년간 계약 대상이 된다.

이 계약은 부여된 업무와 국가가 제공한 재원과 관련하여 당 기관의 성과 목표를 규정한다. 이 목표의 진척 상황에 대해 매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절 행정 조직

제R341-7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장 이외에 다음의 19명으로 구성된다.
1. 당연직 위원 8명
a) 미디어문화산업국장 혹은 그의 대리인
b) 문화부 장관 비서실장 혹은 그의 대리인
c) 문화부 산하 기록관리국장 혹은 그의 대리인
d) 문화부 산하 도서독서국장 혹은 그의 대리인
e) 예산부 산하 예산국장 혹은 그의 대리인
f) 고등교육부 산하 과학기술정보 및 대학도서관관리국장 혹은 그의 대리인
g) 연구부 산하 연구국장 혹은 그의 대리인
h) 외교부 산하 국제문화관계국장 혹은 그의 대리인
2. 콩세이 데타 부원장의 추천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으로 임명된 콩세이 데타 위원
3.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이 규정한 방식으로 선출된 직원 대표 4명
4.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으로 임명된 문화계, 학계, 경제계 인사 4명
5. 문화부 장관의 법규명령이 규정한 방식으로 선출된 도서관 이용자 대표 2명
3항과 5항에 규정된 위원 각각에 대해 임명된 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대리인이 선출될 수 있다.
2항, 4항, 5항에 규정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3항에 규정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사유에서든 위원직에 공석이 확정될 경우, 남은 임기를 수행할 위원이 동일한 조건에서 임명된다.

제R341-8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운영위원장과 위원들은 시공, 조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도서관과 거래하는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고, 어떠한 직위도 맡을 수 없으며, 해당 기업들에 서비스 제공을 약속할 수도 없다.
도서관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반 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와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 선출된 직원 대표들은 그들의 직무 수행에 대해 매월 1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R341-9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1년에 최소 3회 개의하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문화부 장관이나 위원 3분의 1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위원장이 부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는 총감독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이때 운영위원회는 미디어문화산업국장이 주재한다.
문화부 장관이나 운영위원회 3분의 1이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을 요구한 안건은 적법하게 추가된다.
총감독, 과학 심의회 위원장, 경제 및 재정 당연직 관리 위원과 회계 사무관과 자문위원회나 위원장이 의견 수렴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투표권 없는 발언권을 가지고 심의에 참여한다.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재적 위원이나 그들의 대행인이나 대리인의 2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만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다. 만약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일주일 후에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다시 소집되어야 한다. 재소집의 경우에는 정족수와 무관하게 의결한다.
출석 또는 대리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결권을 갖는다.

제R341-7조의 2항, 4항, 5항에 규정된 위원들 각각은, 보유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당해 위원이 보유한 권한 가운데 두 개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 법 제R341-10조의 8호, 9호, 12호, 13호에서 규정한 사안들은, 내부 규칙에서 정한 양상에 따라서, 운영 위원들의 서면 협의를 거친 후에 의결할 수 있다.

제R341-10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운영위원회는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주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의 기본 방침과 활동 및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R341-6조에서 규정한 다년간의 계약 체결 안, 관련된 연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공공 기관의 전체 활동과 관련된 예산과 변경, 재정 보고서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활동에 관한 연간 보고서
5. 기관의 업무 총괄 편성, 감독과 위임에 관한 사항
6. 제R341-2조에 의거하여 체결된 부동산 사용 협의안에 관한 사항
7. 기관의 재산에 관한 매매 또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기증과 유증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소송 수행과 합의에 관한 사항
10. 기관이 체결한 계약, 협약, 매매에 관한 총괄 조건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편입 시 지분의 취득, 연장, 양도와 공익단체, 경제 단체에 가입, 문화 협력 공공기관이나 사단법인의 가입에 관한 사항
12. 기관의 요금 정책과 가입권한과 부담금의 책정에 관한 사항
13. 양도계약, 점유허가와 행정 재산 개발의 승인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내부 규칙과 공중에게 열람 개시의 조건에 관해 자문을 받는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해서 7호에서 규정하는 대상물이나 8호, 9호, 1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 기관 소유인 재산에 관해서, 운영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R341-11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뒤에 오는 항목에서 규정하는 심의와 다르게, 문화부 장관의 수령이후 2주 이내에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집행력이 있다.
전(前)조의 5호, 7호, 10호, 12호와 13호의 재정보고서와는 달리, 3호와 관련된 심의는 문화부장관 또는 재정기획부장관의 수령 후 2주 이내에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집행력을 지닌다.
같은 조의 11호와 관련된 의결이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부 장관과 재정기획부 장관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고, 권한의 범위 내라면 경제부 장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제R341-12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은 국무회의(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데크레에 의해 임명된다.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문화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3년 주기로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니므로 '국무위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무회의라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제도인 국무회의와 거의 유사한 장관급 회의이므로 국무회의(장관회의)로 번역함.**

제R341-13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통솔한다.

1.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의 소집일을 결정한다.
2. 제R341-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한 모든 관리 행위를 이행한다.
3. 직원을 관리한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직원을 제외한 기관의 정식 직원 임명에 관해 의견을 표명한다. 기관의 전체 직원을 지휘하고 다양한 업무에 배치할 권한을 갖는다.
4. 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주관한다.
5. 기관이 관여하는 계약, 협약, 매매에 서명한다.
6. 소송 행위와 민사상 모든 행위에서 기관을 대표한다.

운영위원회에서 기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한다.

기관의 총감독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서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장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일상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주관 활동과 매매를 위해 필요한 활동의 경우, 총감독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R341-14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총감독(사무처장)은 기관장의 제청에 의해 데크레에 의해 임명

된다.

국립도서관의 총감독은 직무에 있어서 기관장을 보조한다. 이러한 자격에 기초해 기관의 업무를 지휘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다.
국립도서관의 총감독은 결정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서명 권한을 업무상 관할 아래 있는 부서의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R341-15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1.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학문 위원회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2명

-문화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고등교육, 기술, 연구부서의 책임자

-고등교육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학문 및 과학기술 담당 책임자

2. 도서관 관리부 직원과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동료들이 선출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관련된 업무에 배정된 직원 2명
3.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동료들이 선출하고 학문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표하는 2명
4. 관련 자격을 갖추고 문화부장관의 부령에 의해서 임명받은 3명
5. 국내 및 국외의 기록보관소와 학문기관의 대표자로 문화부장관의 부령에 의해 임명받은 7명

도서관장, 총감독, 미디어 및 문화산업 국장 혹은 해당 대리인들, 고등교육부 장관의 지휘아래 있는 학문 및 과학기술 정보 담당 국장과 대학도서관 담당자들 혹은 해당 대리인들은 투표권 없는 발언권을 지니고 회의에 참석한다.

제R341-16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학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서 문화부 장관의 부령에 의해 임명된다.
당연직 위원들 이외의 위원들은 3년 임기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동일 조건으로 1명을 임명한다.
학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노동 시장, 급여와 비품 공급 업무를 다루는 기업과 관련해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직책도 가질 수 없다. 출판사를 제외

하고는 관련 기업들에 부담금을 요구할 수 없다.
학문위원회의 위원의 활동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비나 체재비는 정부의 민간위탁 직원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언급한 조건에 따라서 환급할 수 있다.

제R341-17조
데크레 제2020-195호, 2020.3.4., 제1조에 따라 제정
학문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서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최소 1년에 1회 개의한다. 위원회는 기관의 학문 및 문화 정책의 방향과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조언하고, 기관의 학문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제안을 한다.

(2)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조직

1) 국립도서관장

○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은 국무회의(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데크레에 의해 임명됨.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문화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3년 주기로 두 번 연임할 수 있음.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니므로 '국무위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무회의라는 표현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제도인 국무회의와 거의 유사한 장관급 회의이므로 국무회의(장관회의)로 번역함

○ 문화유산법전의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에는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 이외에 국립도서관장의 직급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통솔함. 1. 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주재하고 심의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위원회의 소집일을 결정함. 2. 제R341-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한 모든 관리 행위를 이행함. 3. 직원을 관리하고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직원을 제외한 기관의 정식 직원 임명

에 관해 의견을 표시함. 기관의 전체 직원을 지휘하고 다양한 업무에 배치할 권한을 갖음. 4. 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주관함. 5. 기관이 관여하는 계약, 협약, 매매에 서명함. 6. 소송 행위와 민사상 모든 행위에서 기관을 대표함.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기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함. 기관의 총감독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서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장의 공석이 발생한 경우, 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일상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주관 활동과 매매를 위해 필요한 활동의 경우, 총감독(사무처장)이 직무를 대리함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당연직 위원은 2인이며, 문화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고등교육, 기술, 연구부서의 책임자 -고등교육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학문 및 과학기술 담당 책임자가 이에 해당함.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서관 직원이 선출한 2명, 문화부장관이 지명한 3명, 도서관학계 7명 등으로 구성함. 당연직 위원들 이외의 위원들은 3년 임기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음.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동일 조건으로 1명을 임명함. 위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보수이나 경비를 지급함

3) 본관과 5개의 분관

○ 프랑스의 국가도서관(BnF)은 5개관, 즉 The François Mitterrand Library(Site François-Mitterrand), The Richelieu Library(Site Richelieu-Louvois), The Arsenal Library(Bibliothèque de l’ Arsenal), The Opera Library(Bibliothèque-Musée de l’Opéra), Maison Jean Vilar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하부조직은 5개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 수는 <그림 3-4>와 같이 4부(Collections, Services et des réseaux, Administration et du personnel, Ressources humaines) 24개 과임. 그 가운데 납본 수집을 담당하는 부서는 '서비스·네트워크부' 아래의 '법정납본과'임

❍ 따라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분산형 국가도서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납본업무는 집중형을 채택하고 있음

<그림 3-4> 프랑스 국가도서관(BnF)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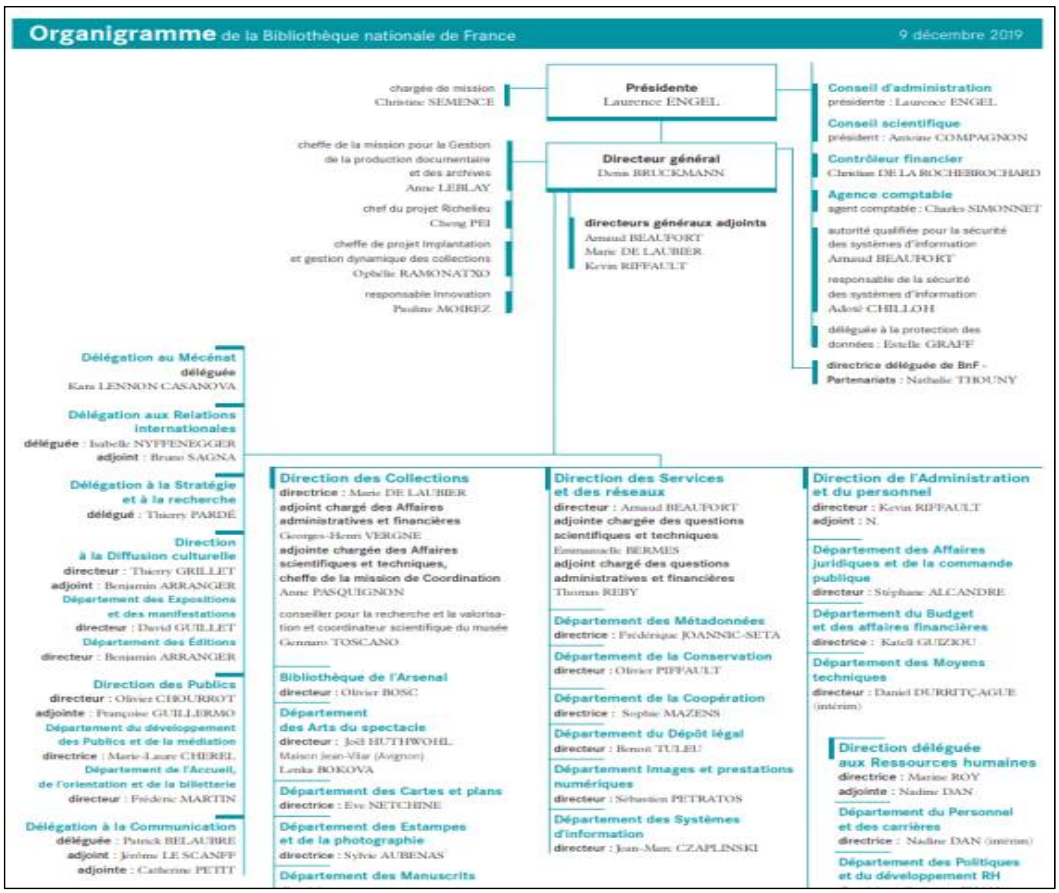

3. 문화유산법전상 납본제도

(1) 법정납본의 목적

○ 납본은 1차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법정납본 안내서는 법률에 근거하는 '문화유산 보존' 이라는 납본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음[33)]

○ 문화 유산 보존 목적 이외에 다른 자료 또는 제목, 내용의 고유한 권리 보호에 관한 목적을 가지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권리관계의 증명이 될 수 없음. 예외적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선행자료로 제출되었다는 증명자료로써만 제출될 수 있음

○ 즉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납본하는 목적은 정기간행물의 납본이 갖는 행정적인 목적, 청소년대상 출판물의 납본의 목적과 구별됨

○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전은 제L131-1조에서 "법정납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a) 제L131-2조에 명시된 문헌의 수집과 보존, b) 국가서지의 작성과 배포, c) 법률이 정하는 조건 하에서의 자료의 소통(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임

(2) 납본의 역사적 유래

○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법정 납본제도를 도입한 국가임. 1537년에 프랑스와 1세(François I)가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책을 판매하기 전에 자신의 블루아성(Blois Castle) 내 왕실도서관에 1부씩 납본하도록 규정한 법령, 즉 국왕칙령(Ordonnance de Montpellier)이 그 효시임

33) https://www.bnf.fr/sites/default/files/2019-10/guide_dli_sept2019.pdf

○ 이어 1648년에 지도자료를 포함한 조각물, 1793년에 악보, 1925년에 사진, 1938년에 음반, 1941년에 포스터, 1975년에 비디오 레코딩과 멀티미디어 자료, 1977년에 필름, 1992년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자료와 다양한 전자출판물, 그리고 2006년에 인터넷 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시켰음

(3) 납본의 법제화 및 현행법령의 근거

○ 이처럼 프랑스는 법령개정을 통하여 납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특히 1979년의「기록에 관한 법률」(Loi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1992년의「법정납본에 관한 법률」(Loi du 20 juin 1992 relative au Dépôt Légal)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였음

○ 이후 프랑스 정부는 2004년 2월 20일자로 법제화 정책에 따라 현존 문화재 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을 총 7권으로 집대성한 「문화유산법전」(Code du partimoine)을 제정하였음

○ 제1권은 문화재 전반에 관한 일반규정(유통체계, 선매권, 합법적 등록, 문화재 담당기관), 제2권은 문서관, 제3권은 도서관, 제4권은 박물관, 제5권은 고고학, 제6권은 역사적 문화재, 보호지역 및 공간, 제7권은 해외 영토에 관한 규정임. 그 가운데 납본제도는 제1권(일반규정) 제3편(법정납본) 아래에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4) 납본의 대상

○ 인쇄형, 그래픽, 사진, 음반, 시청각, 멀디미디어 자료는 그들의 기술적

제작과정, 출판 전파방법을 불문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법정 납본의 대상이 됨. 영상자료의 경우에는 영상상영관에서 최초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제작물은 영화법 제L211-1조에 따라 영상제작물(영화)을 상영할 수 있는 비자(승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상영하는 때에 법적 기탁 의무가 적용됨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배포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때에 법적 기탁의 의무가 적용됨

○ 그 밖에 매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일반대중에게 전자적으로 소통되는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도 의무납본(법정납본)의 대상이 됨

(5) 납본의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 내용

○ 법정납본이란 자료를 납본기관에 제출하거나 제한된 수의 사본을 우송료 없이 송부하는 것을 말함. 법정납본과 관련하여 국사원의 명령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함. 첫째,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녹음을 포함하여 다른 수단에 의해 법정납본의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 둘째, 제L132-2조에 규정된 범주의 납본 의무자에 대한 이행규정과 법정납본의 면제자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셋째, 제L131-1조에 정의된 법정납본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집 및 보존할 자료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의 범위, 넷째, 제L131-1조에 정의된 법정납본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정납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전체를 납본하지 않더라도 납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함

<표 3-10> 프랑스 법정납본 관련 규정(2004. 2. 20.)

제1장 납본의 목적과 범위

제L131-1조

법정납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제L131-2조에 명시된 문헌의 수집과 보존

b) 국가서지의 작성과 배포

c) 제L131-2조에 명시된 문헌의 점검. 다만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밀문헌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 경우 보존기관은 법정납본의 특별규정을 전제로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L131-2조

- **인쇄형, 그래픽, 사진, 음반, 시청각, 멀디미디어 자료는 그들의 기술적 제작과정, 출판 전파방법을 불문하고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법정 납본의 대상이 된다. 다만 영상상영관에서 최초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제작물은 영화법 제L211-1조에 따라 영상제작물(영화)을 상영할 수 있는 비자(승인)을 받은 이후 최초로 상영하는 때에 법적 기탁 의무가 적용된다.**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배포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때에 법적 기탁의 의무가 적용된다.**
- **또한 매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일반대중에게 전자적으로 소통되는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도 의무납본(법정납본)의 대상이다**

제2장 납본의 방법과 조직

제L132-1조

법정납본이란 자료를 납본기관에 제출하거나 제한된 수의 사본을 우송료없이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사원의 명령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a)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의 녹음을 포함하여 다른 수단에 의해 법정납본의 의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

b) 제L132-2조에 규정된 범주의 납본 의무자에 대한 이행규정과 법정납본의 면제자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c) 제L131-1조에 정의된 법정납본의 목적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수집 및 보존할 자료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의 범위
d) 제L131-1조에 정의된 법정납본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정납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전체를 납본하지 않더라도 납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제L132-2조

납본 책임자 :

a) 인쇄물, 그림자료, 사진을 출판하거나 수입한 자
b) 위 항에서 언급된 문헌을 인쇄한 자
c) 소프트웨어나 DB를 편집, 제작, 수입한 자
d) 출판자, 또는 출판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작하거나 감독하는 자. 또는 포노그램(phonograms)을 수입하는 자
e) 영상자료를 생산하는 자 및 영상자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를 배표하는 자, 이 경우 영상자료를 고정시키는 매체의 특성을 불문한다. 비디오자료의 경우에는 일반공중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편집하고 수입하는 자.
f)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aw No. 86-1067)의 범주 내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서비스하는 자
g) 출판자, 또는 출판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자료 외의 비디오그램(videograms)을 생산하거나 수입한자
h) 출판자, 또는 출판자가 없는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i) 위의 사인, 신호, 문서, 이미지, 소리, 메시지와 관련된 법률(No. 86-1067) 제2조의 둘째 문단의 의미 내에서 전자적 수단으로 출판하거나 제작하는 자

제L132-3조

국사원은 법령에서 결정된 조건 하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법정납본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도서관(BnF), 국립시청각연구소(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이다.

- 이 법령은 제L131-1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다른 기관에게 법정납본에 관한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법적인 지위와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L132-4조

저자는 법정납본을 이유로 납본기관에 다음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1. 소장기관에 적절한 승인절차를 거친 연구자를 위한 관내에서의 자료제공
2. 수집, 축적, 사이트상의 자문을 위하여 매체나 수단을 불문한 자료의 복제

제L132-5조

연기자, 프로그램 제작자, 비디오 레코딩 또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제L132-4조에 따른 제L131-2조 자료의 복제 및 공중전송을 금지할 수 없다.

제L132-6조

DB 제작자는 제L132-4조 규정을 근거로 한 DB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췌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제3장 벌칙규정

제L133-1조

제L132-2조에 규정된 납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법정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75,000 유로의 벌금(amende)[34]이 부과된다. (선행 연구보고서에는 '과태료'라고 번역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번역은 오류이며, 형사법원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을 말한다.) 형사법원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정한 이후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때 이행기간을 특정하고 이행강제금을 정하여 명한다. 또한 가집행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한편 프랑스 국가도서관을 위한 납본제도는 「문화유산법전」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법령, 즉 1993년 12월 31일자 시행령(Decree No.93-1429)을 2006년 7월 13일자로 개정한 법정납본 시행령(Decree No.2006-696)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1> 프랑스 법정납본 시행령 규정(2006. 7. 13.)

① 자료를 출판·인쇄 또는 제작·유통시키거나 수입하는 모든 출판자, 인쇄자, 제작자, 유통자,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BnF에 납본해야 한다.
② 인쇄자료(도서, 소책자, 정기간행물, 문서 등)의 경우, 출판자는 2부(300부 미만일 때는 1부)를, 인쇄자 및 수입자는 각각 1부를 납본해야 한다. 여기에는 광고자료(상업목록, 단매물), 행정자료(보고서 및 기업정관, 내부 규정), 정치적·종교적 자료(전단지, 포스터) 등도 포함되며 묶음형태로 처리·보관한다. **BnF는 출판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인쇄자료 대신 디지털 파일의 납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쇄자와 수입자는 각각 1부를 BnF 외에 프랑스 본토의 각 행정구역과 해외의 행정구역 및 영토에서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된 24개 기관 가운데 한 곳에 납본해야 한다.
④ 시청각자료 및 녹음자료, 기타 특수자료도 납본대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사진, 포스터, 메달, 악보, 지도 및 도면, 음반, 시청각물, 멀티미디어 자료, 프로그램, DB, 컴퓨터 기록물 등이 포함된다.

34) 프랑스법상 범죄는 위경죄, 경범죄(le délit), 중범죄(le crime)로 구분됨.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상한은 법률로 정함. 위경죄는 행정명령으로 정할 수 있음. 프랑스 형법상 위경죄(Contravention)는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Décret)의 형식으로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을 정함.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3,000유로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죄는 위경죄에 해당함. 위경죄에 대해서는 제1급부터 제5급까지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제1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38유로 이하의 벌금, 제2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150유로 이하의 벌금, 제3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750유로 이하의 벌금, 제5급 위경죄에 대해서는 150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제5급 위경죄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경죄 누범은 경범죄(le délit)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및 기타 행정명령에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3,000유로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경범죄는 위경죄보다 중한 범죄로서 그 구성요건은 법률에서 정함. 프랑스 형법전 제131-13조 참조.

⑤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은 1993년부터 납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인터넷 자료는 2006년부터 납본수집·보존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⑥ 고의로 법정납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75,000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⑦ 그러나 필름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은 각각 국립영화센터(National Center for Cinematography)와 국립시청각연구소에서 수집한다.

○ 한편,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공포된 신저작권법인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통칭 DADVSI 법)에 따라 BnF와 국립시청각연구소가 인터넷 정보자원에 대한 법정 납본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제39조는 인터넷 정보자원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전자적 통신수단으로 공중에게 전송되는 모든 종류의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메시지도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1조 제2항은 인터넷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수단, 즉 로봇에 의한 자동수집을 규정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출판자나 저작자가 BnF 및 INA와 합의하여 복제 및 송신하는 방법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2조는 데이터의 복제·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납본기관이 데이터를 수집·열람·보존할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이용은 관내로 한정하고 있음

○ 제50조는 납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4.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1) 개관

○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제122조의3에서 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제122조의4에서 저작자나 권리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영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122조의5에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 9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금지할 수 없고 복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즉, 저작권법 제122조의10에서 저작물의 공표로 복사기에 의한 복제권은 문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에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고, 집중관리단체는 신탁받은 권리의 관리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이용자들과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판매, 대여, 광고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권 이용계약에 관하여는 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2) 도서관 복제에 관한 규정

○ 프랑스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권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의 제2편(Titre II : Droits des auteurs (Articles L121-1 à L123-12)에 편제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에 관한 규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복제'와 유사한 규정은 Chapitre IV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relativ

es à l'exploitation numérique des livres indisponibles (Articles L134-1 à L134-9)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내용은 2012년 법률 제2012-287호에 의해 입법이 되었으며 프랑스 저작권법 제L134-1조에서 제L134-9조에 편제되어 있음

❍ 2001년 1월 1일 이전에 프랑스에서 출판된 책으로서 더 이상 출판사에 의해 상업적인 배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현재 더 이상 인쇄 또는 디지털인쇄의 방식으로 출판되지 않는 책은 이 장에서 규정하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함. 이와 같은 자료는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든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 국립도서관(La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은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함. 누구든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신청할 수 있음(제L134-2조제2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제L132-12조부터 제L132-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

❍ 제L134-3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동 법전의 제2장에 규정된 단체에서 관리하며, 이 단체는 문화부장관이 승인함

(3)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

❍ '고아저작물'에 관한 프랑스법은 2012년 법률 제2012-287호에 의해 입법이 되었으며, 해당 법률(LOI n° 2012-287 du 1er mars 2012)은 프랑스의 지식재산권법전의 제2편에 편제되었음. 프랑스 저작권법 제

L113-10조(지식재산권법전 제2편 저작권법 제L113-10조를 말함)는 ‘고아저작물(L’œuvre orpheline)’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르면 ‘고아저작물’이란 “부단하고 진지하게 공표된 방법으로 저작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식별하거나 찾을 수 없는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공개된 저작물«une œuvre protégée et divulguée, dont le titulaire des droits ne peut pas être identifié ou retrouvé, malgré des recherches diligentes, avérées et sérieuses»”을 말함

○ 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12/28/EU 제2조제1호에서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을 “A work or a phonogram shall be considered an orphan work if none of the rightholders in that work or phonogram is identified or, even if one or more of them is identified, none is located despite a diligent search for the rightholders having been carried out and recor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라고 정의하고 있는 문언을 고려할 때, 프랑스에서의 고아저작물의 정의 규정은 고아저작물의 일반적인 개념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프랑스 저작권법에 따른 고아저작물이란 저작권자를 식별하기 위한 ‘recherches diligentes; Diligent search’ 성실한(상당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특정 저작권 보유자를 식별할 수 없거나 또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저작물을 말함. 동조 제2항은 저작권자가 식별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은 더 이상 고아저작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함(Lorsqu’une œuvre a plus d’un titulaire de droits et que l’un de ces titulaires a été identifié et retrouvé, elle n’est pas considérée comme orpheline)[35]

35)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Livre Ier : Le droit d’auteur..

❍ 고아저작물의 이용, 디지털화, 저작자식별 등에 관한 내용은 2015년 법률에 의해 이법이 되었으며, 이 법률(LOI n° 2015-195 du 20 février 2015)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 저작권법편의 제5장 제L135-1조부터 제L135-7조까지에서 편제되어 있음(Chapitre V : Dispositions particulières relatives à certaines utilisations d'œuvres orphelines)

❍ 제L135-1조는 고아저작물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제1호에 따라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처음 출판되거나 방송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제L113-10조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고아저작물에 해당함. 제1호는 "일반인이 접근 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 보관소, 영화 또는 음원의 문화유산을 기탁하는 기관 또는 교육시설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서, 저널,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저작의 형태로 출판된 저작물과 독립적인 작품으로 존재하는 사진과 정지 영상을 포함함. 제2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전에 공익 방송 기관에서 제작되었거나 또는 그 아카이브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청각 또는 음향 작품을 포함함. 제2호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 상호 간의 상호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제L135-2조는 고아저작물의 이용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목적, 교육적인 목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비영리적인 조건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함. 다만 7년의 기간을 상회하지 않는 동안에 전자적인 출판형태로 변환하여 일반공중에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고아저작물은 일반공중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아저작물은 제공, 색인,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화의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Articles L111-1 à L136-4)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article_lc/LEGIARTI000025433168

○ 제L135-3조는 고아저작물의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성실한(상당한) 절차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 제L135-5조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중 일부가 식별된 경우에는 식별된 저작자의 허락에 따른다고 규정함. 제L135-6조에 따라 고아저작물의 저작자가 식별되거나 발견된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을 정하며 업계의 관행을 고려함

<표 3-12> 프랑스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2015)

제112조의 1 이 법전상의 규정은 그의 장르, 표현형식, 가치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112조의 2 ① 이 법전에서 말하는 정신적 창작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1. 도서, 소책자 및 그밖의 문학·예술·학술저작물
2. 강연, 연설, 설교, 변론 및 기타 그와 같은 성질의 저작물
3. 연극저작물 또는 뮤직드라마
4. 저작물로서 문서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고정된 무용저작물, 곡예, 팬터마임
5. 가사있는 음악작곡 또는 가사가 없는 음악작곡
6. 영상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에 속하는 음이 있거나 없는 일련의 영상으로 구성된 그밖의 저작물
7. 소묘, 회화, 건축, 조각, 판화, 석판화
8. 그래픽 및 활판 저작물
9. 사진저작물 및 사진기법과 유사한 기술에 의하여 제작된 것
10. 응용미술저작물
11. 삽화, 지도
12. 지리학, 지형학, 건축학 및 학술과 관련된 도면, 약도 및 입체저작물
13. 소프트웨어와 그 안에 포함된 컨텐츠
14. 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 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이라 함은 특히 의복, 모피, 내의, 자수, 모자, 구두, 장갑, 가죽제품의 제조형태, 첨단 유행하는 여성의류 제조에 있어서 신종직물 또는 특수이용을 위한 직물 제조형태,

유행물품 및 구두제조업자의 제조물형태 그리고 실내장식품을 위한 직물제조형태를 자주 변경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22조의3 ① 복제란 간접적 방법으로 공중에 대하여 송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복제는 특히, 인쇄, 소묘, 판화, 사진, 주주 및 모든 종류의 그래픽이나 조형미술, 기계적, 영상적 또는 자기적 녹음, 녹화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 있다.
③ 건축저작물에 대한 복제는 설계도면이나 계획도면에 따라 건축을 거듭 실향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제122조의4 저작자나 권리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 또는 복제는 불법이다. 번역, 개작이나 변형, 편곡 또는 그 어떤 기술이나 방법에 의한 복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2조의5 ① 저작물이 공표된 때에는,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1. 가족의 범위에서만 행하여진 사적 무료공연
2. 복제자의 사적목적 사용에 엄중히 한정되고, 단체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 복제, 다만, 원저작물이 창작된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복제, 제122조의61의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른 보존용 파일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복사는 제외된다.
3.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
   a) 비평, 논쟁, 교육, 학술 또는 저작물에 의하여 구체화된 정보적 성질을 가지는 저작물의 해석 및 짧은 인용
   b) 언론논평
   c)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학술적 집회, 정치성을 띤 공중의 집회 및 공적 행사에서 공중을 위하여 행한 연술을 시사보도의 목적으로 신문, 잡지나 방송을 통한 사실을 그대로의 전달
   d) (생략)
   e)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공연 또는 그 저작물의 특정부분을 발췌하여 행한 복제, 교육목적으로 제작된 악보의 공연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

작하면서 행하여지는 복제, 다만 이 공연 복제는 교육이나 연구의 범위내에서 오로지 예증을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그 어떤 유희나 오락을 목적으로도 행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그 공연 또는 복제물을 배포하는 대상자는 주로 교사나 교수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학생, 대학생들이어야 하며, 또한 그 공연 또는 복제물의 이용은 그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 이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목적 공연과 복제에 대하여는 제122조의10에 명시된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복제권 위탁과 관계없이 정액제를 기초로 약정한 보상금으로 보상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4.-6. (생략)

7. 장애의 등급이 "콩세이 데타" 에서 법령으로 정한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특수교육 분과위원회, 오락 레크리에이션 전문기술위원회 또는 사회적 가족적 활동에 대한 법률 제146조의9에서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 및 자활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는 교정을 해도 시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서에 의하여 증명된 자로서, 신체적, 지각적, 정신적, 인지적, 심리적 기능에 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만 저작물을 읽거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서관, 기록보존소, 참고문헌 센터, 문화적 멀티미디어 공간 등 법인 및 공공기관에 의한 공연 복제.

제1문의 법인 및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인쇄된 저작물과 그 저작물의 디지털파일은 법정기탁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신용을 위하여 제정된 법 제4조의 개방된 기준에 따라 처분권을 가진 법령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국립도서관에 기탁한다.

국립도서관 또는 법령으로 지정된 기관은 그 디지털파일에 대한 기밀유지와 그에 대한 접근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8. 그 어떤 경제적 상업적 이익도 추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의하여 보존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기관에서 열람을 조건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

9. (생략)

② 특히 분량이나 방식이 오로지 정보적 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엄격한 분량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정보적 사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복제 및 공연의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계산기초에 따라 관련업계에서 유효한 사용료를 저작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열거된 예외는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저작자의 적

법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22조의 7의 1 저작자는 임의로 자기의 저작물을 공중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의 권리 및 그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제122조의10 ① 저작물의 공표로 복사기에 의한 복제권은 제3편 제2장(집중관리)에 따라 규정한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에게 양도된다. 인가를 받은 집중관리단체는 신탁받은 권리의 관리를 목적으로 단독으로 이용자들과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판매, 대여, 광고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권 이용계약에 관하여는 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물을 공표한 날 저작자나 승계인에 의하여 양수인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집중관리단체를 이 복제권의 양수인으로 본다.

②여기서 복제란 사진기술에 의하여 종이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에 의한 방식의 복제 또는 낭독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모든 방식의 복제를 말한다.

③제1항은 판매, 대여, 광고 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작하는 저작자 및 승계인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이규정은 공표한 일이 언제이든 보호받는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제132조의 6 ① 다음의 경우에, 도서출판에 관한 계약은 저작자로부터 명확한 명시적 동의를 얻어서, 초판에 한해서 저작자의 사용료에 대하여 정액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학술적 기술적 저작물
2. 명작선집 및 백과사전
3. 서문, 주석, 서론, 권두언
4. 저작물에 사용된 삽화
5. 제한된 부수의 호화장정판
6. 기도서
7. 번역물에 대하여 번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값이 싼 대중판
9. 값이 싼 어린이용 그림책

②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인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들에게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료를 정액제로 약정할 수 있다.
③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정신적 저작물과 언론사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관해서, 도급계약이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저작자에 대한 보상금은 정액제로 약정할 수 있다.

5.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최근 동향

○ 2002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의 공동프로젝트[36]가 운영 중임

<그림 3-5>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미국의회도서관의 공동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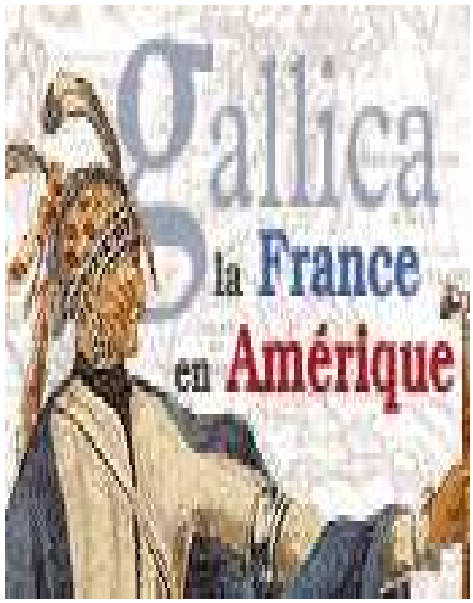

- 2002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장과 미국 의회도서관장의 협의가 시작되어 2004년 협정서(agreement)가 체결되었음
- 이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고문헌들을 직접 디지털 기반시설과 디지털화된 자료를 통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루이지애나주에 일부가 기증되어 공공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음

36) https://gallica.bnf.fr/dossiers/html/dossiers/FranceAmerique/en/D1/T1-1-Intro.htm

Ⅴ. 호주

1. 개관

○ 1960년에 제정된 국립도서관법(National Library Act 1960)은 모두 5개부 28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부는 법령의 제목과 용어의 정의 등이 제시되고, 제2부는 국립도서관의 설립과 기능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음. 국립도서관은 법인으로 설립되어 자체의 고유인장을 가지며 법률적 행위의 권한을 부여받음[37]

2. 국립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 국립도서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호주 내 출판물의 수집과 이용서비스의 임무가 부여되며, 특별히 의회와 연방정부, 영토 내 국민, 정부공공기관 등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명시하고 있음

○ 물론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호주 내 도서관 문제와 관련한 협력활동을 주도하는 것도 국립도서관의 임무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국립도서관의 권한으로는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구입과 임대 혹은 대여의 권한과, 자산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음

○ 제3부에서는 국립도서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국립도서관위원회와 도서

37)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National Library Act 1960,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1C00245

관장의 보수와 수당, 대행, 사직, 퇴직 등이 규정되어 있음. 국립도서관의 실질적 책임경영기구인 위원회는 의회에서 선출한 2명의 위원과 관장, 연방총독이 지명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 3년의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함. 또한 국립도서관장은 임기가 7년으로 연방총독에 의해 임명되며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업무를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여받고 있음

❍ 제4부는 재정에 관한 부분으로서, 도서관 재정으로 승인된 예산의 집행은 재정장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잉여자금에 대한 투자의 허용과 도서관 재정에 대한 세금 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마지막 제5부 기타사항에서는 도서관 구내에서의 주류의 판매와 처분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 건물 및 부지 내에서 이용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음

<표 3-13> 호주 국립도서관법

제1부 서론	제1조 간단한 제목	이 법은 '국립도서관법 1960' 이라 한다.
	제2조 시행	이 법은 공표에서 정해진 날에 시행될 것이다.
	제4조 해석	이 법에서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도서관 자료는 기록물 혹은 기타 형태의 자료로서, 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필사본, 필름, 녹음자료, 악보, 지도, 설계도, 그림, 사진, 인쇄 및 기타 기록 자료 등을 포함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국립도서관위원회(the Council of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를 의미한다.

		도서관장은 국립도서관의 관장(the Director General)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국립도서관을 의미한다.
제2부 호주국립도서관의 설립	**제5조 국립도서관의 설립**	(1) 법인이 이법에 따라 호주국립도서관의 이름으로 설립된다. (2) 도서관은 (a) 인장을 가진다. (b)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 소유, 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c) 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3) 모든 법정, 재판관, 법률관계인들은 문서에 봉인된 국립도서관의 인장에 법률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당하게 봉인되었다고 추정해야 한다.
	제6조 도서관의 기능	호주연방을 위하여 국립도서관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a) 호주와 호주인과 관련된 도서관자료의 포괄적 수집을 포함하여 도서관자료의 국가적 수집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것 (b)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해당 장서에 대해 가장 유리한 이용을 기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조건과 방식에 따라, 국가적으로 수집된 도서관 자료를 개인 및 기관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c) 위원회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서지서비스를 포함하여 도서관문제 및 도서관자료와 관련한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i) 의회 도서관 (ii) 호주연방 당국; 그리고 (iii) 영토; 그리고 (iv) 정부기관('1999 공공서비스법' 의 의미 내에서); 그리고

		(d) 호주 내에 소재하든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든 도서관문제와 관련하는 당국 혹은 개인과 (도서관학의 발전을 포함한) 도서관문제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
	제7조 국립도서관의 권한	(1) 국립도서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혹은 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요한 모든 일을 실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2) 전(1)항의 일반성의 제한 없이, 해당 항에서 언급된 국립도서관의 권한은 다음의 권한을 포함한다. (a) 국립도서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비품, 장비, 물자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혹은 예금이나 대출을 처리하는 권한 (b) 도서관 자료나 기타 물품을 임대하거나 대여하는 권한 또는 도서관 자산을 처분하는 권한 (c) 국립도서관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권한, 또는 건물을 건립하는 권한 (d) 국립도서관에 부여된 토지나 건물의 처분 혹은 그 임대를 승인하는 권한 (e) 호주연방에 의해 임차중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점유, 사용, 관리하고, 도서관의 사업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권한 (f) 도서관을 위한 신탁이든 다른 방식이든 국립도서관에 기증, 유증, 유산, 할당 등을 수락하는 권한; 그리고 (g) 돈, 도서관 자료 또는 신탁으로 도서관에 소유권이 귀속된 기타 재산의 피수탁인으로 활동하기 또는 도서관 자료와 도서관 문제와 관련하여 신탁의 관리로 호주연방이나 호주연방의 당국을 위하여 행동하기 (3) 이 법령에 포함된 어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으로 도서관에 의해 보유된 모든 금전이나 재산은 피신탁인으로서 국립도서관의 권한과 의무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제7조A 자산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권한	(1) 국립도서관은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a) 총액이나 가치가 25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을 초과하는 조건에 대한 모든 자산, 권리, 혹은 면책권을 취득하는 것 (b) 처분을 고려 중인 자산, 권리, 면책권 등 가치나 총액이 25만 달러를 넘거나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산, 권리, 면책권 등을 처분하는 것 (c) 도서관 건물 건축계약에서, 2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d) 10년 이상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8조 국립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자료 등의 이전	장관은 자문회의의 요청에 따라 호주 연방에 속하는 모든 도서관자료나 장비 혹은 물품 등의 소유, 이용 또는 보관을 국립도서관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토지 및 빌딩	연방총독은 국립도서관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호주연방에 의해 임대차 중이거나 소유 중인 모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3부 도서관의 경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1) 국립도서관의 업무는 호주국립도서관위원회로 알려진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aa) 관장; (a) 상원에서 선출된 상원의원 한명; (b) 하원에서 선출된 하원의원 한명; (c) 그들의 지식 및 경험이 국립도서관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연방총독이 지명한 9명의 위원;

		(3) 상, 하 양원에서 선출된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선출 시기에 의회에 의해 정해진 바와 같이 이 법령에 따라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한다. (4) 연방총독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임용 시기에 연방총독에 의해 정해진 바와 같이 이 법령에 따라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재직한다. (5) 의회에 의해 선출되거나 연방총독에 의해 임용된 위원회 위원은 재선출 혹은 재임용의 자격을 갖는다. (6) 위원회의 권한이나 기능의 행사 또는 실행은 위원회 위원의 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1조 대행 위원	(1) 장관은 연방총독에 의해 임용되는 위원으로 대행할 개인을 임명할 수 있다. (a) 위원의 직무가 공석인 경우 ; 또는 (b) 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호주에 없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기간 동안; 그러나 공석인 동안 대행을 임명받은 개인은 12개월 이상을 지속할 수 없다. (2) 이 조항에서의 임용은, 임용의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듯이 해당 상황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표현될 수 있다. (3) 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이 조항에 따라 임용된 개인의 보수 및 수당을 포함한 임용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 그리고 (b) 언제든 해당 임용을 종료하는 것 (4) 한 개인이 전항 (1)(b)에 따라 연방총독에 의해 임용된 위원으로서 대행하고, 해당 위원의 직무가 공석이 되어 당해 개인이 전(2)항에 따라 대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장관이 별도의 지시를 내리거나, 공석이 채워지거나, 공석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종료하는 등 그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할 때까지 대행을 지속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 따라 대행자로 임용된 개인은 자신이 서명하고 장관에게 전달된 문서로서 자신의 지위를 사직할 수 있다. (6) 개인이 연방총독에 의해 대행 위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개인은 해당 위원의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위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7) 전(1)항에 따라 대행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된 모든 일들의 유효성은, 그들의 임용의 근거가 발생하지 않은 것, 임용 또는 임용과 관련하여 결함이나 불법이 있는 것, 해당 임용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대행의 근거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실한 이유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없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연방총독은 자신에 의해 임용된 위원 중 한 명을 기꺼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 **(2)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때때로 위원들에 의해 선출된 한 위원이 맡아야 한다.**
	제13조 보수 및 수당	**(1) 위원회 위원은 보수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을 것이다.** **(2) 위원회 위원은 규정된 대로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다.** **(3) 이 조항은 '1973 보수심사위원회법(the Remuneration Tribunal Act 1973)' 에 따라 효력을 갖는다.**
	제14조 직무의 종료	**(1) 연방총독은 자신에 의해 임용된 위원이 무능력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임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2) 의회에 의해 선출된 위원은 해당 의회에 의해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제15조 직무의 퇴임	(1) 만일 도서관장이 아닌 위원이: (a) 파산하거나, 파산 혹은 지급불능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법의 혜택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채권자와 화해하고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c) 의회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d) 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휴가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모임에 3회 연속 불참하는 경우; 또는; (e) 합당한 사유 없이 '1997 호주연방 기관 및 단체법(the 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1997)'의 27F조 또는 27J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때; 연방총독은 위원의 지위를 해고해야 한다. (2) 전항 (1)(c)의 목적을 위해 의회의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신들에게 지불되는 의회 수당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의회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5조A 사직	도서관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출되는 기명 통지에 의해 자신의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a) 연방총독에 의해 임용된 위원의 경우에는 연방총독에게 ; 또는 (b) 상원 및 하원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상원의장 혹은 하원의장에게
	제16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 또는 만일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이 활동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은: (a) 위원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그리고 (b) 4명 이상의 위원이 기명한 서면요청을 수용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장관은 어느 때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자신이 참석하는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4)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이 부재 시는 부위원장이 당해 모임을 주재해야 한다. (5)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 출석 위원들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6) 위원회 회의는 5명의 위원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7) 세부 (8)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되는 모든 현안은 출석 위원들의 과반수와 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임을 주재하는 위원은 신중한 투표권을 갖는다. (8)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의안에 대해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해당 의안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동일한 의안이 다음 날짜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제안되고 다시 가부동수가 되면, 당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은 제안의제에 대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제17조 도서관장	**(1) 이 법의 목적을 위해, 국립도서관의 관장을 두어야 한다.** **(2) 도서관장은 연방총독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3) 도서관장은 위원회의 임원이며 위원회의 지휘아래 도서관 업무를 집행한다.** **(4) '1999 공공서비스법'의 목적을 위해** **(a) 도서관장과 도서관장을 보좌하는 APS 직원들은 함께 법정기구를 구성한다.; 그리고** **(b) 도서관장은 그 법정기구의 수장이다.** **(5) 도서관장은 서면의 방식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든 또는 문서에 의해 제공되는 범위까지이든, '1999 공공서비스법'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이 법령(위임의 이러한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에 의한 도서관장으로서 자신의 권한 및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6) 자신의 권한 및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임하는 도서관장의 권한은 위원회의 모든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7) 이 조항에 의해 위임된 권한 및 기능은 도서관장에 의해서처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대리인에 의해 행사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8) 이 조항에 의한 위임은 임의로 취소될 수 없다. 그리고**

		도서관장에 의한 권한의 행사 혹은 기능의 수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17조A 임용 기간 및 조건	**(1) 도서관장은 7년 이내 기간에 자신의 임용계약서에 구체화 되어 있는 해당 직무를 유지하며, 재임용의 자격을 가진다.**
	제17조B 부재의 허용	(1) 상근 위원은 보수심사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안식 휴가가 주어진다. (2) 장관 혹은 장관의 권위를 대신하는 위원회는, 장관이나 장관의 권위를 대리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보수 또는 기타사항에 대한 기간과 조건에 의하여, 상근위원에게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C 해고	**연방총독은 잘못된 행동이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을 이유로 도서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D 사직	**도서관장은 연방총독에게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사임할 수 있다.**
	제17조E 직무의 퇴임	**(1) 만일 도서관장이:** **(a) 장관의 승인 없이 자신의 직무 이외 보수를 받는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aa) 합당한 이유 없이, 이 조의 (3)항이나 '1997 호주연방 기관 및 단체법' 의 제27조F 또는 제27조J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파산하거나, 파산 혹은 지급불능 채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법의 혜택을 받는다거나, 자신의 채권자와 화해하고 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2) 장관은 만일 관장이 직무 이외에 보수를 받는 고용에 종사할 경우 그 고용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이 법에 따른 관장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1)항 (a)의 목적을 위해 해당 고용을**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3) 도서관장은 모든 사업에서 혹은 사업수행 법인체에서 취득하는 직간접적인 금전상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이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H 퇴직연금법의 적용	'1922 퇴직연금법' 제4조 (3A)항과 (4)항의 목적을 위해, 도서관장은 자신의 임용 조건에 의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7조J 도서관장 대행	(1) 장관은 다음의 경우 개인을 도서관장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 (a) 직무 공백기 (b) 도서관장이 직무에 공석이거나 국내에 부재할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도서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일부 기간 동안 혹은 모든 기간 동안 ; 그러나 공석기간 동안 대행에 임명된 개인은 12개월 이상 대행을 지속할 수 없다. (2) 이 조항에서의 임용은, 임용의 수단으로 구체화되었듯이 해당 상황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표현될 수 있다. (3) 장관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a) 이 조항에 따라 임용된 개인의 보수 및 수당을 포함한 임용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 ; 그리고 (b) 언제든 해당 임용을 종료하는 것 (4) 한 개인이 전(1)항(b)에 따라 관장으로 대행하고, 당해 개인이 대행하는 동안 관장의 직무가 공석이 되는 경우, 전(2)항에 따라 해당 개인은 장관이 별도의 지시를 내리거나, 공석이 채워지거나, 공석 발생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 종료하는 등 그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할 때까지 대행을 지속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 따라 대행자로 임용된 개인은 자신이 서명하고 장관에게 전달된 문서로서 자신의 지위를 사직할 수

		있다. (6) 개인이 관장으로 대행하는 경우, 그 개인은 관장의 모든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고, 관장의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7) 전(1)항에 따라 대행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된 모든 일들의 유효성은, 그들의 임용의 근거가 발생하지 않은 것, 임용 또는 임용과 관련하여 결함이나 불법이 있는 것, 해당 임용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대행의 근거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실한 이유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없다. (8) 제17조B는 도서관장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방식처럼 이 조항에 따라 임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적용한다.
	제18조 공무원	도서관 직원은 '1999 공공서비스법'에 따라 종사해야 한다.
제4부 재정	제20조 도서관에 지불할 수 있는 금전	(1) 도서관의 목적을 위하여 의회에 의해 승인된 해당 금전은 도서관에 지불될 수 있다. (2) 재정장관은 전(1)항에서 간주된 금전이 언제 얼마나 도서관에 지불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줄 수 있다.
	제22조 도서관 금전의 적용	(1) 도서관의 금전은 다음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a) 이 법령에 따라 도서관의 비용과 지출의 지불이나 이행 (b)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보수, 수당 및 경비를 위한 지불 (2) 전(1)항은 '1997 호주연방 기관 및 단체법'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잉여자금의 투자를 금지하지 않는다.
	제26조 세금으로부터의 면제	도서관은 호주연방 혹은 주정부 또는 자치령 등의 모든 법령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5부 기타사항	제27조A 도서관 구내에	(1) 도서관 규정은 도서관의 관할 아래 있는 호주 수도자치구역의 구내에서 주류의 판매, 공급, 처리, 소유 또는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서의 주류의 제공	(2) 주류의 판매, 공급, 처리와 관련된 호주수도자치구역법(Law of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은, 전(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과 관련된 부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이 조항에서: 주류는 와인, 증류주, 에일 맥주, 맥주, 흑맥주, 사과술, 페리 주 또는 보통 음료로서 사용되거나 사용에 적합한 알코올을 함유하는 모든 액체를 의미한다.
	제27조B 도서관 부지 및 건물의 관리	(1) 도서관규정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도서관에 의해 소유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모든 부지나 건물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통제하거나 제한하고 금지하는 규정 (b) 해당 부지나 건물에 대한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c) 해당 부지나 건물로부터 개인을 내보내는 규정 (2) 도서관의 관리에 있거나 도서관에 의해 소유된 어떠한 부지나 건물에 대한 이 조항에서의 참조는, 해당 부지나 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참조를 포함한다.
	제28조 규정들	연방총독은 이 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락된 모든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혹은 이법을 실행하고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500을 넘지 않는 형벌을 규정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3.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호주의 2020년 저작권법 관련 증보법[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Productivity Commission Response Part 2 and Other

Measures) Act 2020]은 특허(patents), 상표(trade marks), 디자인(desings), 저작물(copyrights)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음[38]

❍ 이 중 저작물과 관련된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은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하여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5장에서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장을 입법화하여 해석(제48조),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하여 복제 또는 송신(제49조), 제51조AA조에서 호주 국립기록보존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규정을,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제52조),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는 예시에 이 장의 적용(제53조)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39]

❍ 특히, 최근 호주 정부는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혁안을 제출했는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Reasonably dilgent research)"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고아저작물을 특정용도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40]

❍ 이처럼 이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한 이후에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

38) '2020년 저작권법 관련 증보법'은 2018년 동법을 기초로 증보한 법으로서 2003년 디자인법(Design Act 2003), 1990년 특허법(Patent Act 1990), 1995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을 개정하였음[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Productivity Commission Response Part 2 and Other Measures) Act 2020,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20A00009].

39)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Copyright Act 196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180

40) 이처럼 호주정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호주전역에 콘텐츠생성과 지식보급이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와 공공기관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창의적인 작품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되어 이러한 자료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것과 같이 고아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예외는 연간 1,000만~2,000만 달러 상당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의 고아저작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이하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proposed-copyright-reform-australia-limited-liability-scheme-use-orphan-works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운에 저작권자가 나타나더라도 고아저작물 이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이후에 저작권자가 허락한다면 이용자는 합리적인 기간동안 저작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음

○ 하지만 저작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앞으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표 3-14> 호주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2020)

제40조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① 어문,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을 다루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①A) 교육기관에 등록된 외부 학생에 의한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승인된 수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련된 것이라면 강의 노트를 제외한 어문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저작물에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B) 제1A항에서 강의노트란 수업 또는 연구과정 내에서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교육가에 의해서 수업 또는 연구의 과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어문 저작물을 의미한다.
②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이용 또는 어문,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개작의 이용이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이용일 때 그 이용이 연구와 수업의 목적을 위하여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이용의 목적과 성격;
(b)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성질(nature)
(c)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을 획득할 가능성
(d) 그 저작물 또는 개작에 대한 시장 또는 가치에 관한 이용의 영향
(e)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일부만이 이용된 경우 —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전부와 관련하여 그 복제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또는 수업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에 있는 논문에 포함된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개작의 전부 또는 일부 복

제는 공정한 이용이 된다.

④제3항은 공표된 저작물이 다른 연구 또는 수업 목적으로 복제된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 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아래 표에 기재되고 정기 간행물의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 또는 개작을 합리적인 부분 이하의 복제는 연구 또는 수업 목적으로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공정한 이용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분이란 다음의 표에 명기된 양을 의미한다.

⑥ 제5항은 복제된 저작물 또는 개작의 양이 항목 중의 단지 하나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양을 넘었을지라도 전항의 도표의 두 항목에 기술된 저작물 또는 개작의 복제에 적용된다.

⑦ 만약

(a) 공표된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의 복제 또는 어문 또는 연극 저작 물의 공표된 개작을 복제하고,

(b) 그 복제가 그 저작물 또는 개작의 (제5항에서 정의된 것처럼) 합리적인 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제5항은 동일한 저작물 또는 개작의, 다른 부분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후의 복제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⑧ 제10조 제2항, 제2A항, 제2B항, 제2C항은 이 조의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제48조 (해석) 이 장에서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은 그러한 정기간행물에 나타나는 (미술저작물을 제외하고) 어떤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49조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하여 복제 또는 송신) ① 일반인들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책임지는 직원들에게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존재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공표된 저작물인,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을 제외하고 정기간행물에 포함되거나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의 논문 전체 또는 논문의 일부분을 제공해 달라는 서면 요구와

(b) 신청인이 다음을 진술하는 서명한 신청서

(i) 신청인이 연구 목적을 위한 복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그 복

제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ii) 신청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공무원에게서 동일한 논문 또는 동일한 다른 저작물의, 또는 그 논문이나 다른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의 복제물을 이전에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

② 이 조에 따라 제1항에서 언급된 요청과 선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담당직원에게 제공된 경우에, 선언이 그의 지식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그 담당 공무원은 요청에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그 요청을 한 사람에게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②A) 이용자들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에게 다음을 할 수 있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존재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공표된 저작물에서 논문의 전체 또는 부분,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논문을 제외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부분의 복제 요구, 그리고

(b) 다음 취지의 선언

(i) 신청인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다는 사실과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ii) 신청인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공무원에게서 동일한 논문 또는 저작물, 또는 그 논문 또는 다른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iii) 신청인의 원거리성 때문에, 신청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담당직원에게 신청인이 복제를 요청하기 전에 복제물이 공급될 수 있기에 충분한 복제와 관련된 제1항에서 언급된 요구서와 선언을 쉽게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2B) 제2A항에서 언급된 요구서 또는 선언 서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②C) 이 조에 따라: (a) 제2A항에서 언급된 요청과 선언이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고,

(b) 담당 직원이 그 신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구와 선언의 자세한 사항(particulars)을 신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구와 명세서를 설명하는 신청서와 다음에서 진술하는 경우

(i) 제2A항 (b)호 (i)목과 (ii)목에서 명시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한 사람에 의한 선언이 담당 직원의 지식으로 중요한 부분에 진실이 아니라는 진술을 포함하지 않음

(ii) 담당 직원이 제2A항 (b)호 (iii)목에 명시된 문제와 관련된 한 그 사람에 의한 선언이 진실이라고 생각;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이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복제물을 공급할 수도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A항에 따라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 그리고 공급하기 위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에 복제물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가격을 비용이 초과한다면 제2항 또는 제2C항은 그 요청에 적용하지 않는다.

④ 기사가 동일한 연구 또는 수업 과정을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다면 제2항 또는 제2C항은 동일한 정기간행물에서 포함된 2 이상의 기사 또는 기사의 부분의 복제물을 위한 요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⑤ 다음의 조건이 아니라면 제2항 또는 제2C항은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전체의 복제물에 대한 요구 또는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넘어 포함하는 그런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a) 저작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소장품의 부분을 형성

(b) 복제가 되기 전에 담당 직원은 합리적인 조사 이후 일반적인 거래가격으로 합당한 시간 내에 획득할 수 없다는 진술의 선언

(⑤AA) 제5항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특성이 제10조 제2항 또는 제2A항이 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합리적인 부분의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10조 제2항 또는 제2A항에 의해서 결정된다.

(⑤AB) 제5조 (b)호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 직원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복제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복제물을 요구하는 시기

(b)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이 그 사람에게 배달될 수 있는 시간

(c) 저작물의 전자복제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거래 가격으로 획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⑤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한) 공표된 저작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의 일부분으로서 전자 형태로 획득되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서 공급되는 어떤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영역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a)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전자복제

(b)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전달

⑥ 복제물이 요청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의 저작권은 제1항 또는 제2A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기사 또는 기사의 일부분의 복제물의 제작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⑦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제외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1항 또는 제2A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제2항 또는 제2C항에 따라 저작물의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를 통해서 복제물이 요구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⑦A) 제6항과 제7항은 요청한 사람에게 전달을 위하여 이 조에 따른 요구에 관하여 (c)호와 (d)호 조건이 아니라면 제2항 또는 제2C항에 따른 다음의 전자복제물에 대한 제작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기사의 일부분 또는

(b) 기사가 아닌 공표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

(c) 복제물이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이나 전달 시에 다음의 규칙에 따라 통지

(i) 복제가 이 조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법에 따라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보호된다는 사실과

(ii) 규칙에 따라 규정된 대로 다른 문제

(d) 복제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자마자 제2항 또는 제2C항에 따르고,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서 보관되는 복제물의 파기

(⑦B) 제2항, 제2C항 또는 제5A항에 따라 기사를 전달하는 것은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에 존재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⑧ 규칙은 규칙에서 명시한 대로 일정한 경우에 제6항 또는 제7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⑨ 이 조에서 문서는 공중의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소장품의 전부 또는 부분의 문서를 의미한다.

도서관은 직접 또는 상호교환 대출을 통해서 공중에게 소장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제공(supply)은 전달의 방법을 통한 제공도 포함한다.

제51AA조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① 공공조사에 공개된 경우 제10조 제1항에서 문서의 정의의 (a)호 (i)목 또는(aa)호에 의해 포함되는 문서의 소장품으로 유지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문서담당직원에 의해서 또는 직원을 대신해서 다음을 제작 또는 전달한 경우 침해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단 하나의 이용 복제물

(b)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중앙 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한권의 참고복제물 또는

(c)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지역 사무소에서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직원에 의해서 저작물의 참고 복제물을 위한 서면요구에 담당 직원이 저작물의 참고복제물이 그 지역사무소에 이전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그 지역 사무소에 공급을 위하여 저작물의 참고복제물

(d) 담당 직원이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지역 직원에게 공급된 저작물의 참고복제물이 유실, 손상, 파괴되었고 그 지역 사무소의 직원이 그 저작물의 대체복제물을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라는 것을 직원이 믿는다면 지역 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단일의 대체복제물

(e) 담당 직원이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중앙사무실에 공급되는 저작물의 참고복제물이 유실, 손상, 파괴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중앙사무소에 공급을 위하여 단권의 저작물의 대체 저작물

② 이 조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참고 복제물은 공중의 구성원에게 저작물에 접속을 제공하는 사무소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호주국립기록보관소의 중앙 또는 지역 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한 이용 복제물로 만든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저작물에 관하여 대체 복제물(replacement copy)은 유실, 손상, 파괴된 저작물의 참고복제물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용 복제물로부터 만들어진 복제물을 의미한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용 복제물(working copy)은 호주국립기록보관소가 복제물을 보유하고 참고복제물과 대체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복제물을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제52조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 ①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동일 형태이든지 변형된 형태이든지 새로운 저작물의 최초의

출판과 새로운 저작물의 연속적인 출판은 예전 저작물의 침해 또는 예전 저작물의 허락받지 않은 공표로 추정되지 않는다.

(a) (이 조에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언급되는) 공표된 어문, 연극 음악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이 공표되기 직전에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포함하고,

(b) 새로운 저작물이 공표되기 전에 저작물의 의도된 공표의 규정된 통지가 주어지고,

(c) 새로운 저작물이 공표되기 직전 구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신분이 새로운 저작물의 출판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② 다음의 조건이 아니라면 전항은 새로운 저작물의 최초 출판에 포함되지 않은 예전의 저작물의 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저작물의 연속적인 출판에 전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단지 이 조를 위하여 제51조 제1항은 연속적인 출판 직전에 이전 저작물의 일부분에 적용;

(b) 연속적인 출판 전에 의도된 출판의 규정된 통지와

(c) 연속적인 출판 직전에 예전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신분이 연속 출판업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③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이 공표되었다면 그리고 이 조 때문에 출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저작권은 출판 이후에 다음 각 호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다.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방송 또는

(b) (방송을 제외하고) 전송한 사람에게 지불할 비용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전자적으로 전송 또는

(c) 공공장소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공연 또는

(d)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분의 음반을 만들다.

제53조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는 예시에 이 장의 적용) 기사, 논문, 또는 (이 조에서 예시로 언급된) 다른 저작물을 설명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미술저작물이 기사, 논문, 또는 어문,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동반되는 경우에, 이 장의 전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기사, 논문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 저작권은 예시에 존

재하는 모든 저작권을 포함한다.

(b)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1A조에서 기사, 논문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은 예시의 복제물과 함께 기사, 논문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c) 제49조 또는 제50조에서 기사 또는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된 예시의 복제물과 함께 있는 기사 또는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d) 제51A조, 제52조에서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는 예시와 함께 있는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

Ⅵ. 일본

1. 개관

○ 일본 유일의 국립도서관은 1948년 '國立國會圖書館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국회와 정부 및 대법원, 국민 등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정부부처 행정자료실 등이 하나의 도서관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모습임

○ 원래 전쟁 전 일본의 국가도서관은 1890년 설립된 '제국의회도서관'과 1872년 설립된 '제국도서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패전 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요청으로 파견된 미국의회도서관 사절단의 조언에 따라 미국식 의회도서관체제로 통합·정리하게 되었음

○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동경본관', '관서관(關西館)', '국제어린이도서관' 등 3개관 5개부 47개과의 조직에 906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음

○ 즉 2002년부터는 교토(京都)소재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을 개관하면서, 동경본관의 기능 중, 일본 고서적의 보존, 연속간행물 및 신문 등의 보존, 도서관 상호대차업무, 종합목록네트워크관리, 점자 및 녹음도서 등 장애인도서관서비스업무, 도서관분야 조사 및 연구, 디지털화사업과 전자도서관서비스 등 일부 업무를 이관하여 본관과 분관의 분담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국회도서관법’ 은 제10장, 제11장 납본규정에 의해 일본 내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 즉 지도와 레코드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하는 출판 자료를 납본 받고 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약 4,491만 점의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있음[41)]

○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시각장애인용 도서관자료 보급사업으로서 1975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녹음 도서를 제작하여 전국의 도서관을 상대로 대출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1989년부터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세계6개 대륙에 지정·운영하는 보존센터(IFLA PAC,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중 아시아보존센터를 유치하여 아시아 각국에 대한 보존기술 보급과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은 WARP(Web Archiving Project)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 프로젝트는 2002년부터 국내의 웹 사이트를 저장하는 인테넷 자료수집・보존사업이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는 수시로 갱신되고 삭제되며, 과거의 정보가 손실되는 특성을 고려해 후세에 언제든지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국・공립대학 등이 수집대상이며, 민간 웹사이트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것만 저장하고, 주로 사립대학 및 국제문화행사 웹사이트, 무료 전자잡지 등을 저장하고 있음

2.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주요 내용

○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법은 모두 12개장(章) 28개조(條)와 17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1948년 제정 이래 모두 16차례나 개정되었지

41) 國立國會圖書館, “数字で見る国立国会図書館”, https://www.ndl.go.jp/jp/aboutus/outline/numerically.html.

만, 관서관 설치와 납본관련 규정이 추가되었을 뿐, 도서관운영의 기본원칙은 큰 변화 없이 60년을 유지하여 오고 있음

○ 제1장 설립 및 목적에서는 국회도서관법이라고 칭하지만, 도서관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는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관과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제2장 관장의 임면과 관련해서는, 국회 양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직무의 과실이 없는 한 계속 재직을 보장하고 있음

○ 일본은 국립국회도서관법에 관장의 직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국립국회도서관법에서 국회도서관장의 대우는 국무대신과 동등하고 급여가 장관과 등등하고 고액(2005년초 연간 3,000만엔 이상)으로 인한 논란이 되어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현 급여수준은 부대신급임. 즉 관장은 부대신(부관장)급으로 임명하며, 국회도서관 부관장은 사무차관에 해당함

○ 제4장에서는 도서관운영의 경과와 제 규정 및 예산 등의 사무에 관해서는 국회 양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각료급으로 구성되는 연락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업무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조직운영을 명시하고,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조사 및 입법고사국의 임무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2002년 설치된 ‘관서관’에 대한 부가조항을 추가하고 있음

○ 국립국회도서관의 임무와 관련하여 제7장에서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대한 봉사를 명시하고, 제8장에서는 일반 공중 및 기타 도서관에 대한 봉사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

○ 제9장부터 제11장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자료수집과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밝히고 있으며, 제12장에서 금전의 수입 지출에 대한 승인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표 3-15>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법[42)]

제1장 설립 및 목적

제1조 이 법률에 의해 국립국회도서관을 설립하고, 이 법률을 국립국회도서관법이라 칭한다.

제2조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 대하여, 나아가 일본국민에 대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서관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립국회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부도서관 및 향후 설립되는 지부도서관으로 구성된다.

제2장 관장

제4조 ① 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은 1인으로 한다. 관장은 양원 의장이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직무집행의 과실이 없는 한 재직한다. 관장은 정치활동을 조심하고, 정치적 이유로 인해 파면되는 일은 없다. 관장은 양원 의장의 공동제의에 의해서는 파면될 수 있다.

제5조 ① 관장은 도서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 및 고용인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관장은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관리상 필요한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은 공시에 의해서 시행된다.

제6조 관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양원 의장에 대해 전 회계연도의 도서관 경영 및 재정 상태에 대해 보고한다.

42) e-Gov, "国立国会図書館(1948년 제정, 2015년 개정)", https://elaws.e-gov.go.jp.

제7조 관장은 1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마다, 이전 기간 중에 일본 국내에서 간행된 출판물의 목록 또는 색인을 작성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관장은 출판에 적절한 양식으로 일본의 법률색인을 작성해야 한다.

제3장 부관장 및 그 외의 직원, 그리고 고용인

제9조 국립국회도서관의 부관장은 1인으로 한다. 부관장은 관장이 양원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부관장은 도서관사무에 있어 관장을 보좌한다. 관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혹은 관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부관장이 관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① 국립국회도서관의 기타 직원 및 고용인은,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한 자에 대해, 국회직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장이 정한다.

② 도서관직원은 국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행정 또는 사법 각 부문의 지위를 겸직할 수도 없다. 단, 행정 혹은 사법 각 부문의 지부도서관 직원의 경우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의원 운영위원회 및 국립국회도서관 연락조정위원회

제11조 ①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도서관의 경과에 관한 관장의 보고, 도서관 관리상 관장이 정하는 제 규정, 도서관 예산 및 기타 사무에 대해 심사한다.

② 각 의원의 의원운영위원장은 전 항의 심사결과를 해당 원에 보고한다.

제12조 ① 국립국회도서관에 연락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4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며, 각 의원의 의원운영위원장, 최고재판소장관이 임명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1명 및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국무대신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직무에 있어 보수를 받지 않는다.

③ 관장은 위원회에 출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연락조정위원회는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 대해, 국회와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대한 국립국회도서관 봉사의 개선에 관해 권고한다.

제5장 도서관의 부국(部局)

제14조 관장은 관리 사무를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부국(部局) 및 기타 단위를 도서관에 설치한다.

제6장 조사 및 입법고사국(立法考査局)

제15조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 내에 조사 및 입법고사국이라는 이름을 갖는 1국을 설치한다. 이 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구에 따라 양원 의원회의 현안 중인 법안, 또는 내각에서 국회로 송부된 안건을 분석, 또는 평가하여 양원 위원회에 진언하고 보좌함과 동시에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원조하는 일.
2. 요구에 따라, 혹은 요구를 예측하여 자발적으로, 입법자료 혹은 관련 자료의 수집, 분류, 분석, 번역, 색인, 적록(摘錄), 편집, 보고 및 기타의 준비를 하여, 해당 자료의 선택 또는 제출에 있어서 당파적, 관료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양원, 위원회 및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일.
3. 입법을 준비할 때, 양원, 위원회 및 의원을 보좌하고, 의안의 기초를 작성하는 데 봉사하는 일. 단, 해당 보좌는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공되며, 조사 및 입법고사국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입법 발의 및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4. 양원, 위원회 및 의원의 필요가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 또는 일반 공중에게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제16조 ① 이 국에 필요한 국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자에 관해 국회직원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이 국의 직원으로, 양 원의 상임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관련 분야에 전문 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장2 관서관(關西館)

제16조2 ① 중앙도서관에 관서관을 둔다.

② 관서관의 위치 및 소장사무(所掌事務)는 관장이 정한다.

③ 관서관에는 관서관장 1명을 두며, 국립국회도서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④ 관서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관서관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7장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의 봉사

제17조 관장은 행정 및 사법 각 부문과 도서관 봉사를 연계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관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도서관장을, 이러한 부문을 각기 대표하는 연락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한다. 단,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의 규정을 따르고, 또한 해당 부문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2.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목록법, 도서관상호대차 및 자료교환, 종합목록 및 종합일람표 작성 등을 포함, 도서관운영의 방법 및 제도를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도서자료를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장에게 연보 및 특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도서관의 예산은 해당 부문의 예산 안에 '도서관'이라는 비목으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계상한다. 이 비목의 경비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을 대표하는 연락조정위원회 위원 및 관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타 경비로 유용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제19조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의 도서관장은 해당 각 부문에 충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각 도서관장은, 그 직원을 국회직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 재판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할 수 있다. 해당 각 도서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해 입수하는 방법을 해당 각 부문의 장관 또는 관장에게 권고하거나 직접 구입 또는 입수할 수 있다.

제20조 관장이 최초 임명된 뒤 6개월 이내에,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에 현존하는 모든 도서관은, 본장의 규정에 의해 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이 된다. 또한, 현재 도서관을 보유하지 않은 각 청에 있어서는 1년 이내에 지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8장 일반 공중 및 공립 기타 도서관에 대한 봉사

제21조 ① 국립국회도서관의 도서관봉사는 직접적으로 또는 공립 기타 도서관을 경유하여, 양원 위원회 및 의원, 그리고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으로부터 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일본국민이 그것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관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관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국립국회도서관이 수집자료 및 인터넷 기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열람제공을 받는 도서관자료와 동등한 내용을 가지는 정보를, 국립국회도서관 건물 내, 혹은 도서관상호대차를 통해, 또는 복사나 전시 등을 통해 일반 공중의 사용 및 연구용으로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시의에 따라서 도서관봉사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봉사를 제공한다.
2. 모든 종류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도서관조직 및 도서관봉사의 개선을 통해, 도/도/부/현 의회나 기타 지방의회, 공무원 및 도서관 직원을 원조한다.
3.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작성한 출판물을 다른 도서관 및 개인이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장이 정한 가격으로 그것을 판매한다.
4. 일본의 도서관자료자원에 관한 총합목록 및 전국 도서관자료자원과 연계하는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목록과 일람표 작성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② 관장은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복사를 행할 경우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해진 액수의 복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정해진 바에 의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복사에 관한 사무의 일부(이하 [복사사무]라고 한다)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사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복사물을 인도받는 사람은 해당 법인에 대해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복사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복사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수수한 복사요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위탁에 관련된 복사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일반적으로 18세 이하의 이용자를 주된 이용자로 상정하는 도서 및 기타 도서관 자료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국제적인 연계 하에서 행하는 지부도서관으

로서 국제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국제어린이도서관에는 국제어린이도서관장 1인을 두며,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 중 관장이 임명한다.

③ 국제어린이도서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국제어린이도서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9장 수집자료

제23조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수집 자료로서,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다음 장 및 제11장의 규정에 따른 납본 이외에도 구입, 기증, 교환, 유증 기타 방법에 의해, 또는 행정 및 사법 각 부문으로부터 이관에 의해 수집할 수 있다. 행정 및 사법 각 부문 장관은, 해당 각 부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사용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및 도서관자료를 국립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도서 및 기타 도서관자료를 행정 혹은 사법 각 부문에 이관하거나 교환에 제공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10장 국가, 지방 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등에 의한 출판물 납본

제24조 ① 국가의 제 기관에 의해, 또는 국가의 제 기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출판물(기밀 취급되는 것 및 서식, 견본, 기타 간단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은 공용, 또는 외국정부 출판물과의 교환 및 기타 국제적인 교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장이 정한 바에 따라 30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1. 도서
2. 소책자
3. 축차간행물
4. 악보
5. 지도
6. 영화 필름
7. 전 각 호에 게재된 것 외에 인쇄 기타 방법으로 복제된 문서 혹은 그림

8. 축음기용 레코드

9.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

② 다음의 법인에 의해 또는 이들 법인을 위해, 전항에 규정된 출판물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1. 독립행정법인통칙법(평성11년(1999)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2. 국립대학법인법(평성15년(2003) 법률 제11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또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
3. 특수법인 등(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혹은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에 관해 행정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별표 제1에서 예로 든 것.

③ 전2항의 규정은 전2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단, 그 재판의 내용이 초판 또는 전판의 내용과 비교해서 증감, 또는 변경이 없이, 그 초판 혹은 전판이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전에 이미 납입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4조2 ① 지방공공단체의 제 기관에 의해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제 기관을 위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이 발행되었을 때는, 해당 기관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에 준하는 특별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관에 대해서는 5부 이하의 부수를, 정촌(이에 준하는 특별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관에 있어서는 3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법인에 의해 또는 이 법인을 위해,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판물이 발행되었을 때, 해당 법인은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가 설립한 법인 기타 도/도/부/현 또는 시의 제 기관에 준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2부 이하의 부수를 직접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

여야 한다.

1. 항만법(소화25년(1950) 법률 제218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항만국.
2. 지방주택공급공사법(소화40년(1965) 법률 제124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주택공급공사
3. 지방도로공사법(소화45년(1970) 법률 제82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지방도로공사
4. 공유지확대추진에관한법률(소화47년(1972) 법률 제66호)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개발공사
5. 지방독립행정법인법(평성15년(2003)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
6. 특수법인 등 중에서 별표 제2에서 예로 든 것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장 그 외의 자에 의한 출판물의 납본

제25조 ① 앞 2개 조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는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판물을 발행할 시, 앞 2개 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의 축적 및 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성된 중 가장 양호한 판본 1부를 국립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단, 발행자가 그 출판물을 국립국회도서관에 기증, 혹은 유증하였을 때, 또는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24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 중, [납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납입 또는 기증 혹은 유증]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물을 납입하는 자에 대해서, 관장은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출판 및 납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한다.

제25조2 ① 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출판물을 납본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출판물의 소매가격**(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발행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전항의 과태료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한다.

제11장의2 국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등의 인터넷자료 기록

제25조의3 ① 관장은 공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24조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가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해당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하여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인터넷자료(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및 그 밖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된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동일)를 국립국회도서관의 사용과 관련된 기록매체에 기록함으로써 수집할 수 있다.

② 제24조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는 스스로가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자신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하여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인터넷 자료(그 성질 및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목적에 비추어, 전항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관장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동일)에 대해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전항의 기록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③ 관장은 제24조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자가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해당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하여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인터넷자료 중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관장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국립국회도서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장의3 온라인 자료의 기록

제25조의4 ① 제24조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는 온라인자료(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및 그 밖의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된 문자, 영상, 소리 또는 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 및 그 밖의 송신수단에 의하여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되거나 송신되는 것 중 도서 또는 축차간행물(축차간행)을 말한다. 이하 동일)를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송신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의 축적 및 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온라인 자료를 국립국회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목에 열거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관장이 제24조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해당자가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송신한 온라인 자료를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제공을 거치지 않고 관장이 국립국회도서관의 사용과 관련된 기록매체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한 경우

나. 온라인자료의 내용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전에 수집된 온라인자료의 내용에 비하여 증감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다. 온라인 자료의 성질 및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송신된 목적에 비추어 전항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관장이 인정한 경우

라.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공 또는 전항 제1호의 승인과 관련된 온라인 자료를 국립국회도서관의 사용과 관련된 기록매체에 기록함으로써 수집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이 항에 있어 「제공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장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제공에 관해 통상 필요로 해야 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단 제공자로부터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2장 금전의 수입 및 지출 예산

제26조 ①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에 있어, 그 봉사 및 수집 자료에 관련하여 즉시 지불에 쓰기 위한 금전의 기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경우에는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 국립국회도서관에 충당되는 모든 경비는 관장의 감독 하에 지정된 지출관에 의해 지출된다.

제28조 국립국회도서관의 예산은, 관장이 이를 작성하여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예산을 심사하여 권고를 덧붙이거나 덧붙이지 않고 양원의 의장에게 송부한다.

3.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일본의 저작권법은 제31조에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 관한 규정을, 교과용 확대 도서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3),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복제(제35조),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 및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제43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일본 저작권법 제67조에 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규정과 유사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표 3-16> 일본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

일본 「저작권법」[43]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 국립국회도서관과 도서, 기록 및 기타 자료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및 기타 시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본 항 및 제3항에서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도서관 등의 도서, 기록 및 기타 자료(이하 본 조에서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 등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해당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별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부. 제3항에서 동일)의 복제물을 1인당 일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도서관 자료(이하 본 조에서 '절판 등 자료')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전항 각 호에 열거된 경우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료 원본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멸실, 손상 또는 오손을 피하기 위해 해당 원본을 대신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절판 등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공중송신(송신 가능화를 포함한다. 동항에서도 동일)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도서관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③ 국립국회도서관은 절판 등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에 대해 도서관 등이나 이와 유사한 외국의 시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매체에 기록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자동 공중송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 등에서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도서관 등의 이용자 요구에 따라, 그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 공중 송신되는 해당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작성하고, 해당 복제물을 1인당 일부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 (인용) ①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며 또한 보도, 비평, 연구 및 그 밖의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저작자의 명의 하에 공표하는 홍보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지,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에 전재할 수 있다. 단,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3 (교과용 확대 도서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등) ①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시각장애, 발달장애 및 그 밖의 장애로 인하여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사용하기가 곤란한 아동 또는 학생의 학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교과용 도서에 이용되고 있는 문자, 도형 등의 확대 및 그 밖의 해당 아동 또는 학생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하는 교과용 도서 및 기타 복제물(점자로 복제하는 것

을 제외하고 해당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교과용 확대도서 등')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교과용 확대도서 등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상금의 액수에 준하여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액수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권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③ 문화청장관은 전항의 산출방법을 정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④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특정도서 등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81호)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35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복제) ① 학교, 기타 교육기관(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제외)에서 교육을 담임하는 자 및 수업을 받는 자는 그 수업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자동 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이 가능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도 동일)을 하거나 공표된 저작물로서 공중송신되는 것을 수신장치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해당 복제의 부수 및 해당 복제, 공중송신 또는 전달의 양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송신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자는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의 수업과정에서 해당 수업을 직접 듣는 자에 대해 해당 저작물을 그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제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저작물을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연, 연주, 상영하거나 구술하여 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업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때 공중송신하는 때에는 동시에 수업을 하지 아니한다.

제43조(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 및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한 복제) ① 국립국회도서관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법(1948년 법률 제5호)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인터넷자료(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자료"라 한

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인터넷자료 또는 해당 온라인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국립국회도서관의 사용과 관련된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해당 각 호의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가.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 동법 제25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

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 동법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동항에 규정된 온라인 자료

제67조(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①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기간에 걸쳐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된 사실이 분명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불명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통상의 사용료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그 재정과 관련된 이용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 공공 단체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본 항 및 다음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함)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 등이 저작권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정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방법,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문화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동항의 재정과 관련된 복제물이라는 취지 및 해당 재정이 있던 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43) e-Gov, "著作権法(1970년 제정, 2020년 개정)", https://elaws.e-gov.go.jp.

Ⅶ. 시사점

1.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 시사점

○ 미국 「US Code」 제2편(의회) 제5절(의회도서관) 제136조 a-2(Librarian of Congress and Deputy Libarian of Congress ; compensation)에서는 관장·부관장 임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보수표(pay schedule)에 의거하여 관장은 부장관급(내각의 부장관)-Level Ⅱ of the Executive Schedule에 해당함. 1999년 개정 이전에는 Level Ⅲ 수준이었음. 부관장은 차관급(Under Secretary)인 Level Ⅲ에 해당함

○ 캐나다는 국립 캐나다 도서관법 및 기록관리법(Lib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의 “관장의 임명 제5조제1항에서 총독은 관장을 임명하고, 관장은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 불리우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며, 부처 차관과 동등한 직급과 권한을 가진다” 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장은 차관급임을 알 수 있음

○ 일본은 과거 국립국회도서관법에서 국회도서관장의 대우는 국무대신과 동등하고 급여가 장관과 등등하고 고액(2005년초 연간 3,000만엔 이상)으로 인한 논란이 되어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현 급여 수준은 부대신급임. 즉 관장은 부대신(부관장)급으로 임명하며, 국회도서관 부관장은 사무차관에 해당함

○ 따라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도서관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협력 및 지원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를 격상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음

2. 주요국의 납본제도 시사점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의 경우 납본에 관하여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립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저작자·출판사의 상업적 이익보다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온라인 제작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통해 온라인 납본 보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배제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필요함

○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도서관법」상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국의 도서관 협력체계 시사점

○ 미국 LC의 방대한 소장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저작권 제도상 방식주의(등록주의)의 영향도 있으나 활발한 국내외 네트워크, 해외사무소 및 자료 공유·교환 체계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

○ 프랑스 역시 활발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료 전송에 관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장거리 열람을 가능하게 한다”는 규정을 두며 소장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구체적 협력 규정은 없으나 도서관과 출판업자 간의 호의적인 참여와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국내 차원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국외 차원에서는 단순 협력 차원을 넘어서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

4. 주요국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도 시사점

○ EU는 고아저작물지침에 따라 도서관 등의 기관에 한정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공중에 공개하는 이용에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은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정이용 조항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은 고아저작물 등의 경우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정허락”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도서관에 대한 고아저작물 이용 면책 등 관련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베른협약, WTO/TRIPs 등 관련 저작권 국제 시스템하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5. 주요국의 디지털자료 수집 현황 시사점

○ 프랑스의 경우「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DADVSI)에 따라 국내 전자출판물을 납본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 BnF와 국립시청각연구소가 인터넷 정보자원에 대한 법정납본의 권한을 가짐

○ 한편, 국제적으로 데이터 경제가 대두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데이터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하여「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 개념에 데이터를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제4장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 정비 방안

Ⅰ. 현행 「도서관법」 상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 필요 방안

○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따라서 중요한 지식정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제적으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협력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를 격상할 필요가 있음

○ 미국「US Code」제2편(의회) 제5절(의회도서관) 제136조 a-2(Librarian of Congress and Deputy Libarian of Congress ; compensation)에서는 관장·부관장 임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보수표(pay schedule)에 의거하여 관장은 부장관급(내각의 부장관)-Level Ⅱ of the Executive Schedule에 해당함. 1999년 개정 이전에는 Level Ⅲ 수준이었음. 부관장은 차관급(Under Secretary)인 Level Ⅲ에 해당함

○ 캐나다는 국립 캐나다 도서관법 및 기록관리법(Lib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의 “관장의 임명 제5조제1항에서 총독은 관장을 임명하고, 관장은 사서 및 기록관리관으로 불리우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

며, 부처 차관과 동등한 직급과 권한을 가진다" 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장은 차관급임을 알 수 있음

○ 일본은 과거 국립국회도서관법에서 국회도서관장의 대우는 국무대신과 동등하고 급여가 장관과 등등하고 고액(2005년초 연간 3,000만엔 이상)으로 인한 논란이 되어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현 급여 수준은 부대신급임. 즉 관장은 부대신(부관장)급으로 임명하며, 국회도서관 부관장은 사무차관에 해당함

○ 국내 유사입법례로 현행「국회도서관법」제4조에 "관장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제2항에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제1항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고, 동조제8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도서관법」에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협력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는 규정을「도서관법」에 입법화할 필요가 있음

<표 4-1>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위 격상에 관한 개정(안)

현행「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

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으로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 및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설>	**③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 현행 「도서관법」 상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확장 관련 개선방안

❍ 현행「도서관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음

❍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아시아 지역의 지역학 연구, 정부의 대외정책 수립 및 해외기업 진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 서비스 제공[2019년 기준으로 약 749만 명,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1위 미국(약 254만 명), 2위 중국(약 246만 명), 3위 일본(약 82만명)] 및 외국주민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확산, 해외에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LC)의 Oversea Offices는 카이로, 이슬람, 자카르타, 뉴델리, 리오, 서아프리카 등 비교적 자료입수와 유통이 어려운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협력자료 입수프로그램과 교환 및 기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술 및 문화 기관의 출판물을 교환하고 있고, 호주의 국립도서관 역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호주 대사관에 세계

적인 수준의 현대 인도네시아 연구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도 왕립 동남아/카브리해 지역학연구소(라이덴대학 도서관)를 설치하고 인도네시아과학원과의 협정을 통하여 1969년부터 구 식민지(말레이시아 등) 출판물 수집 및 번역을 통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신조류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 각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융합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실현함과 더불어 해외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무소 설치 및 한국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도서관법」제19조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재외국민의 도서관 자료 이용에 관한 업무”를 삽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 이와 더불어「도서관법」제19조제3항의 규정을 보면, “제1항제7호(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 자료보존연구센터에서는 보존 및 복원사업만을 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삭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도서관법」제19조제5항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사법부의 법원도서관 등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는 법개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음

〈표 4-2〉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범위 확장에 관한 개선방안

현행 「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1.-4. (현행과 같음)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 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신설〉	6.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외국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 및 해외사무소 운영**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현행과 같음)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재외국민의 도서관자료 이용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삭제〉**
④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Ⅲ. 현행 「도서관법」 상 도서관직원 교육훈련 규정 명확화 방안

○ 현행「도서관법」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도서관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처럼 현행「도서관법」제19조제1항제5호상의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삼아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를 명확화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인 기반하에서 사서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도서관의 사회적인 가치가 증대되고 있고, 도서관 직원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도서관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훈련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음

<표 4-3>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명확화 방안

현행「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신설>	제19조의2(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도서관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사서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대상과 수요예측 3.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교육과정과 훈련방법 4. 그 밖에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Ⅳ. 현행 「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방안 개선방안

○ 현행「도서관법」제18조제1항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설립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국가에 의한 지원체계 등이 없다는 점에서 협력방안의 한계가 있는 등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유사입법례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3조에서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유통, 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력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처럼 현행「도서관법」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주체가 다르지만, 국가대표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도서관법」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관리 및 이용과 국가대표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전산정보 체계를 통한 도서관 자료의 유통, 도서관자료의 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대여 체계 구비 등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관한 개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4-4>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

현행「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신설>	**제19조의3(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축)**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1. 도서관자료를 통한 정보와 자료이용 2. 도서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도서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체계 구비 등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Ⅴ. 현행 「도서관법」 상 도서관 자료 납본제도 개선방안

○ 앞서 검토한 바 해외 주요국가는 납본자료의 요건에 최선판과 완전한 복제물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BL에서 최선판의 납본을 규정),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는 가장 우수한 품질의 복제물인 최선판(최량판, 최선본, best edition)을 법정납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의 경우 납본자료로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된 형태의 복제물인 이른바 완전본(완전판, complete copy)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도서관법」제20조제1항에 “....그 도서관자료의 최선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동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음

○ 현행「도서관법」제20조제2항은 제1항에서 도서관자료 중 온라인 자료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기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만을 포함하여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온라인 자료를 포괄하여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자료를 포함하여 납본하여야 하며, 인쇄자료의 납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로 법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현행「도서관법」제20조제4항의 신설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온라인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자료의 최선판의 완전한 복제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적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 입법화하였는바, 동법 제20조의2에서 온라인자료의 수집 규정과 온라인자료의 선택적인 납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납본을 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납본의무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음

❍ 현행「도서관법」제20조제4항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의4제2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현행「도서관법」제20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본에 대한 보상금(정가)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출판사의 경우에 온라인 자료의 제작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본 전자책을 제작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고가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에 따라 무상으로 납본 법제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해외 선진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국가들은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출판사의 상업적인 이익보다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지식자원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일부 출판사가 온라인 제작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도서관법」 제20조의2제5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보존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5> 도서관법상 납본 관련 규정 개선 방안

현행 「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의 최선판**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자료를 포함하여 납본하여야 하며, 인쇄자료의 납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온라인 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자료의 최선판의 완전한 복제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적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⑤ (현행과 같음)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표 4-6〉 「도서관법」 상 온라인 자료 수집 규정 신설 방안

현행 「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수집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라인 자료 수집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	③ (현행과 같음)

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Ⅵ. 현행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신설방안

○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 「도서관법」상 구체적인 근거의 위임도 없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심의기관인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위무에 관한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도서관법」 제20조의4에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향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4-7>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신설방안

현행 「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신설>	**제20조의4(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서관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

	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3에 따라 국가**중요**도서관 자료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Ⅶ 현행 「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에 “데이터” 개념 포섭 개정 방안

○ 현행「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보존관리,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구축, 도서관직원 교육과 도서관 지도, 지원 및 협력,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보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사회적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강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원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음

○ 최근「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법명칭이 변경되어「지능정보화기본법」에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는바, 동법 제2조제4호나목에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 · 분석 · 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에 “데이터”의 개념을 적시하고 있음

○ 따라서 입법자는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데이터 개념을 포함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 또는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포함한다)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4-8〉 「도서관법」 상 “도서관자료” 에 “데이터” 개념 포섭 방안

현행 「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 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 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 또는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포함한다)**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Ⅷ 현행 「도서관법」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 도입 방안

○ 「도서관법」상 도서관자료의 개념으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 · 정리 ·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 중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국가중요도서관자료”라는 개념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도서관중요자료에 관한 등록제를 통하여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자료의 접근권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도모함과 아울러 도서관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내 유사입법례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임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를 과학기술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 자료로 정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음

❍ 또한「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동법 제2조제1항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유형문화재”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 · 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예 · 무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서 지정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 동조제4항에서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국가등록문화재, 시 · 도등록문화재로 구별하고 있음

❍ 따라서「도서관법」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제 도입을 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대상과 범위”를 획정하고 난 이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4-9〉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규정 신설(안)

현행 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신설〉	**제20조의3(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자료 중에서 국가 차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차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7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도서관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말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Ⅸ. 현행「도서관법」 관련 법령 정비(안)

<표 4-10> 현행「도서관법」 관련 법령 정비(안)

현행「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 또는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포함한다)**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8의2. "최선판"이란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가 여러 판형으로 발행 또는 제작된 경우에 가장 우수한 품질의 판형을 말한다.**
<신설>	**8의3. "완전한 복제물"이란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형태의 복제물을 말한다.**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제18조(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 및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신설>	**③국립중앙도서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1. -4. (현행과 같음)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신설>	6.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외국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 및 해외사무소 운영**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현행과 같음)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재외국민의 도서관자료 이용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삭제)**
④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의2(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도서관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사서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대상과 수요예측 3.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교육과정과 훈련방법 4. 그 밖에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9조의3(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축)**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1. 도서관자료를 통한 정보와 자료이용 2. 도서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도서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체계 구비 등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의 최선판**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자료를 포함하여 납본하여야 하며, 인쇄자료의 납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온라인 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자료의 최선판의 완전한 복제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적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⑤ (현행과 같음)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수집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라인 자료 수집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④ (현행과 같음)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20조의3(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자료 중에서 국가 차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차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7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도서관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말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20조의4(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서관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3에 따라 국가중요도서관 자료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

	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저작권 관련 법령 정비(안)

1.「저작권법」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 2019년을 기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중 1,109,203권의 단행본이 디지털화되어 2,283개의 협약도서관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44]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디지털자료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하여 현행「저작권법」제31조의 제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 동조 제2항은 도서관 방문 이용자에게 동일한 자료에 대해 동시 이용 부수를 제한하여 서비스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판매용 도서 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도서관간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으로 인한 도서관 휴관 및 방문 제한으로 조사·연구 및 학습목적의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도 도서관자료(디지털 자료 84%는 협약도서관 이용불가)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도서관 밖 학교나 집에서 도서관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저작권법」제31조제2항 단서규정으로 “다만,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서관 방문이 통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서관 밖

44) 단행자료, 연속간행물, 공공간행물 및 비도서 자료를 모두 집계한다면 약 8,115,030개의 콘텐츠가 존재하며, 파일(면)수를 기준으로 3억 건 이상이 디지털화되어 있다.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참조(https://nl.go.kr/NL/contents/N50201010000.do).

학교나 집 등으로 전송하여 복제할 수 있다” 고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판매용 도서의 경우에 발행일로 부터 5년이 지난 저작물에 대하여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출판저작물의 인쇄부수 감소로 인한 조기 절판과 품절에 대응하고, 학교수업 및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 등 대국민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년” 에서 “3년” 으로 완화하여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저작권법」제31조제2항에서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로 인해 도서관에 찾아온 이용자들에게 특정자료를 선택적으로 보여주게 되어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한다는 측면에서 도서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한 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저작권법」제31조제2항 본문규정에서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도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컴퓨터뿐만 아니라 관련기기(전자책 리더기, 휴대폰 등)으로도 복제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저작권법」 제31조제4항에서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과 제3항(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음

○ 즉,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을 구입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그 도서 등이 상업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면, 이를 다시 디지털화하기보다는 판매되는 도서를 구매하여 서비스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절판 또는 품절된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 특히 손상되기 쉬운 DVD 자료의 경우 복제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

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디지털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저작권법」제31조제4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도서 등이 손상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형태 판매도서에 대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4-11> 「저작권법」상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규정 개정안

현행「저작권법」	「저작권법」개정안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

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등 관련기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서관 방문이 통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서관 밖 학교나 집 등으로 전송하여 복제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④** 도서관등은 **컴퓨터등 관련기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다만 도서등이 손상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현행과 같음)

2.「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현행「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만을 받아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가지는 가치를 사장시키게 되고, 그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해결책으로 “법정허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이처럼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와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저작재산권자에게 공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위원회에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조제3항에서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가 법정허락 승인 이전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생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고아저작물과 관련하여 현행「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통하여 도서관 등의 시설에서 공중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주요 국가들 중 EU는 고아저작물지침에 따라 도서관 등의 기관에 한정하여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공중에 공개하는 이용에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정이용 조항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고아저작물 등의 경우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법정허락”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저작권법」에 고아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면책규정” 을 두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XI.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분석

○ 최근에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新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新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입법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음

○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장" 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동조의2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의 제한),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등),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7(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과 관련하여 동조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에 관하여 동조제4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최근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을 마련하고 있는바, 동조의2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ⅰ)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ⅱ)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ⅲ)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ⅳ)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개정된「개인정보보호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

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과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에 관한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등” 을 마련하게 되었음

XII. 현행 「도서관법」 관련 정비(안) 3단 비교

<표 4-12> 현행 「도서관법」 관련 정비(안) 3단 비교표

현행 「도서관법」	「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 또는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포함한다)**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8의2. "최선판"이란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가 여러 판형으로 발행 또는 제작된 경우에 가장 우수한 품질의 판형을 말한다.**	

<신설>	**8의3. "완전한 복제물"이란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형태의 복제물을 말한다.**	
제18조(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신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 및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제19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현행과 같음)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신설>	6.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외국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 및 해외사무소 운영**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현행과 같음)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재외국민의 도서관자료 이용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보존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삭제)**	
④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9조의2(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도서관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사서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대상과 수요예측 3.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교육과정과 훈련방법 4. 그 밖에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도서관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신설>	**제19조의3(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축)**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	**제00조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성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1. 도서관자료를 통한 정보와 자료이용 2. 도서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도서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체계 구비 등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은 국립중앙도서관 협력망과 지역대표도서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지역대표도서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은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은 상호 도서관자료의 이용, 표준화 및 대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각 지원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	

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신설>**	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의 최선판**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자료를 포함하여 납본하여야 하며, 인쇄자료의 납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온라인 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자료의 최**	

	선판의 완전한 복제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적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수집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라인 자료 수집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	⑤ (현행과 같음)	

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20조의3(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자료 중에서 국가 차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차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7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도서관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④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제00조(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기준)**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서관자료가 국가차원의 발전에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도서관자료가 국가차원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주는 것 3. 도서관자료가 국가차원의 중대한 사건으로 역사성을 보여주는 것 4. 국민의 지식함양 또는 사회적인 도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 **제00조(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①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중

	등록사항 및 등록말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도서관자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도서관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00조 각 호의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가중요도서관자료를 직권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하거나 직권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중요도서관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국가중요도서관자료 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신청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자료를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도서관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00조(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기록·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명칭 2. 생성·제작·개발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소재지 5. 자료 유형 6. 등록 사유 **제00조(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중요도서관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국가중요도서관자료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말소대상 국가중요도서관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제20조의4(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서관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3에 따라 국가**중요**도서관 자료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제00조(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른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국립중앙도서관법 정비 방안

Ⅰ. 국립중앙도서관법의 제정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도서 대출, 반납 및 독서공간이라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한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도서관 전략 수립이 필요함

○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영상자료 등이 출현함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도서관법」제3장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제18조), 업무(제19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제20조), 온라인자료의 수집(제20조의2), 국제표준자료번호(제21조)에 관한 규정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기능 확장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이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정보자원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을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겠음

Ⅱ. 국립중앙도서관법 입법체계

<표 5-1> 「국립중앙도서관법」 입법체계

장	조문제목	구체적인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국립중앙도서관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
	제2조(정의)	- 주요 용어에 대한 뜻의 명확화
	제3조(국립중앙도서관의 책무)	- 국립중앙도서관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필요시 사업자 또는 국민의 책무 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향후 제·개정되는 다른 법률이 도서관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제5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계획)	-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 목적
	제6조(국립중앙도서관의 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 종전 시행령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로 법제화 격상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등	제8조(설립)	- 국립중앙도서관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정책의 주요 내용을 규정 -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 해외사무소 운영
	제9조(운영 등)	
	제10조(업무)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 재외국민의 도서관자료 이용에 관한 업무
	제12조(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축)	
제4장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절차 등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국립중앙도서관법의 법적 위상 강화방안으로 납본제도의 절차적인 규정 마련
	제14조(온라인자료의 수집)	
	제15조(국제표준자료번호)	
제5장 보칙	제16조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 정책의 주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칙 사항 규정
	제17조(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제18조(금품의 기부)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자료보존 및 연구재단의 설립)	
	제20조(수익사업)	
	제21조(권한의 위임 · 위탁)	
제6장 벌칙	제22조(과태료)	- 구체적인 의무부과가 없는 경우 별도의 벌칙 규정 불필요
부칙	제00조(시행일) 제00조(경과조치) 제00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제정의 경우 대체로 시행일만 규정하나, 경과조치나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규정

Ⅲ. 국립중앙도서관법률(안)

<표 5-2> 국립중앙도서관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에 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립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지식정보 함양과 도서관 서비스 향상 및 평생교육의 증진등 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 또는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포함한다)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국가중요도서관자료"란 도서관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수집·보존·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소재 자료를 말한다. 4.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5.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선판”이란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가 여러 판형으로 발행 또는 제작된 경우에 가장 우수한 품질의 판형을 말한다. 7. “완전한 복제물”이란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형태의 복제물을 말한다. 8.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국립중앙도서관의 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 및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과 지식정보 함양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들이 지역·사회·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제5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계획)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립중앙도서관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정리·보존·제공 방안 4.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추진 방안 5. 도서관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도서관법」제12조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국립중앙도서관의 시행계획)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서관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도서관자료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중요도서관 자료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등	제8조(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제공ㆍ보존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 및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6.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7. 외국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 및 해외사무소 운영 8. 도서관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10. 재외국민의 도서관자료 이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전국적으로 도서관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사서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기본방향과 목표 2.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대상과 수요예측 3.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교육과정과 훈련방법 4. 그 밖에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간의 협력망 구축)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과 협력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1. 도서관자료를 통한 정보와 자료이용 2. 도서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도서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체계 구비 등을 통한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상호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 절차 등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15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의 최선판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00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온라인 자료 중 납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온라인 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자료의 최선판의 완전한 복제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적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

	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온라인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수집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라인 자료 수집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도서관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서관자료가 제작·형성된 후 50년(7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도서관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국가중요도서관자료의 등록 기준, 절차, 등록사항 및 등록말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 ①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금품의 기부)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보존연구센터 및 연구재단의 설립) ①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으로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연구재단을 설립한다. ⑥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⑦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익사업)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도서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2조(과태료) ①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Ⅳ.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과 도서관법 개정의 장·단점 분석

<표 5-3>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과 도서관법 개정의 장·단점

구분	국립중앙도서관법 제정	도서관법 개정
장점	• 국립중앙도서관법상 독립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에 관한 국립중앙도서관에 부합하는 입법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 관종별로 도서관이 분법화 되어 있는바, 국립중앙도서관법 관련 독립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령의 입법체계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음 • 현행 도서관법을 기본법으로 상향하고, 국립중앙도서관법으로 분법화 함으로써 법령 체계와 통일성을 강화하고, 일반인에게 법적 접근성을 강화함	• 현행 도서관법의 내용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안적합성과 행정적합성이 유지되어 일관성 있는 도서관행정이 가능함 • 현행 도서관법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함 • 추후 입법 수요 발생시에 유관부처간의 협의가 원활함 • 국립중앙도서관법의 독립법 제정보다 현행 도서관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움
단점	• 국립중앙도서관법에서 도서관법을 인용할 경우에 관련 법률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독립법으로 제정 시에 도서관법상 관종별로 도서관 관련 규정 존치 여부 검토가 필요함 • 국립도서관법을 왜 제정하여야 하는가에 외부전문가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현행 도서관법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여 차별성 있는 도서관기본법, 국립중앙도서관법 등 분법화를 통한 독립법 제정을 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도서관법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규정을 독립하게 될 경우에 도서관법과 국립중앙도서관법 간 충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Ⅴ. 소 결

○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 역할의 한계에 봉착하였고, 이에 따라 방대한 도서관 자료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대두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자료에 대한 디지털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공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현행「도서관법」상 제3장의 규정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제18조), 업무(제19조), 도서관자료의 납본(제20조), 온라인자료의 수집(제20조의2), 국제표준자료번호(제21조)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역할과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중요한 정보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수집·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정립을 위한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제정(안) 및「도서관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증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국립중앙도서관법」제정(안)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에

관한 국립중앙도서관에 부합하는 입법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현행 도서관법을 기본법으로 상향하고, 국립중앙도서관법으로 분법화 함으로써 법령 체계와 통일성 강화 및 일반인에게 법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법에서 도서관법을 인용할 경우에 관련 법률간 혼란과 국립도서관법을 왜 제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짐

❍ 현행「도서관법」개정(안)은 동법상 내용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안적합성과 행정적합성이 유지되어 일관성 있는 도서관행정이 가능하며, 현행 도서관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현행 도서관법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차별성 있는 도서관기본법, 국립중앙도서관법 등 분법화를 통한 독립법 제정을 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짐

❍ 종국적으로 (가칭)「국립중앙도서관법」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중기적인 관점에서 법안의 제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행「도서관법」상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는 도서관행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입법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됨

참 고 문 헌

곽동철.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수립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2004): 205-227.

곽승진, 이응봉, 장덕현, 배경재, 김정택.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011): 311-330.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곽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008): 65-83.

구천을, 노현숙.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검토.” 법학논고 0.66 (2019): 355-378.

김종철, 김영석.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2012): 349-369.

김현철.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연구.” 디지틀 도서관 80.- (2015): 3-16.

노지현.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2012): 5-27.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현숙.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선결과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아주법학 7.4 (2014): 343-374.

임경훈. “지식 : 디지털 복제, 전송의 도서관면책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디지틀 도서관 43.- (2006): 61-98.

임형연.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 (2004): 393-414. 미국 보스턴주변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관찰조사를 중심으로.

조용완. “협력기반의 다문화자료 입수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4 (2011): 45-70.

윤희윤.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2002): 185-207.

최지혜. “학술연구 : 프랑스 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 본 도서관의 미래.” 디지틀 도서관 72.- (2013): 77-96.

홍재현.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2002): 327-357.

https://nl.go.kr/NL/contents/N50201010000.do

https://www.loc.gov

https://catalog.data.gov/dataset/congressional-districts-277f7

https://www.doi.gov/library/collections/federal-documents

https://www.imls.gov/about-us/legislation-budget/timeline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

https://www.dnb.de/DE/Ueber-uns/Organisation/organisation_node.html#doc57844bodyText1

https://gallica.bnf.fr/dossiers/html/dossiers/FranceAmerique/en/D1/T1-1-Intro.htm

British Library, “Facts and figures of the British Library”, https://www.bl.uk/about-us/our-story/facts-and-figures-of-the-british-library

legislation.gov.uk, legislation.gov.uk, 1(1) of British Library Act 197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2/54/section/1

GOV.UK,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ges-to-copyright-law

https://www.gesetze-im-internet.de/urhg/index.html

https://www.bnf.fr/sites/default/files/2019-10/guide_dli_sept2019.pdf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proposed-copyright-reform-australia-limited-liability-scheme-use-orphan-works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Copyright Act 1968,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7C00180

e-Gov, “国立国会図書館(1948년 제정, 2015년 개정)”, https://elaws.e-gov.go.jp.

e-Gov, “著作権法(1970년 제정, 2020년 개정)”, https://elaws.e-gov.go.jp.

國立國會圖書館, “数字で見る国立国会図書館”, https://www.ndl.go.jp/jp/aboutus/outline/numerically.html.

연구진

■ 연구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책 임 연 구 원 : 김 종 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공 동 연 구 원 : 강 현 철(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명 운(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상 모(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조 용 완(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보 조 연 구 원 : 박 성 수(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2020년 연구보고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인 쇄 : 2020년 12월 21일
발 행 : 2020년 12월 21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90-0799 Fax. 02-590-0546
http://www.nl.go.kr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ISBN 979-11-6513-123-4 93020 [비매품]